

2024

최신판

초보부터 고급사용자까지 활용 가능한 만능가이드북
이 한권이면 나는 프로경력자!

4 세무사랑 **활용** **레시피**

★★★★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랑Pro** 활용의 완결판

★★★★ **세무사랑Pro**를 100% 활용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차 례

세무사랑Pro 활용레시피

2023년
개정세법

2023년 귀속 법인세법 관련 개정세법

0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1
0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2
03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
0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	4
05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5
06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6
07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	7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8
0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9
1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10
11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1
12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12
13 법인세율 인하	13
1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14
15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15
1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16
17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17
1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명	18
19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19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0
21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21
2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22
23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대상 비용 명확화	23
2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24
2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5
26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감면 확대	28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29

제1장

기중전표 입력과 세무조정과의 연관관계 31

1. 법인세의 의의 33
2. 법인유형별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33
3. 법인의 과세소득 36
4. 사업연도 38
5. 법인세 납세지 39
6. [세무사랑Pro]의 회사등록 기본사항 40
7. 계정과목의 적요내용과 세무신고 서식과의 관계 57
8. 영수증수취거래의 구분 70

제2장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의 연관관계 77

1. 법인 결산 79
2.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0
3. 결산자료의 [세무사랑Pro]입력 89
4. 기말결산 절차 97

제3장

법인조정 : 표준재무제표 확인 및 수입금액조정 103

1. 표준재무제표확인 105
2. 수입금액조정 108

제4장

법인조정 :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129

1. 감가상각의 특징 131
2. 취득가액 134
3. 내용연수 137
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39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41
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142
7. 즉시상각의 의제 144
8. 결산시 유의사항 146

9. [세무사랑Pro]의 [고정자산등록]	148
10. [세무사랑Pro]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와 [양도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151
11. [세무사랑Pro]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152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3

제5장

법인조정 : 과목별 세무조정 1 167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69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177
3. 기부금	186
4. 가지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96
5. 지급이자손금불산입	207
6. 건설자금이자	212
7. 준비금조정명세서	218
8. 국고보조금 등	224

제6장

법인조정 과목별 세무조정 2 231

9.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233
10. 퇴직연금부담금	235
1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243
12. 외화자산 등	247
13. 세금과 공과금	250
14. 선급비용	255

제7장

법인조정 공제감면세액 257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기본개념	259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재해손실세액공제	261
3.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263
4. 소득구분계산서	278
5.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90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이자상당가산액계산	342
7.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346
8.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외국납부세액공제	347
9.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348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	362
11. 세액공제신청서	363
1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364

제8장

법인조정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 367

1. 세액계산및신고서-법인세과표 및 세액신고서	369
2. 원천납부세액조정명세서(갑, 을)	371
3. 법인세법상 가산세	373
4.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378
5. 최저한세조정명세서	384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90
7.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	395
8. 지방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399
9. 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401

제9장

신고부속 기타서식 405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07
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411
3. 주요계정명세서(갑, 을)	415
4. 소득자료명세서	417
5. 성실신고 확인서	422

제10장

지방소득세 신고서 427

1.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429
-------------------------	-----





2023년 귀속 법인세법 관련 개정세법

0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가. 개정취지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중소기업 : 소득의 10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60% → 8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03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일반법인> <table> <tr> <th colspan="2">상장법인</th></tr>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 <td>100%</td><td>100%</td></tr> <tr> <td>30% 이상 100% 미만</td><td>50%</td></tr> <tr> <td>30% 미만</td><td>30%</td></tr> </table> <table>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tr>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 <td>100%</td><td>100%</td></tr> <tr> <td>50% 이상 100% 미만</td><td>50%</td></tr> <tr> <td>50% 미만</td><td>30%</td></tr> </table> <지주회사> <table> <tr> <th colspan="2">상장법인</th></tr>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 <td>40% 이상 100%</td><td>100%</td></tr> <tr> <td>30% 이상 40% 미만</td><td>90%</td></tr> <tr> <td>30% 미만</td><td>80%</td></tr> </table> <table>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tr>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 <td>80% 이상 100%</td><td>100%</td></tr> <tr> <td>50% 이상 80% 미만</td><td>90%</td></tr> <tr> <td>50% 미만</td><td>80%</td></tr> </table>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100%	100%	30% 이상 40% 미만	90%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이상 100%	100%	50% 이상 80% 미만	90%	50% 미만	80%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table> <tr> <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 <td>50%</td><td>100%</td></tr> <tr> <td>20% 이상 50% 미만</td><td>80%</td></tr> <tr> <td>20% 미만</td><td>30%</td></tr>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100%	100%																																																
30% 이상 40% 미만	90%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이상 100%	100%																																																
50% 이상 80% 미만	90%																																																
50% 미만	8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0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종 전	개 정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 소득의 5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 금품 등 ■ 소득의 10%(2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 명칭 : “특례기부금” ○ (좌 동) ■ 명칭 : “일반기부금”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종 전		개 정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손금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좌 동)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500억원) × 0.0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4.1.1.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봄

06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

법인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과세체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 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추 가〉	■ 익금 산입 사유 추가 ○ (좌 등) ○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023.1.1. 부터 적용 의무

-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법인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대상) 보험회사 - 다만,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한 보험회사는 적용 제외(법 §42의3⑤)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 §65②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의6 상해 약환급금준비금 : $(A - B)$ -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20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20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제47조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11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가. 개정취지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신 설〉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좌 동)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취지

- 세법과 회계간의 손익 귀속시기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 인도기준만 적용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3 법인세율 인하

가. 개정취지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초과	25%	3,000억초과	2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023.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4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가. 개정취지

- 위탁자 과세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하는 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 ■모두 충족) - ■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 보유 - ■ 신탁재산의 수익권 구분 설정(원본 수익권 : 위탁자, 수익 수익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 (좌 동) ○ ■ 또는 ■를 충족하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6 |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법인 ○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 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좌 등)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17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 거래로 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 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좌 등)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1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명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19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가. 개정취지

- 무역거래 환경 변화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 으 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 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 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 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 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확인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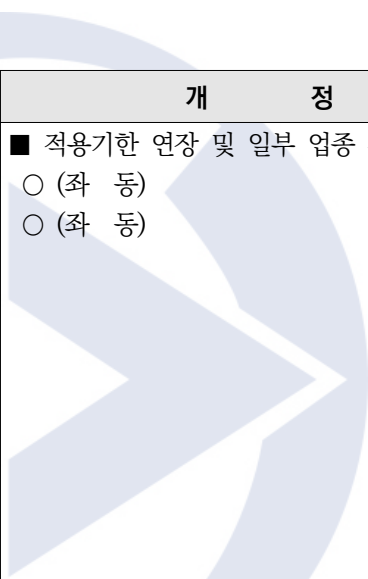
- 2023.3.20.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등 48개 ○ (감면율) 5~30%				■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을 변경 ○ (좌 등) ○ (좌 등)	
본점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15		
* 지식기반산업(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신설>				* 지식기반산업 특례 폐지 **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0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 10%P)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다만, 알뜰주유소 특례는 2023.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 억 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5천 억원 미만 〈추 가〉	■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좌 동)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2 |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가. 개정취지

-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년 연령범위 ○ 청년범위 : 15~29세		■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 청년범위 : 15 ~ 34세
내용	조항(명)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11의2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의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의8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00의32⑫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14④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의15⑦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의21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의25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의26⑦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27⑥	
○ 청년범위 : 15~29세		○ (좌 등)
내용	조항(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7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대상 비용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 (좌 등)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2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가. 개정취지

-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 비용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좌 동)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

가. 개정취지

-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제외 업종* * 고용중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중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신 설〉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 청년(15~34세) 정규직*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고용중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기본공제 추정세액 계산방법* * 고용중대세액공제의 추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신 설〉	i)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그 외’ 증가인원(㉠-㉡)이 ‘청년등’ 감소인원(㉠)에 비해 적어 ‘전체’ 감소(㉡) 등) : (㉠-㉡)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 공제액(그 외)) + ㉡ × 우대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그 외 감소인원 × 일반공제액 ii)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일반공제액)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정 - ①에 따른 既추징세액은 차감 ■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 중 ** 기존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세기본법] 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6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감면 확대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한 공장·법인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수도권 등(과밀억제권역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시 :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적용지역)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지방 광역시, 구미·김해·아산·원주·익산·전주·제주·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포항·당진·음성·진천·홍천(내면 제외)·횡성(총 19개 시·군지역) ■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 7년 100% + 3년 50%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 (좌 동) - 익산시 제외 ■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 10년 100% + 2년 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 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제외) ■ 1) ■·■외 기타지역, 2)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시 : 7년 100% + 3년 50% ○ 2025.12.31.

〈추 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전 공장·본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추 가〉 ○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 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 (좌 등) ○ 202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증전표 입력과 세무조정과의 연관관계



제1장

기중전표 입력과 세무조정과의 연관관계

1. >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세로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¹⁾

과세대상	귀속자	조세
소득	법인	법인세
	개인(자연인)	소득세

2. > 법인유형별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1) 법인의 종류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지 여부 또는 설립근거 법률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획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구분기준이 된다.

1)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포함한다.

①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²⁾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②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포함한다.

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이 설립근거법률이 국내법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사원”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유형별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영리외국법인

법에서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비영리내국법인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④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포함된다.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외국법인은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리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⑤ 비과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내원천소득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3) 비과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내원천소득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유형별 법인세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의무 없음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내국,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3. > 법인의 과세소득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시 잔존하는 순자산에 대하여는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설립목적 등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 등 양도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포함되어 과세된다.

(3) 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로서 법인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과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실현됨에 따른 소득이 청산소득에 포착되게 된다.

한편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 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4) 기업의 미환류소득(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100의32)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잔여재산가액 (-) 세무상자기자본	양도가액 (-) 장부가액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청산소득금액	= 양도차익 (-) 비과세소득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4. > 사업연도

(1) 기본원칙

①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즉, 1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연도 변경에 있어서는 의제사업연도가 1월 미만인 때에 이를 변경 사업연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1년 기준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②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발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구분		최초사업연도
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설치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의 최초 발생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이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	설립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미등기 단체	인허가일 또는 등록일

구분		최초사업연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단체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법인으로 신청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승인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킨 법인*		당해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5. > 법인세 납세지

(1) 내국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자산의 소재지(둘 이상이면 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3) 법인의제단체

①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면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납세지가 된다.

(4) 납세지의 변경

- ①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② 변경신고기한(15일)이 지난 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본점을 여의도에서 영등포구로 이전(23.12.1.)하면 영등포세무서에 23.12.16.까지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23.12.1.부터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세무서가 된다. 그러나 23.12.26.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23.12.26.부터 영등포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된다.

6. ➤ [세무사랑Pro]의 회사등록 기본사항

(1) 회사등록-기본사항

[회계관리 - 재무회계 - 회사등록] 또는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 - 보고서/기초정보 관리- 회사등록]메뉴의 기본사항에서 14.법인종류별구분, 15.중소기업여부를 결정하면 [법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에 자동 반영된다.

- ① [13.법인구분] :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 중에서 선택한다.
- ② [14.법인종류별구분] : [중소기업, 중견기업, 호출자제한, 일반기업]과 [상장, 코스닥, 기타, 비영리]중에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은 [30.중소-기타]를 선택한다.
- ③ [15.중소기업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예]를 선택하면 세무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추가사항 회사도장 개인정보

1. 회계연도 제 6 기 2023 년 01 월 01

2. 사업자등록번호 119-81-

4. 대표자명 이세무

5. 대표자주민번호 7005:

6. 사업장주소 07226 서울특별시 (당산동, 당산빌딩)

7. 본점주소 07226 서울특별시 (당산동, 당산빌딩)

8. 업태 제조업

10. 주업종코드 281101 제조업 /

11. 사업장전화번호 02) 1111 - 1111

13. 법인구분 1 내국법인

15. 중소기업여부 3 여

17. 개업연월일 2018-09-28

19. 사업장등록코드 1156011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0. 본점등록코드 1156011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1. 사업장관할세무서 107 영등포

23. 지방소득세납세지 영등포구

22. 본점관할세무서 107 영등포

24. 지방세법인구분 21 00 주식회사

11. 중소기업 21.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60. 중소기업 71. 중소기업 72. 중소기업 73. 중소기업 74. 중소기업 81. 중소기업 82. 중소기업 83. 중소기업 84. 중소기업 91. 중소기업 92. 중소기업 93. 중소기업 94. 중소기업 50. 중소기업

법인종류별구분을 선택하세요

계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민사 2023

F3 마감 F3 해외투자정보등록 제출 F8 납부서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F11 수정신고작업방법

(13) 법인구분	1	1. 내국	2. 외국	3. 외투	비율%	(14) 조세구분	1	1. 외부	2. 자기
(15) 종류별 구분	중소	중견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6) 외부감사대상	2	1. 여	2. 부
영리	상장법인	11	71	81	91	(17) 신고구분	1	1. 정기신고	
법인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	2. 수정신고	1. 서면분석 2. 기타
	기타법인	30	73	83	93		3	3. 기한후신고	4. 중도폐업신고 5. 경정청구
비영리법인		60	74	84	94	(11) 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19) 결산확정일	2024-03-08	(20) 신고일	2024-04-01	(18) 법인유형별구분	100	기타법인			
(22) 신고기한연장종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요한 혜택이다.

내 용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혜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한도 없음
접대비 손금 한도	36백만원 +수입금액 0.03~0.3%
결손금 소급 공제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 공제 가능
법인세 분납 기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손금산입	손금산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외상매출금 대손처리특례	①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 처리 가능 ②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처리 가능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2) 중소기업 판정 및 [세무사랑Pro]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호텔업(55101), 여관업(55102)여인숙 모텔 포함하고 고시원, 민박은 제외함
-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56219) 다만 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제외함
-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나) 매출액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칙 2 ④) 업종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은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에 대하여 2012년부터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활용하되 중소기업여부는 새로운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한다.

■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조특법 집행기준 5-2-2)

-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③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 ④ 중소기업판정을 위한 규모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³⁾인 기업이

3)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 관계기업(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 (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2014-20575, 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라) 졸업기준 이내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령 2 ① 단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조특칙 2 ⑤)

(마)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할 것

①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상기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유예기간 배제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령 2 ②)

-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⁴⁾
- ㉡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독립성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관계기업 관련 요건 제외)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⑤)

4) 중소기업간의 합병에는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1056, 1998.04.28.)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분류상 차이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업 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업종
규모기준(매출액)	전기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업종별 평균매출액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 매출액
졸업기준 (자산총액)	전기사업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 매출액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 판단시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기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적용유예	사유발생일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최초 1회만 유예)	최로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유예(최초 1회만 유예): 유예배제규정도 있음

2) [세무사랑Pro]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① [법인조정] 전에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사등록]의 [15.중소기업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여부는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조정-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서 확정된다.
- ② [중소기업기준검토표]의 [사업요건 및 규모요건-(101) 사업요건]에서 [업태별/구분]과 [기준경비율코드] 및 [사업수입금액]을 입력할 때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법인조정]할 때 먼저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조정]에서 [표준재무상태표]부터 [중소기업기준검토표]까지 순차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정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한다면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주된사업)의 수입금액을 첫 번째 란에 입력하고 다음으로 주된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사업수입금액을 입력한다. 이때 세 번째 란의 [그 밖의 사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수입금액을 입력한다. [그 밖의 사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사업수입금액보다 크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규모요건]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 ⑤ [(102)규모요건]의 [당회사]와 [자산총액]은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가)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작성

[(103)독립성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적합한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 연도]에 입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유예기간이 배제되는 요건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

F11 저장 F5 전체삭제 F12 불러오기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3) 독립성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102)의 ① 기준) 이내일 것	적합
(104)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10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중기업 적정여부 적합

(나) [소기업] 작성

[F12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당 회사(14)]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에 따라 소기업여부가 결정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다) [중견기업] 작성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였으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견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소비성서비스업

나. 금융업

다. 보험 및 연금업

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법인 6기 2023-01-01-2023

닫기 도움말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차기 최근

F11 저장 CF5 전체삭제 F12 불러오기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효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7)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부적합								
(10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부적합								
(109)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억원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단위:억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전 3년</th> <th>직전 2년</th> <th>직전 1년</th> <th>평 균</th> </tr> </thead> <tbody> <tr> <td>억</td> <td>억</td> <td>억</td> <td>억</td> </tr> </tbody> </table>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 균	억	억	억	억	적합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 균							
억	억	억	억							
중견기업	적정여부	부적합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

1) 업종분류의 원칙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체의 실질적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은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① 건설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 ②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 ③ 주택신축판매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제조업의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 사업자가 국내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만, 국내제조업자가 국외 위탁제조의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본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도매업
① 국내제조업자의 국내 위탁 제조 ② 외국사업자의 국내 위탁제조 ③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① 국내제조업자의 국외위탁제조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가 국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구 분	의제제조업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국내 위탁생산: 제조업 국외 위탁생산: 도매업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위탁생산 장소와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분류

4)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으로서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도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OEM(제조업)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특별감면율에 차이가 있으며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의 범위

물류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조특령 5 ⑦)

- ①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 ② 화물 취급업
- ③ 보관 및 창고업
- ④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⑤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⑥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 ⑧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⑨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561)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음식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세법상 동일업종의 판정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커피전문점(5622), 비알코올 음료점(56229)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내용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
소분류	561. 음식점업
세분류	5611. 한식음식점업 (세세분류 : 일반, 면요리, 육류, 해산물) 5612. 외국식음식점업(세세분류 :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 5613. 기관, 구내식당업 5614. 출장, 이동음식점 5619. 기타 간이음식점 (제과점, 피자, 김밥, 치킨 전문집등)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프랜차이즈 산업

프랜차이즈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프랜차이즈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는 않는데,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업종	구분
기타 식품 제조업(107)	직접 음식(제조한 빵, 비빔밥, 케익, 등) 및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가공식품 도매업(4632)	구입한 음식(제조한 빵, 비빔밥, 케익, 등) 및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경영 컨설팅업(71531)	가맹점에 대하여 전략기획 자문, 시장관리 및 인력관리 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업(7320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체에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가 디자인 서비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

8) 출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 출판업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대분류	J 정보통신업
중분류	58.출판업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구분	내용
세분류	5811.서적 출판업 5812.신문,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5819.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58121.신문 발행업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8122.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3.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광고업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건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9) 스터디카페

숙박시설없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카페, 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터디카페를 부동산업 중 공간임대업(기준 경비율코드: 701300)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독서실(923100)·숙박형 독서실(551016)은 스터디카페로 보지 않는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	내용
소분류	902.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분류	9021.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세세분류	90211.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② 기준경비율코드

구분	내용
기준경비율코드	923102
중분류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세세분류명	독서실 운영업
업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기타 업종분류 시 주의해야 할 업종

업종	내용
치과기공소 (분류번호851905)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됨. 그러나 부가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의료업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세되고, 의료용역으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관세사업 (분류코드: 52991)	2017년부터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물류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감면 업종에는 해당한다(2019부터 소급적용). 그러나 2017.01.0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
공인중개사업 (분류코드: 68221)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
감정평가사업 (분류코드: 68223)	부동산업 중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
노무사업 (분류코드: 71109)	2020.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
경영지도사업 (분류코드: 71531)	2020.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경영컨설팅업에 해당되어 창업감면 가능
건축사, 기술사	제조관련시설이나 고도기술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인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일반 건축물 설계는 해당되지 않음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분류코드 75992)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으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을 포함함. 그러나 전시회 및 회의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0221),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68112)은 제외함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 (분류코드: 752)	2020.01.01. 이후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가능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분류 L. 부동산업(분류 코드: 68112)]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서 창업감면 불가
비알코올 음료점업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 점업(분류코드: 5622)]	커피 또는 주스, 각종 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서 창업감면 불가
독서실 운영업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90212)]	숙박시설 없이 독서 시설을 갖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서 창업감면 가능

업종	내용
자동차종합수리업 (분류코드: 95211)	■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자동차전문정비업 (분류코드: 952121)	■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불가) ■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불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은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 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택시, 버스사업자	운수업종 여객운수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임가공업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적용함. 예를 들어 제조업 중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처리업,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
소사장제	기계장치를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됨
상품권 매매업 국공채 매매업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됨. 도소매업이 아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은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함. 농산물과 상품의 중개 및 위탁판매, 주선업, 대리업(법정도매시장 중개인. 야쿠르트 대리점 등 위탁판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함(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을 말함. 제조업자의 통신판매는 제조업, 도매업자의 통신판매는 도매업, 매장을 두고하는 통신판매는 일반소매업에 해당함

7. > 계정과목의 적요내용과 세무신고 서식과의 관계

일반전표입력과 매입매출전표입력 중 [세무사랑Pro]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의 코드번호 등은 세무조정사항과 세무신고서식 작성과 연관관계가 있다.

(1) 가지급금 및 가수금

법인세법상 가지급금(가수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적요번호를 이용하여 전표를 입력하여야 인별로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이 계산되어 정확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계정과목	고정적요				세무서식
가지급금	구분	고정적요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현금	1	대표이사 가지급		
	현금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대체	1	대표이사 가지급		
	대체	4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가수금	구분	고정적요			
	현금	1	대표이사 일시가수 현금 반제		
	현금	4	대표이사 일시가수 현금 입금		
	대체	1	대표이사 일시 가수 반제		
	대체	4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		

둘 이상의 사람에게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인별로 전표입력시 적요번호를 [1과 4], [2와 5], [3과 6]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인별로 반영할 수 있다.

가치증빙관리시스템(가치증빙관리) - 0205 주식회사 세무버전 12기 2023-01-01-2023-12-31 2023 2023 2023

02 기업명관리자관리 F3 조달관리 F4 입찰 F7 원가관리 F8 계약관리 F9 선택사업명도 F11 연월수변경

1.가치증빙.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출)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가치증빙.가수금 선택: 1.가치증빙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No	직책	성명	No	직책	성명	연월일	차번	대번	잔액	일수	적수
1	대표이사	이세우	1	1.가치증빙		2023	1	1	300,000,000	50	15,000,000,000
2	주주	대주주	2	2.대여		2023	2	20	50,000,000	315	110,250,000,000
3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자산]

No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지급/회수	거래처	데이터불러오기
1	대표이사	이세우	0134 가치증빙	1	1	00107 이세우	1.불러오기
2	주주	대주주	0134 가치증빙	2	2	00117 대주주	1.불러오기
3							

일자리별 통합해서 불러옴(F4) : 같은일자, 같은 적요번호는 통합해서 불러옵니다.(계산하는 열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참고(불러오기)
 - 전기미납 : 전기분할상환표인 134 가치증빙계정의 잔액, 성명이 같은 셀미트를 불러옵니다.
 - 전기미납 : 전기분할상환표인 134 가치증빙계정의 잔액과 거래처 코드의 전기미납 잔액을 불러옵니다.
 - 달기분 : 특정계정의 적요번호와 거래처코드를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 입력시 SNO조건으로 지출을 불러옵니다.

회계전표 불러오기(Tab)

코드도움(F2) 삭제(F5)
 직책,성명 불러오기(F3) 취소(Esc)

(2)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1) 신용카드 등 입력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규제하는 규정이 많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위해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회계기간 중 전표를 입력할 때 반드시 등록된 적요만 사용하여 정확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 ①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표 입력시 적요를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정적요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과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된다.
- ② 경조사비, 해외접대비, 문화 및 예술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표입력 시 고정 적요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조정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된다.
- ③ 고정적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경조사비]도 경조사비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고정적요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구분	고정적요	
현금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현금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현금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현금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예술접대비
현금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현금	11	증빙불비접대
현금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대체	1	신용카드등 사용 일반접대비
대체	3	신용카드등 사용 해외접대비
대체	5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
대체	7	신용카드등 사용 문화,예술접대비
대체	10	거래처에 현물접대
대체	11	증빙불비접대
대체	12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무관비용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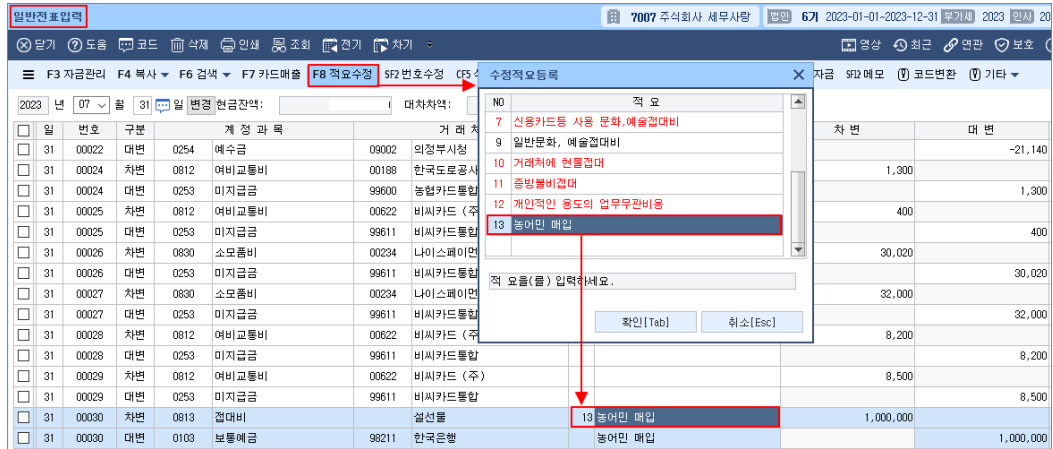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메뉴에서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코드 [813], [513], [613]; [663],[713],[763]의 현금적요 및 대체적요에 농어민으로부터 매입분이라는 적요를 등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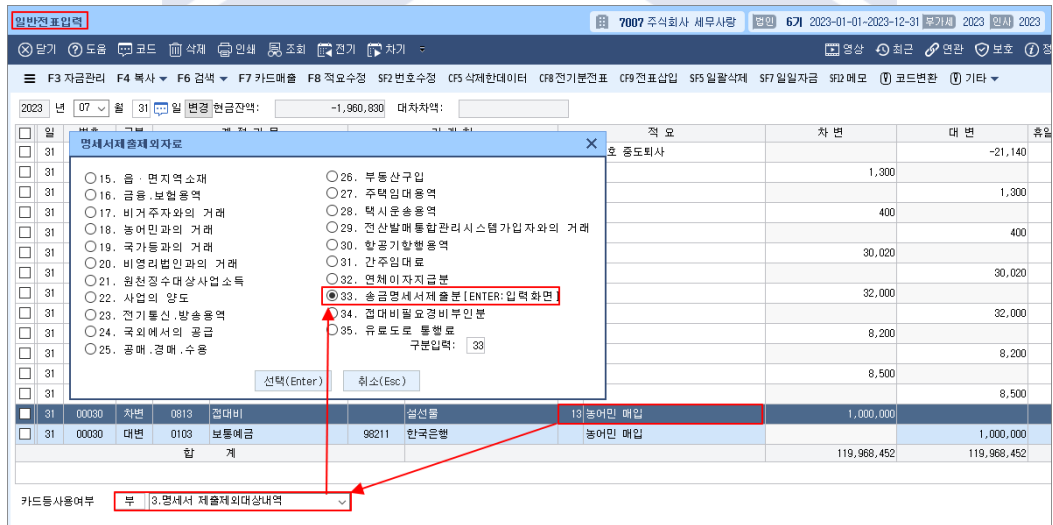
0813	접	대	비	3.경	비		적요NO	현금적요
0814	통	신	비	3.경	비		6	일반경조사비
0815	수	도	광	3.경	비		9	일반문화, 예술접대비
0816	전	력	비	3.경	비		13	농어민 매입
0817	세	금	과	3.경	비			
0818	갑	가	상	3.경	비		적요NO	대체적요
0819	임	차	로	3.경	비		6	일반경조사비
0820	수	선	비	3.경	비		9	일반문화, 예술접대비
0821	보	험	로	3.경	비		13	농어민 매입
0822	차	량	유	3.경	비			

0513	접	대	비	5.제	조	경	비	적요NO	현금적요
0514	통	신	비	5.제	조	경	비	8	제조원가토대체
0515	가	스	수	5.제	조	경	비	9	일반 문화, 예술접대비
0516	전	력	비	5.제	조	경	비	13	농어민 매입
0517	세	금	과	5.제	조	경	비		
0518	갑	가	상	5.제	조	경	비	적요NO	대체적요
0519	임	차	로	5.제	조	경	비	8	제조원가토대체
0520	수	선	비	5.제	조	경	비	9	일반 문화, 예술접대비
0521	보	험	로	5.제	조	경	비	13	농어민 매입
0522	차	량	유	5.제	조	경	비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의 [F8 적요수정]을 통하여 관련 적요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입력할 때 등록한 적요코드를 적용하고 [카드등 사용여부]에서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 33.송금명세서제출분]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③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을 위해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의 [F6계정과목 설정] 메뉴에서 농어민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적요코드를 등록하면 [F12볼러오기]에서 적요코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6기 2023-01-01~2023-12-31

F3 조정등록 CF5 전체삭제 F6 계정과목 설정 F7 원장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접대비 입력 (출) 2. 접대비 조정 (합)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 일반수입금액	
금 액	9,959,600,557	

2. 접대비 해당금액

구 분	④ 계정과목	합계	접대비(관관)
⑤ 계정금액		20,000,000	20,000,000
⑥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금비			
⑦ 접대비해당금액(⑤-⑥)		20,000,000	20,000,000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⑪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⑬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⑭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⑮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계정과목 설정

코드	계정과목명	현금적요	13	적요
813	접대비(관관)	대체적요	13	동여인 매입
513	접대비(제조)	대체적요	13	동여인 매입
613	접대비(도급)	대체적요	13	동여인 매입
663	접대비(보관)	대체적요		
713	접대비(분양)	대체적요		
763	접대비(운송)	대체적요		

2. 접대비해당금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은 접대비 관련 계정과목 (813, 513, 613, 663, 713, 763)의 적요코드 및 고정적요 코드 금액을 불러오기 합니다.

확인(Tab) 취소(ESC)

(3)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등록 관리

1) 간편자동등록 설정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기초정보등록 - 환경등록 - 회계]에서 [10 고정자산 간편 자동등록 사용]에서 [1.사용]을 선택한다.

환경등록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회계

1. 부가세 소수점 관리

수	단	가	자 리 수	불 전 처 리
		0		
		0	1.절사	
			3.반올림	

2. 분개유형 설정

매	출	0404	제품매출
매 <td>출</td> <td>0108</td> <td>외상매출금</td>	출	0108	외상매출금
매 <td>입</td> <td>0153</td> <td>원재료</td>	입	0153	원재료
매 <td>입</td> <td>0251</td> <td>외상매입금</td>	입	0251	외상매입금
신용카드매입채권		0120	미수금
신용카드매입채무		0253	미지급금

3. 추가계정 설정

구	분	유	형	계	정	과	목	추	가
매	출	매	출						
매	출	매	출						
매	입	매	입						
매	입	매	입						

4. 카과, 현과의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건설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과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5. 봉사료 사용 여부

6. 유형: 불공(54)의 불공제 사유

유형: 영세小微企业(12.16) 구분

유형: 수출(16) 외화정보입력

7. 단가 표시

8. 표준(법인세)을 재무제표

9. 건물외 유형고정자산 상각방법

10. 고정자산 간편자동등록 사용

11. 현장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2. 부서사원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3. 프로젝트코드 엔터키 자동복사

14. 세금계산서 인쇄시 복수거래 정렬 방법

15. 의제류 자동 설정

의제매입공제율

재할용매입공제율

구리 스크립트

16. 신용카드매입 입력창 사용여부(일반전표)

17. 휴일 표시 사용여부

18. 일반전표입력 관리항목 상단표시

19. 매입매출전표입력 관리항목 상단표시

20. 일반전표입력 3만원이하 카드등사용여부

1.전체포함

1.포함

0.전체미포함

0.사용안함

2

1.사용

1.사용

1.일반법인

1.정렬법

1.사용

0.사용안함

0.사용안함

0.사용안함

1.입력순

0.없음

6 / 106

6 / 106

5 / 105

1.사용

1.사용

0.사용안함

0.사용안함

0.사용안함

2)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고정자산 취득

분개에서 고정자산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취득가액을 입력할때 [기초코드등록]팝업창이 나타난다. [고정자산 간편등록] 팝업창에서 메뉴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다.

(4)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1) 업무용승용차 등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은 차량별로 적용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리스, 렌트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 ㉠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에 [차량운반구]에 업무용승용차량별로 등록한다.

고정자산등록

☒ 닫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CF2 사용한코드 F4 일괄계산 F6 전년도불러오기 F7 회사계상수정 CF7 당기의제상각일괄 F8

자산계정과목 0208 차량운반구 조정구분 0.전체

☐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상각방법
☐	000001 그랜저(자가)25가8888	2022-01-01	정액법
☐	000008 포터II(89부1134)	2021-06-28	정률법

㉠ [CF6 전기누적거리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전기누적거리를 적용하면 업무용승용차의 누적 주행거리도 반영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의 [자산코드/명]를 불러와서 [업무용승용차등록]의 [자산계정과목]과 [자산코드/명]과 일치되도록 선택한다.

업무용승용차등록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법인 6기 2023-0

☒ 닫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6 불러오기 F7 엑셀자료올리기 CF6 전기누적거리불러오기 CF7 엑셀자료내려받기

코드	차량번호	차종	사용
0101	25가8888	그랜저	사용

고정자산등록

전체

자산코드 자산명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

자산코드	자산명
1	그랜저(자가)25가8888
8	포터II(89부1134)

차량 상세 등록 내용

- 고정자산계정과목 0208 차량운반구
- 고정자산코드/명 000001 그랜저(자가)25가8888
- 취득일자 2022-01-01
-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 사용자 부서
- 사용자 직책 대표이사
- 사용자 설명 이세무
- 임차여부 자가
- 임차기간
- 보험가입여부 가입
- 보험기간 2023-01-01 ~ 2025-12-31
- 운행기록부사용여부 여 전기이월누적거리 10,000 km
- 출퇴근사용여부 여 출퇴근거리 km

㉡ 업무용승용차를 리스(렌트)한 경우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기초정보관리- 업무용승용차등록]메뉴에 임차여부 및 임차기간 보험기간을 기재한다.

업무용승용차등록

7007 주석회사 세무사항

법인

6기

2023-01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차기

F6 불러오기

F7 엑셀자료출리기

C6 전기누적거리불러오기

C7 엑셀자료내려받기

코드	차량번호	차종	사용
0101	25가8888	그랜자	사용
0102	33나5555	아우자	사용
0103	44다9999	소나투	사용

차량 상세 등록 내용

1. 고정자산계정과목

2. 고정자산코드/명

3. 취득일자

4. 경비구분

5. 사용자 부서

6. 사용자 직책

7. 사용자 성명

8. 임차여부

9. 임차기간

10. 보험가입여부

11. 보험기간

12. 운행기록부사용여부

렌트

2022-01-01 ~ 2024-12-31

가입

2023-01-01 ~ 2023-12-31

여

8.000번대/판관비

영업부장

나부장

50,000 km

(가) 업무용승용차 비용 계정과목

① 비용계정 구분설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등록]에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추가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계정도 차량유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F4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7월 6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차기

영상
최근
연관
보호

F3 세목추가

F4 수정적요

F4 업무용차일괄설정

F6 고정자산(유형)추가

F7 고정자산(무형)추가

F8 표준재무대표누락코드확인

계정체계	코드/계정과목	성격	관계
당좌자산 : 0101-0145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3.경비	
재고자산 : 0146-0175	0861 사용자배정계정과목		
투자자산 : 0176-0194	0862 사용자배정계정과목		
유형자산 : 0195-0217	0863 사용자배정계정과목		
무형자산 : 0218-0230	0864 사용자배정계정과목		
기타비유동자산 : 0231-0250	0865 사용자배정계정과목		
유동부채 : 0251-0290	0866 사용자배정계정과목		
비유동부채 : 0291-0330	0867 사용자배정계정과목		
자본금 : 0331-0340	0868 사용자배정계정과목		

계정코드(명)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성격

3.경비

관계코드(명)

영문명

User setup Accounts

과목코드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계정사용여부

1 (1:0/2:부)

계정수정구분

계정과목명, 성격 입력/수정 가능

표준재무대표

93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외화

0.부

업무용차 여부

1 (1:0/2:부)

손익계산서 7007 주식회사 세무

기간 2023 년 12 월

관리용 | 제출용 | 포괄손익 | 표준용

제 6(당)기 2023년1월1일 ~ 2023년12월31일

과 목

입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경상연구개발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업무용차량유지비
V.영업이익
VI.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법인세 환급액

제출용 계정 등록

No	제출용 명칭	구분	사용	No	코드	계정과목
1	차량유지비	1.사용		1	0822	차량유지비
2	업무용차량유지비	1.사용		2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3				3		
4	장기투자증권	2.투자자산	1.사용			
5	장기매출채권	5.기타비유동자산	1.사용			
6	산업재산권	4.무형자산	1.사용			
7	개발비	4.무형자산	1.사용			
8	매입채무	6.유동부채	1.사용			
9	장기매입채무	7.비유동부채	1.사용			
10	퇴직급여충당부채	7.비유동부채	1.사용			
11	차량유지비	9.판매관리비	1.사용			
12						

※ 퇴직급여충당부채(코드329)는 퇴직급여충당부채(제출용명칭)에 자동합산되므로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본데이터 | 삭제(F5) | 종료(Esc)

② 비용계정 일괄설정

[세무사랑Pro]의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계정을 선택하면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비용과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F3 채목추가 | F4 수정적요 | **F4 업무용차일괄설정** | F6 고정자산(유형)추가 | F7 고정자산(무형)추가 | F8 표준재무제표누적코드확인

계 정 체 계

계	체	계
달	과	자 산 : 0101~0145
채	고	자 산 : 0146~0175
투	자	자 산 : 0176~0194
유	형	자 산 : 0195~0217
무	형	자 산 : 0218~0230
기	타	비유동자산 : 0231~0250
유	동	부 채 : 0251~0290
비	유	동 부 채 : 0291~0330
자	본	금 : 0331~0340
자	본	임 여 금 : 0341~0350
자	본	조 정 : 0381~0391
기	타	포괄손익 : 0392~0399
이	익	임 여 금 : 0351~0380
매	출	원 가 : 0401~0430
매	출	원 가 : 0451~0470
제	조	원 가 : 0501~0600
도	급	원 가 : 0601~0650

코드/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성격	비	관계
0819	임 차	3.경	비	
0820	수 선	3.경	비	
0821	보 험	3.경	비	
0822	차 량 유 지 비	3.경	비	
0823	경			
0824	운			
0825	교			
0826	도			
0827	회			
0828	포			
0829	사			
0830	소			
0831	지			
0832	보			
0833	광			
0834	판			
0835	대			

업무용승용차 관련계정

☒ 세급과공과 : 517, 617, 667, 717, 767, 817
☒ 임 차 료 : 519, 619, 669, 719, 769, 819
☒ 수 선 비 : 520, 620, 670, 720, 770, 820
☒ 보 험 료 : 521, 621, 671, 721, 771, 821
☒ 차량유지비 : 522, 622, 672, 722, 772, 822

업무용승용차 관련계정을 일괄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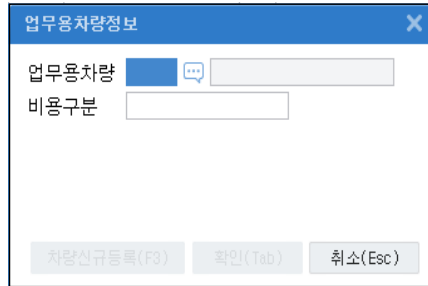
확인 | 취소

계정코드(명) 0822 차량유지비
 성격 비
 관계코드(명)
 영문명 Vehicles Maintenance Expenses
 과목코드 0822 차량유지비
 계정사용여부 1 (1:여/2:부)
 계정수정구분
 표준재무제표 93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외화 0.부
 업무용차 여부 1 (1:여/2:부)

적요NO 현금적요

1	유류대 지급
2	차량수리비 지급
3	정기주차료 지급
4	안전협회비 지급
5	검사비 지급

업무용승용차 관련계정으로 설정된 계정은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입력시에는 유용하지만 관련없는 비용을 입력할 때도 [업무용차량정보]팝업창이 계속 나타나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업무용차량정보 팝업창

업무용차량 [0101] [2571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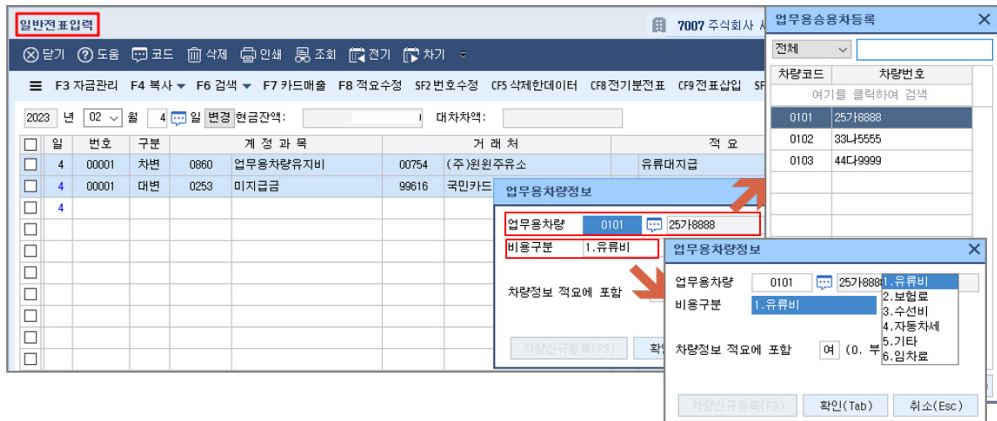
비용구분 [1.유류비]

차량신규등록(F3) 확인(Tab) 취소(Esc)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전표입력

[일반전표입력]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입력할 때 추가로 등록한 계정과목과 비용을 입력하면 [업무용차량정보] 팝업창이 나타난다.

먼저 [업무용차량정보]의 업무용차량에서 [F2 코드]를 클릭하면 [업무용승용차등록]의 차량정보가 나타나면 해당 차량을 선택한다. [비용구분]에 1.유류비, 2.보험료 등 관련비용을 선택하여 [확인(Tab)]한다.



일반전표입력 화면

2023년 02월 4일 월 변경 현금잔액: 대차차역:

일	번호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4	00001	차변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00794 (주)원원주유소	유류대지급
4	00001	대변	0253 미지급금	99616 국민카드	

업무용차량정보 팝업창

업무용차량 0101 [25718888]

비용구분 1.유류비

차량정보 적요에 포함

차량신규등록(F3) 확인(Tab) 취소(Esc)

업무용승용차등록 팝업창

전체

차량코드	차량번호
0101	25718888
0102	33나5555
0103	44다9999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

업무용차량 0101 [25718888] 1.유류비

비용구분 1.유류비 2.보험료 3.수선비 4.자동차세 5.기타 6.일차료

차량정보 적요에 포함 여 (0. 부

차량신규등록(F3) 확인(Tab) 취소(Esc)

(다)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의 [관리비용현황], [관련비용내역], [관리비용합계]에서 [일반전표입력] 또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반영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에서 업무용사용거리를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사용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만 업무사용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용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접대관련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세무사랑Pro]에서 [회계관리 - 재무회계 - 전표입력 -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는 [F6 엑셀업로드]를 통하여 [세무사랑Pro]에 반영할 수 있는데 업무용승용차 운행자는 사용목적별로 주행거리를 구분하여 운행기록부를 엑셀로 작성하면 된다.

사용목적에 따라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비율은 자동으로 계산 반영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6.4. 1. 제정>

사업연도	· · · ~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본정보								
① 차 종		② 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주행거리 (km)	업무용 사용거리(km)		⑩비 고
					⑧출·퇴근 용(km)	⑨일반 업무용(km)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km)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km)		⑬업무사용비율 (⑫/⑪)

☑ 작성 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는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는다.
3. ③ 사용일자를 적는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는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는다.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는다.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는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는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는다.
10. ⑩ ~ 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는다.

2) 타계정으로 대체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자산감모 등으로 재고자산을 판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한다.

타계정 대체거래가 발생하면 대변은 상품 등 계정으로(재고자산 감소), 차변을 매출원가 외 적절한 비용 계정과목으로(비용 발생) 회계처리하고, 대변 [상품 등] 계정의 [적요]에 [8.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하여야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말결산 시 [결산자료입력]메뉴에 정상·비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까지 모두 차감된 실제 기말재고액을 입력하고 [전표추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산분개된다.

대변	0255	부가세예수금	컴퓨터			(주)일선	150,000
대변	0146	상품	08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주)일선	1,200,000
차변	0813	접대비	사업상종여			(주)일선	1,350,000

3) 수입 원재료 등 회계처리

(가)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된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실제 수입재화의 수입가액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수입재화의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나) [매입매출전표입력]입력

No. 11469025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자 보관용)																	
세 관 명	등록번호	121-63-00561										수 입 자	등록번호				
	세관명	인천세관장											상호				
	세관주소	인천시중구항동7가1-18											성명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기간(종전)		12597-21-										사업장 주소					
												업태	제조	도매	소매업	종목	첨구류 및 커튼
년	월	일	공관수조	전	백	십	백	십	백	십	백	십	백	십	백	비고	
21	06	28	05				2	4	8	3	7	4	0	4	0	7172-8로 남부	
월		일		총		국		수		단		공		세		비	
				수입신고필증		참조										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본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문서의 내역을 출력한 것입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를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44-1285)																	

매입매출전표입력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 6기 2023-01-01-2023-12-31 | 20

☒ F3 자금관리 F4 복사... F6 검색... F7 복수거래 F8 과거데이터보기 F11 간편집계... F5 삭제한데이터 F8 전기분전표 F9 하단전표고정 (F) 전자세금계산서발행 (F) 전표크게노

전체입력 전자입력 11.매출과세 17.매출카드 13.매출면세 14.매출건별 51.매입과세 57.매입카드 53.매입면세 54.매입불공 가산세 의제류매입

2023년 12월 31일 변경 현금잔액: 대차차액: 매입

12	31	50076	수입 원재료	24,837,404	2,483,740	01567	인천세관	121-63-00561
공급처별 매출(입)전표 [1]건				24,837,404	2,483,740			

신용카드사: 봉사료:

NO : 50076 (대체) 전표 일자 : 2023년 12월 31일

구분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차변(출금)	대변(입금)
차변	0135 부가세대금	원재료	01567 인천세관	2,483,740	
대변	0103 보통예금	원재료	99617 (주) 국민은행		2,483,740

4) 이자수익과 선납세금 전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경우 대체분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즉, [이자수익] 및 [선납세금] 등을 대체 분개하고, 반드시 동일한 전표 번호로 인식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자수익]계정과 [선납세금]계정 등이 동일한 전표로 인식되면 [법인조정]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기납부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한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성격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납부할 때 각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러므로 [일반전표입력]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계정으로 입력할 때, 먼저 [F8 적요수정]을 통하여 적요를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으로 구분 등록한 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분개하고 구분된 적요를 적용한다면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작성이 편리해진다.

NO	적 요	금액
1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140,000
2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14,000
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846,000
4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5	당기법인세율 대체	
6	당기 소득세율 대체	
7	미지급세금 대체	

8. 영수증수취거래의 구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적격증명서류)⁵⁾ 따라서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증명서류가 적격증명서류인지여부와 적격증명서류 수취제외대상인지여부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인세의 세무조정시 관련 가산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적격증명서류]를 말하며, 적격증명서류이외의 증명서류를 교부받으면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한다.

5) 적격증명서류

- 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조특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제도 46012-10511, 2001.04.10.)
- ④ 현금영수증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나)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 (라)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 (마)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

-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 ⑤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⑦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⑨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⑩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⑪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⑫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⑭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⑮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사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⑦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로서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인터넷, PC통신 및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 ①)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관한 것으로 보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1)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일반전표입력]의 [카드등사용여부]에서 [1. 신용카드 등] [2.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면 [카드등사용여부] [여]로 반영된다.

24	00002	차변	0522	차량유지비	01143	킹주유소	01	유류대 미지급	69,000	
24	00002	대변	0253	미지급금	99616	국민카드통합	07	경비 미지급금발생		69,000
합 계									3,989,692,009	3,989,692,009

카드등사용여부 카

NO : 2 (대체) 전표 일자 : 2023년 5월 24일

계정과목	적요	차변(출금)	대변(입금)
0522 차량유지비(제)	1 유류대 미지급	69,000	
0253 미지급금	7 경비 미지급금발생		69,000
합 계		69,000	69,000

Tip 1.신용카드등, 2.현금영수증 0.부

(2)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일반전표입력]의 [카드등사용여부]에서 [3.부]를 선택한 후 [1. 명세서 해당없음] [2. 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4. 증빙불비(원인입력)] 중에서 해당 사유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카드등사용여부 부

NO : 26

1.명세서 해당없음
2.명세서 제출대상거래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4.증빙불비(원인입력)

계정과목	적요
0830 소모품비(판)	1 소모자재대 지급
0101 현금	
합 계	

Tip 1.명세서해당없음, 2.명세서제출대상거래, 3.명세서제출제외대상, 4.증빙불비(원인입력)

구 분	비 고
1. 명세서 해당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 명세서 제출대상거래	• 적격증빙수취대상으로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	•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 거래인 경우
4. 증빙불비(원인입력)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1) [1. 명세서 해당없음]의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외의 지출액인 경우에 선택한다. 그러나 적격명세서외에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사실은 입증되어야 한다.

구 분	사 례
비사업자와 거래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시 경비인정여부]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된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경비구분	손금인정여부	가산세 적용여부
기업업무추진비(구·접대비)	불인정	적용하지 않음
기업업무추진비 외 기타 경비	인정	적용함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 [2. 명세서 제출대상거래]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일반전표 입력]의 [카드등사용여부]에서 [3.취]를 선택한 후, [2. 명세서 제출대상거래]를 클릭하면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 팝업창이 나타난다.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 팝업창에 기존에 등록된 거래를 입력하거나 기존 거래처가 아닌 경우 [2. 공급자코드]를 제외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Tab)]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급자코드가 부여되고 [영수증거래처등록]에도 등록된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전표입력 할 때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에 관련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세무사랑Pro]의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는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세액계산 및신고서 - 가산세액계산서] 메뉴에서 작성한다.

■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일반전표입력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6기 2023-01-01-2023-12-31 2023 1월 2023

F3 자금관리 F4 복사 F6 검색 F7 카드매출 F8 적요수정 F9 번호수정 F5 삭제한데이터 F6건기분전표 F9전표삽입 F55 일괄삭제 F77 일괄자금 F92 메모 F1 코드변환 F1 기타

2023 년 10 월 일 변경/입금잔액: 대차차액:

일	번호	구분	계정 과 목	거 래 처	적 요	차 번	대 번	유 일
12	00016	차변	0522 차량유지비	01143 - 기공주요수		83,000		
12	00016	대변	0253 미지급금				83,000	
16	00019	차변	0522 차량유지비			76,000		
16	00019	대변	0253 미지급금				76,000	
19	00013	차변	0822 차량유지비			82,000		
19	00013	대변	0253 미지급금				82,000	
23	00021	차변	0811 복리후생비			79,000		
23	00021	대변	0253 미지급금				79,000	
26	00013	차변	0522 차량유지비			85,000		
26	00013	대변	0253 미지급금				85,000	
31	00032	차변	0822 차량유지비			81,000		
31	00032	대변	0253 미지급금				81,000	
5	00028	차변	0830 소모품비			2,150,000		
5	00028	대변	0103 보통예금				2,150,000	
합 계						1,865,458,202	1,865,458,202	

카드등사용여부 부 [2.명세서 제출대상거래]

NO : 28

계정과목

0830 소모품비(만)

0103 보통예금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 - 조회 및 등록

1. 거 래 일 자 2023-10-16

2. 공 급 자 코 드 00101

3. 상 호 주식회사 컴퓨터나라

4. 사 업 자 등록번호 206-86-

5. 주 민 등 록 번 호 -

6. 성 명 김대환

7. 사 업 장 주 소

8. 은행 코 드 001 한국은행

9. 계좌 번 호 123-5258-25021

사업용계좌거래금액

1. 사업용계좌 거래금액 (개인사업자인 경우)

2. 사업용계좌미거래금액

3. 비 고

거래일자를 입력하세요.

※공급자코드는 영수증거래처에 등록된 코드만 입력가능합니다.

※영수증거래처 등록시 상호는 필수값이며 코드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인(Tab) 화면삭제(F5) 취소(ESC)

3년 10월 5일

대변(입금)

1,000

2,150,000

전매라인내

전매라인내

전매라인내

합 계 2,150,000 2,150,000

3)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명수취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 사유로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은 세무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반전표 입력할 때 사유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에서 금융보험용역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송금한 경우 [33.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한 뒤 송금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을 기록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4. 증빙불비(원인입력)]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어떠한 증명 자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수취하지 못한 원인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 업무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는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의 연관관계



제2장

제2장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의 연관관계

1. > 법인 결산

(1) 결산의 의미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회계기간) 말의 정확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와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산이란 한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의 각종 장부를 정리하여 마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결산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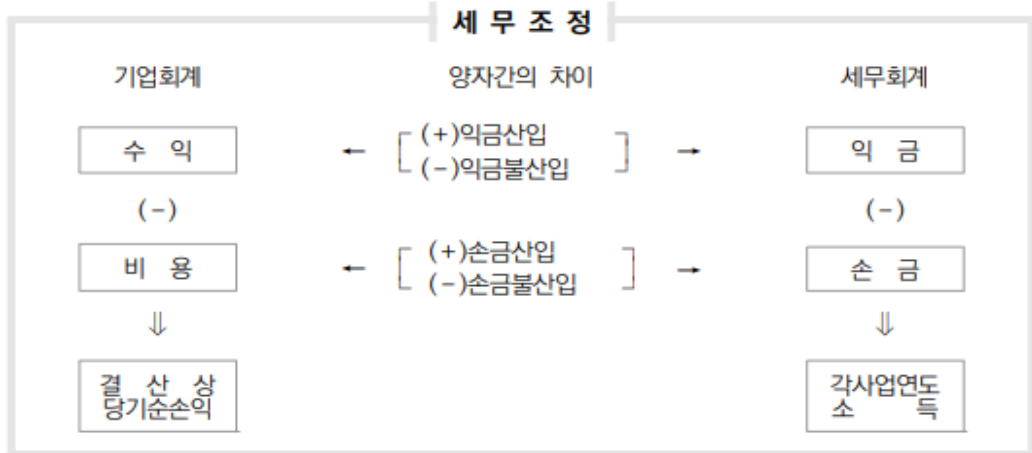
결산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산 예비 절차는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시산표의 작성, 결산 수정 분개, 정산표의 작성 단계이며, 결산 본 절차는 장부 마감 단계로 총계정원장의 마감, 분개장 및 보조장 부를 마감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는 재무제표의 작성 단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2. ➤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조정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누어진다.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이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만 과세소득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결산조정 사항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손금에 관계된 사항으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의 한도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세법상 인정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1) 결산서상 계상액 > TAX상 한도액 : 한도초과액(부인액) 손금불산입
 (2) 결산서상 계상액 < TAX상한도액 : 한도미달액(시인부족액)
 ① 원칙 : 세무조정 없음
 ② 예외 : 감가상각비(과거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추인 가능하다)

결산조정사항은 손금해당액 중 특정 손비항목에만 적용되는 열거주의적인 개념이다. 법인세법은 일부 손금항목에 대해서만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법규정사항이 아니며 법 문구상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가 결산조정이며 그 외의 경우는 전부가 신고조정에 해당한다.

구 분	내 용	
자산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①유형자산 감가상각비 ②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다음 사항은 신고조정이 허용되거나 강제된다.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이전에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의 감가상각비 ¹⁾ ㉡ 법인세 감면기간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감가상각비 ㉣ 2016.1.1.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한 상각범위액보다 장부상 감가상각비계상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자산의평가차손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의 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조정 가능
	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등 중 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평가손실(1,000원 제외) ②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실(1,000원 제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평가손실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등의 폐기손실(1,000원 제외)	
대손금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²⁾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어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소멸시효완성 등 일정한 경우의 대손금은 강제 신고조정사항임
총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사항임
	대손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구 분	내 용	
	신용보증사업 경영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신용보증사업 경 영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신고 조정가능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보험업 경영법인의 책임준비금 과 비상위험준비금)	다음은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경영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 험준비금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사항이면서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예외	㉠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경영법인의 해약환급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용보증사업 경영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다만 이들 중 ㉠~㉣의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이익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그금액이 배당으로 사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신고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되므로 당기 손금해당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산입누락, 금액정정 등의 경우 신청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신고조정사항은 단순신고조정사항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뉘어진다.

① 단순신고조정사항

- 1) K-IFRS를 적용하는 기업 및 감가상각의제시의 감가상각비, 조세특례제한법상 서비스업, 중소기업·중견 기업·대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과세유예를 위하여 세법에서 특정한 규정인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결산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의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산상 비용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 과정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사항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금을 적립한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인 경우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이 손금산입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신고조정을 하면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결산조정을 한 경우보다 배당 가능이익이 증가하는데 이를 배당으로 사외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고조정을 하는 경우 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할 수 없도록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잉여금처분을 통한 적립금의 적립이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인정의 전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경영법인의 해약환급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용보증사업 경영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내용	결산조정대상	신고조정대상
손금산입방법	회사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야만 손금으로 인정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는 경우 모두 인정
법인세신고기한 후 경정 청구(수정신고)	불가능	가능
추후 손금인정 여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4)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세무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세무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처분은 [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분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귀속자를 밝히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의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표시되는데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므로 별도로 소득처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2) 소득처분의 유형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은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구분한다.

(가) 사내유보(유보, △유보)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유보(△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게 된다.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처분액은 기업회계상의 잉여금과 세무회계상의 잉여금간에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나) 사외유출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출자자·임원, 직원 및 기타의 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파악하여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 있다.

사외유출에 해당되는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처분유형	귀속자
배 당	주주 및 출자자
상 여	임원 및 직원(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포함)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유출분이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 및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
기타소득	위 이외의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법정 기타사외유출).

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산입액

- ②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 ③ 접대비한도초과액 및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증거자료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④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⑤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⑥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을 하면서 추계조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차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대납한 소득세 등을 회수하지 않아서 특수관계 소멸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⑦ 불공정자본거래(불공정합병·불공정증자·불공정감자)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 중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 ⑧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또는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법인소득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 ⑩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한도초과액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한도초과액

(다) 기타(잉여금)

세무조정항목이 사외유출에 해당되지도 않고 유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또는 잉여금)라는 예외적인 소득처분을 한다. 기타로 소득처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본잉여금 계상항목의 익금산입(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② 잉여금 수정으로 회계처리된 전기오류수정손익
- ③ 익금불산입항목 중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국세·지방세의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등)
- ④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소득처분 요약]

세무조정 사항	소득처분			귀속자 등	소득자의 귀속	원천징수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 유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소득 (인정상여)	소득세 기본세율
		귀속이 분명한 경우	배당	개인주주, 출자자 (사용인·임원, 법인주주 제외)	배당소득 (인정배당)	소득세 14%
			상여	사용인·임원 (출자임원 포함)	근로소득 (인정상여)	소득세 기본세율
			기타 소득	위 이외의 자에게 귀속	기타소득	소득세 20%
			기타사외 유출	■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 사업소득으로 구성하는 경우) ■ 법정기타사외유출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구성	
	사내 유보	유보		세무상 잉여금 증가 (자산증가·부채감소)		
	그외	기타 (잉여금)		기업회계상 잉여금 적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내 유보	△유보		세무상 잉여금 감소 (자산감소·부채증가)		
	그외	기타		기업회계상 잉여금 적정		

* 추계결정, 축계경정시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추계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의 차이인 세무조정항목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가산되는 조정)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차감되는 조정)으로 나누어 집계하는 표이다. 이 표의 합계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항목에 기록된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이 서식에 포함되지만 특별 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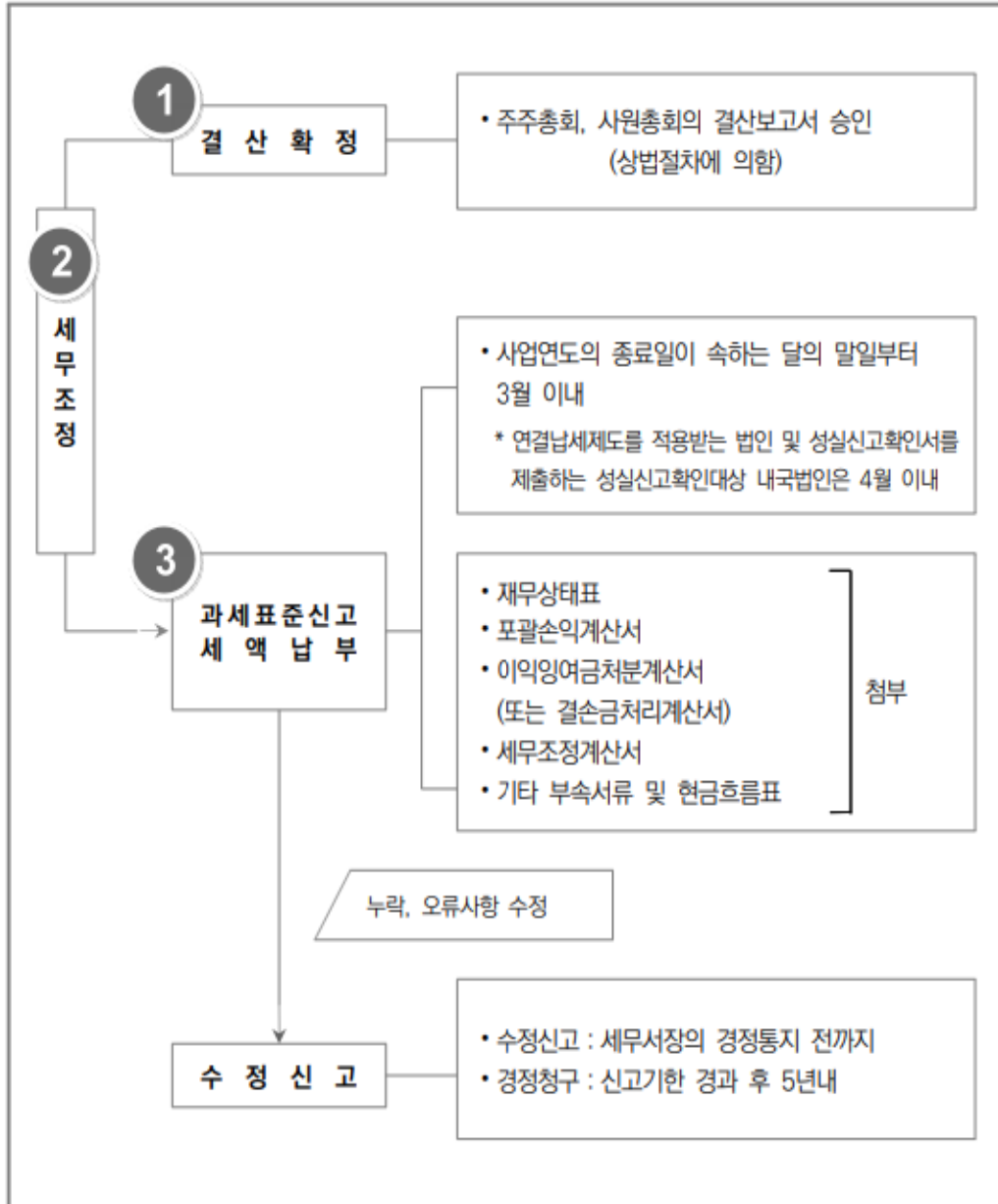
세무사랑Pro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소득및과표계산-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정 중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세무조정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13.02.23 개정) (앞 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손금인정한도액’을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차가감소득금액이 구해진 후 별도로 세무조정이 기재되는 것이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 결산자료의 [세무사랑Pro]입력

(1) 데이터체크

[세무사랑Pro]의 [회계관리 - 데이터관리/관리 - 데이터관리 I - 데이터체크] 메뉴 오류가 있으면 결산 마감을 할 수 없으므로 결산 전에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 시 전표의 차대변 금액차이, 전표번호 오류, 전기재무제표 오류 등과 고정자산 등록 누락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체크] 메뉴를 실행하여야 한다. 기중에도 [데이터체크]를 하면 오류 횟수가 적어지므로 결산 때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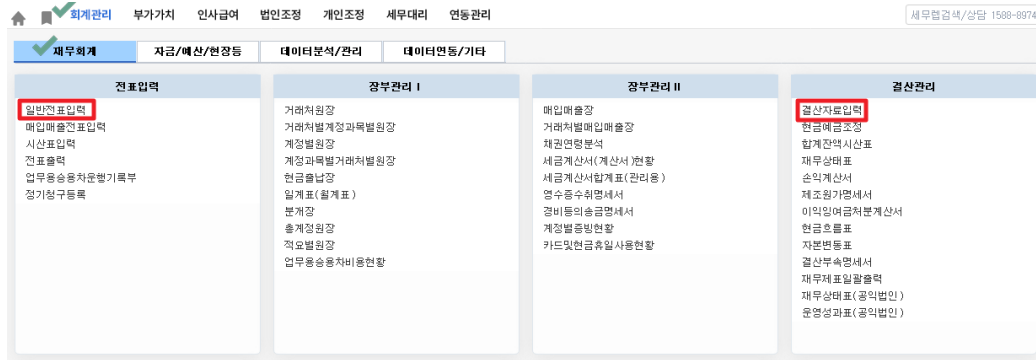
No	구분	에러내용
1	1.에러	거래처별초기이월: (15300)계정금액 < 거래처별합계금액
2	2.경고	거
3	2.경고	거
4	2.경고	거
5	1.에러	데이터체크 [회계기간 : 20230101 ~ 20231231]
6	2.경고	거
7	2.경고	거
8	1.에러	일 반 전 표 체크 [20230101 ~ 20231231]
9	1.에러	일
10	1.에러	일 위 사항을 체크합니다.
11	1.에러	매
12	2.경고	매입매출누락 : (202000200~2020111)정리액기회고계금액 누락
13	2.경고	고정자산등록 : 취득일(20230523)계정과목(20200) 전표누락

(2) [세무사랑Pro] 결산자료 입력

기말 결산자료는 수동결산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결산분개를 직접 입력하고 자동결산항목에 대하여 [세무사랑Pro]의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결산관리 -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필요한 결산항목에 결산반영금액란에 입력한다.

상품 등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결산자료입력]에만 입력할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시가법 적용),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정리, 소모품(비)계

정의 정리, 현금과부족의 정리, 선수수의 및 선급비용의 차감, 미수수의 및 미지급비용의 계상, 부가가치세의 정리는 결산자료입력에는 입력할 수 없으며 일반전표입력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3) [결산자료입력] 메뉴

[세무사랑Pro]의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결산관리 -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결산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면 [F3 전표추가]버튼을 통하여 일반전표에 자동으로 결산분개가 생성된다.

주요한 [결산자료입력]의 입력사항

- ① 상품 등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파악
- ② 건물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 ③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 추정
- ④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⑤ 법인세등 내용

기말 결산자료는 수동결산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결산분개를 직접 입력하고 자동결산항목에 대하여 [세무사랑Pro]의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결산관리 -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결산항목에 [결산반영금액]란에 입력한다.

1) 원가명세서 결정

-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

사용여부	매출원가코드 및 계정과목	원가경비	확인
부	0455 제품매출원가	1 0500번대	제고
부	0452 도급공사매출원가	2 0600번대	도급
부	0457 보관매출원가	3	
부	0453 분양공사매출원가	4	
부	0458 운송매출원가	5	

[참고사항]
 1. 편집(tab)을 선택하면 사용여부를 1.여 또는 0.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여부를 1.여로 입력 되어야만 매출원가코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tab)을 클릭하신 후에 변경하세요)
 3. 사용여부가 1.여인 매출원가코드가 중복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연표에 입력된 데이터로 사용여부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설정하시겠습니까?

예(Y) 아니오(N)

확인(Enter) 편집(Tab) **자동설정(F3)** 취소(Esc)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당기의 매출원가 및 당기순익가 변동되며, 이는 다음연도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차기의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결산자료입력

7007 주식회사 세부사항

연도

2023-01-01~2023-12-31

종가월

2023

연초

연말

☒ 달기

① 도출

☐ 예산

☐ 실적

☐ 인센

☐ 조회

☐ 전기

☐ 차가

☑ 결산

☑ 회근

☑ 연관

☑ 보호

☑ 그룹

☑ 정보

F3 전표추가

F4 원가설정

F4 대손상당

F5 결산분계삭제

F6 잔액조회

F7 갑가상각

F8 대손상각

F8 회직출당

기 간

2023

년 01

월 ~

2023

년 12

월

자동 결산분계 완료

구	코드	과 목	결산분계금액	결산전금액	결산반영금액	결산후금액
		1. 매출액		10,036,600,557		10,036,600,557
	0404	제품매출		10,036,600,557		10,036,600,557
		2. 매출원가	9,219,239,758	9,919,382,978		9,919,382,978
	0455	제품매출원가	9,219,239,758	9,919,382,978		9,919,382,978
		1) 원재료비	9,927,419,458	9,927,577,378		9,927,577,378
	0501	원재료비	9,927,419,458	9,927,577,378		9,927,577,378
	0153	① 기초 원재료 재고액		250,153,964		250,153,964
	0153	② 달기 원재료 매입액		9,377,423,414		9,377,423,414
	0153	③ 기말 원재료 재고액				
		8) 달기 출재조비용		9,793,783,399		9,793,783,399
	0169	④ 기말 재공품 재고액				
		9) 달기 완성품제조원가	9,093,640,179	9,793,783,399		9,793,783,399
	0150	① 기초 제품 재고액		125,599,579		125,599,579
	0150	② 기말 제품 재고액				
		3. 매출총이익		117,217,579		117,217,579

3) 감가상각비

[F7]을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창의 [결산반영]을 선택하면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 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반영된 [13. 회사계상액]의 금액과 [14.경비구 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결산자료입력]의 [결산반영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다만, 전기 과소 상각비를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 등록]의 [13. 회사계상액]에 [사용자수정]으로 반영하였다면 그 금액은 [결산자료입력]의 [결산반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결산자료입력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연월	7/07	2023-01-01~2023-12-31		분기기	2023	연사	2023
① 월가 ② 도출 ③ 복제 ④ 삭제 ⑤ 인쇄 ⑥ 조회 ⑦ 전기 ⑧ 차기 ⑨ 결산 ⑩ 회계 ⑪ 예산 ⑫ 보호 ⑬ 그룹 ⑭ 정보												
F3 전표추가 F4 원가설정 F4 대손설정 F5 결산분개			감가상각									
기 간 2023 년 01 월 - 2023 년 12 월												
구 분	코드	과 목	코드	계정과목명	경비구분	고정자산등록 남가액비	감가상각비(배 조회기) 잔액누수(생중합수)	결산발령금액	결산후금액			
0516		전역비	020200	건물	제조	35,618,549	35,618,549	35,618,549	27,970,835			
0520		수선비	020200	건물	판관	2,490,396	2,490,396	2,490,396	45,000			
0521		보험료	020600	기계장치	제조	11,318,927	11,318,927	11,318,927	1,923,950			
0522		차량유지비	020900	차량운반구	제조	31,726,902	31,726,902	31,726,902	17,568,322			
0526		도시인세비	021200	비용	제조	3,413,168	3,413,168	3,413,168	27,000			
0530		소모품비	021800	열압판	판관	73,160,000	73,160,000	73,160,000	5,862,450			
0531		자금수수료		감가상각비(제조)합계		82,075,546	82,075,546	82,075,546	5,411,700			
0533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판관)합계		75,650,396	75,650,396	75,650,396	23,263,200			
0518		2). 일반간접가상각비							82,075,546			
0202		건물							35,618,549			
0206		기계장치							11,318,927			
0208		차량운반구							31,726,902			
0212		비용							3,413,168			
0217		시설장치										
0455		8 단계 출재조비용							9,875,858,945			
0169		◎ 기말 재평품 재고액										
						새로불러오기		결산반영	취소(Esc)			

■ 고정자산등록사항과 재무제표

- ① 재무상태표의 유형 및 무형자산은 고정자산등록메뉴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이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와 달라진다면 고정자산등록메뉴상의 감가상각비 금액과 장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임의상각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세무사랑Pro]의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 메뉴의 기본등록사항에서 [13. 회사계상액] 옆의 [사용자수정]을 클릭하여 [0](zero)을 입력하여야 한다.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 기초가액	70,000,000
2. 전기말상각누계액(-)	
3. 전기말장부가액	70,000,000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70,000,000
5. 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140,000,000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5 0.451 (8) 연수별상각률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상각률)	42,093,333
13. 회사계상액(12)-(7)	
14.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15.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16. 당기말장부가액	140,000,000
17. 당기의제상각비	

- ③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고정자산관리대장 메뉴에서 재무상태표의 유형 및 무형자산의 잔액과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CF8 장부가액비교]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등록]메뉴에 등록된 자산내역과 관련 자산별 당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비교할 수 있다.
[CF8 장부가액비교]의 [차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등록]에 반영된 [회사계상액]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등록을 누락되었거

[F8]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대손율을 결정하여 입력하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하여 당기 대손상각비계상액이 계산되며 [결산반영]을 선택하여 자동
으로 반영한다.

결산자료입력 7007 주식회사 세무사항 6기 2023-01-01~2023-12-31 종가 2023 연초 2023

F3 전표추가 F4 원가설정 F4 대손설정 F5 결산분개식래 F6 전역조회 F7 갑가상각 F8 대손상각 F9 퇴직충당

기 간 2023 년 01 월 ~ 2023 년 12 월

구분	코드	과목
1. 매출액	0404	제품매출
	0455	제품매출원가
2. 매출원가	0501	원재료비
	0153	① 기초 원재료 재고액
	0153	② 당기 원재료 매입액
	0153	③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노 무 비		
	0503	1). 급여 외
	0508	급여
	0508	2). 퇴직급여(전입액)
	0550	3).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7)경 비		
	0550	1). 복리후생비 외

대손상각							
대손률(X)	1.00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0108	외상매출금	1,680,318,141	0109	대손충당금			
0120	미수금	10,000,000	0121	대손충당금			
0131	선급금		0132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합계					16,803,181	완전	
기타의 대손상각비					100,000	영업외	

추가설정액(결산분별)
[(금액)대손률] - 설정전충당금잔액

16,803,181 완전
100,000 영업외
100,000 영업외

새로불러오기 결산반영 취소(Esc)

5)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Ctrl+F8]을 클릭하면 팝업창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원천징수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추계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결산반영]으로 당기 설정 퇴직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다.

코드	계정과목명	퇴직급여추계액	기초금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잔액	추가설정액(결산반영) (퇴직급여추계액-결산잔액)	유형
0508	퇴직급여	125,000,000	100,000,000			100,000,000	25,000,000	제조
0806	퇴직급여	45,820,000	30,000,000			30,000,000	15,820,000	판매

6) 법인세 등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등]분개는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개하고 당기 설정액을 분개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세 등]이 23,400,000원이고 선납세금은 10,000,000원이면 [일반전표입력]에 다음과 같이 결산분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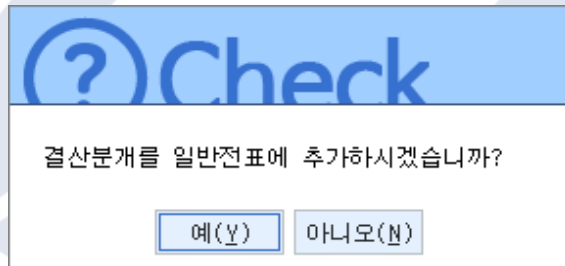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법인세 등	23,400,000	선납세금	10,000,000
		미지급세금	13,400,000

따라서 [결산자료입력]에 입력하려면 [결산자료입력]의 [9. 법인세등]-[1]. 선납세금란에 10,000,000원을 입력하고, 당기 설정액은 [9. 법인세등]-[2]. 추가계상액]에 13,400,000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산분개가 이루어진다.

	8. 법인세차감전이익		-222,219,705	442,274,058	220,054,353
0998	9. 법인세등	23,400,000		23,400,000	23,400,000
0136	1). 선납세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0998	2). 추가계상액	23,400,000		13,400,000	13,400,000
매출액: [10,036,600,557] 당기순이익: [196,654,353] 소득명률: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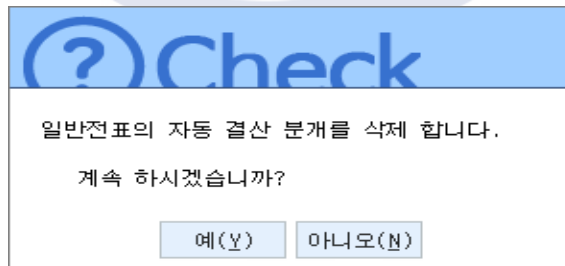
7) 일반전표 자동 결산 분개 실행

[결산자료를 [일반전표입력]에 전표를 자동분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3 전표 추가]를 선택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8) 일반전표의 자동결산분개 삭제

위와 같이 결산자료를 [F3 전표추가]하여 완료한 후 결산입력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Ctrl+F5]를 선택하여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반영된 결산분개를 삭제할 수있다.



(4) [일반전표입력] 메뉴

수동결산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결산분개를 직접 입력한다.

- | | |
|----------------------|-------------------------------|
|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⑧ 소모품(비)계정의 정리 |
| ②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 추정 | ⑨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의 차감 |
| ③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시가법 적용) | ⑩ 미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의 계상 |
| ④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⑪ 부가가치세의 정리 |
| 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⑫ 선납세금의 법인세비용 대체 및 법인세등
추산 |
| ⑥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정리 | ⑬ 현금과부족의 정리 |
| ⑦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 |

4. > 기말절산 절차

(1) 현금예금조정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결산관리 - 현금예금조정]

실무에서 거래 발생시점과 회계처리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시점별로 현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예금계정은 은행의 거래내역 및 잔액과 장부상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잔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 또는 예금계정의 차이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실제의 현금과 예금이 장부에 비해 부족하면 세법상의 업무무관대여금인 가지급금계정이나 가수금계정으로 처리되고 그 금액이 크고 중요할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랑Pro]에서는 현금예금의 차이 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방법이 있다.

1) 현금일괄조정

매일의 현금잔액이 설정된 검토기간 및 조정금액의 범위내의 금액을 유지되도록 현금

잔액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으로 자동으로 조정되며 수정된 내용은 [F4 전표추가] 메뉴 선택하여 일반전표로 생성시켜야 한다.

현금예금조정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 6기 | 2023-01-01-2023-12-31 | 2023 | 2023

F4 전표추가 | CF5 전체삭제

현금일괄조정 | 현금직접조정 | 당좌예금조정 | 보통예금조정 | 계정코드 102-조정

검 토 월 | 2023 | 년 | 01 | 월 | ~ | 2023 | 년 | 12 | 월

계정과목 | 1 (1.가지급금,가수금, 2.인출금, 3.자본금)

조정금액 | 최소잔액 | 500,000 | 최대잔액 | 1,000,000 | 조정단위 | 1,000,000

월/일	수정전금액	직접조정방법 수정전금액	조정액	수정후금액	월/일	차변	대변
01-00					01-05	현금	1,000,000
01-05	-560,000	-560,000	1,000,000	420,000	01-14	현금	2,000,000
01-14	-1,960,830	-960,830	2,000,000	1,039,170	01-26	가수금	1,000,000

2) 현금직접조정

월별로 현금잔액에 일치하도록 수동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금액을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으로 하여 월별로 [F4 전표추가] 메뉴를 통하여 일반전표로 생성한다.

현금예금조정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 6기 | 2023-01-01-2023-12-31 | 2023 | 2023

F4 전표추가 | CF5 전체삭제

현금일괄조정 | 현금직접조정 | 당좌예금조정 | 보통예금조정 | 계정코드 102-조정

조 정 월 | 2023 | 년 | 01 | 월 | 말일잔액 | 739,170

일자	수정전금액	직접조정방법 수정전금액	일자	구분	계정과목	금액
04		600,000	04	입금	가수금	600,000
05	-560,000	20,000	14	입금	가수금	2,100,000

3) 당좌예금조정 및 보통예금조정

당좌예금잔액 및 보통예금잔액의 차이는 모든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직접 조정하므로 [당좌예금조정 및 보통예금조정]을 통한 조정은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다.

(2) 재무제표의 확정

기중에 [재무상태표]메뉴에 들어가면 항상 아래와 같이 차이발생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이는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의미이다.

Info	
재무상태표[미처분 이익잉여금]	10,173,518,68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미처분 이익잉여금]	1,185,776,330
차 액	8,987,742,355
확인	

법인의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① 원가명세서(제조, 도급 등)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 재무상태표 순서로 결산확정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결산확정의 마지막 단계인 재무상태표에서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산이 확정된 것이다. 만약 재무상태표에서 차이가 있다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오류를 수정한 후 다시 결산확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명세서

수동 및 자동 결산분개를 완료하면 (제조)원가명세서가 확정되는데 통상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F3 전표추가]를 선택한 후 [제조원가명세서] 메뉴에서 12월로 조회하면 자동으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확정되면서 원가명세서가 작성된다. 원가명세서는 [F4 원가설정]에 따라 제조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 건설회사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으로 작성된다. 이때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각각 조회할 필요는 없으나 법인조정에서 표준용 원가명세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용을 조회하여 표준용 원가명세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조원가명세서		0201 (주)세무사랑 법인	
F4 원가설정 F6 원가조회 F7 제품수정 F11 계정코드 C6 비율 C9 영어계정		최근 연관 보호 그룹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455 제품매출원가 0500 제조	1.제조원가명세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0500번대 0600
과 목	제11(당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제10(전기) [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금 액	금 액	
1.원재료비		1,098,301,576	700,519,046
기초원재료재고액	26,000,000	29,653,080	
당기원재료매입액	1,082,301,576	696,065,966	
기말원재료재고액	10,000,000	26,000,000	

2) 손익계산서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결산분개와 확정된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면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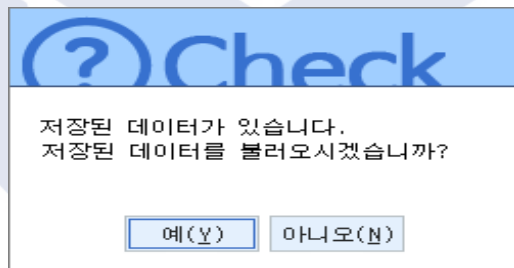
주당순이익은 기말주식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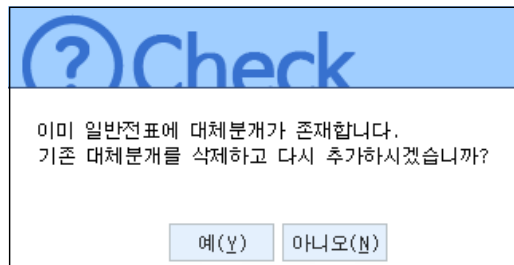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기순손익을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확정되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등의 결의 등 잉여금의 변동내역을 반영하는 서식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당기처분예정일과 전기처분확정일은 주주총회 개최일을 말한다. [F6 전표추가]를 실행하여 손익계정마감과 관련된 전표를 일반전표에 자동생성시킨다.

특히 결산확정절차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결산확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니오]를 선택하여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표추가를 위해 [F6 전표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의 팝업창이 나타나고 이때는 [예]를 선택하여 기존 대체분개를 삭제하고 수정된 전표를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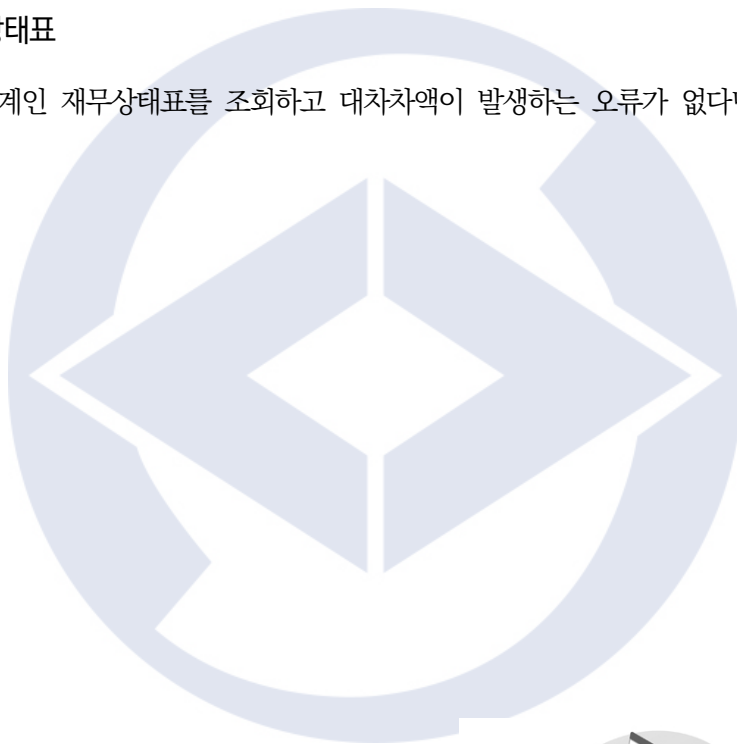


주주총회에서 당기 재무제표가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배당 결의 등 처분내용이 결정되면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이익잉여금의 이입액 또는 처분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때 삽입하고자 하는 마지막줄에 커서를 두면 [F4칸추가]가 활성화되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일(처분확정일)에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수동으로 분개한다.

4) 재무상태표

마지막 단계인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고 대차차액이 발생하는 오류가 없다면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인조정 : 표준재무제표 확인 및 수입금액조정



제3장

법인조정 : 표준재무제표 확인 및 수입금액조정

제3장

1. > 표준재무제표확인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전자신고할 때에 제출되는 서식이다. 이는 기업간 비교를 통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통일된 계정과목으로 작성되어진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 메뉴의 계정과목별로 표준재무제표의 연결코드가 설정되어 [회계관리-재무회계-결산관리]에서의 재무제표가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조정]의 표준재무제표로 자동변환된다. 따라서 [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서 계정과목을 추가할 때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의 연결코드를 설정하며, 표준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신고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

0201 (주)세무사랑 법인 11기

☒ 닫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처기

영상 최근 연관 보호 그룹 정보

F3 서목추가 F4 수정요 F5 업무용처일괄설정 F6 고정자산(유형)추가 F7 고정자산(무형)추가 F8 표준재무제표유연코드확인

계	정	체	계	코드/계정과목	성격	관계	계정코드(명)
0860	업	무	용	차	량	유	지
0861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2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3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4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5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6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7	사	용	자	설	정	계	정
0868	사	용	자	설	정	계	정

성격: 3.경 비

계정코드(명): 0860 업 무 용 차 량 유 지 비

관계코드(명):

영문명: User setup accounts

과목코드: 0860 업무용차량유지비

계정사용여부: 1 (1:여/2:부)

계정수정구분: 계정과목명, 성격 입력/수정 가능

표준재무제표: 93 13.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외화: 0.부

업무용차 여부: 1 (1:여/2:부)

[세무사랑Pro]의 법인세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용 재무제표 조회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 - 표준재무제표]를 저장한 후 [회계관리]에서 결산이 수정되어 재무제표가 변동되었으면 [법인조정]의 표준재무제표 등 각각 재실행하여 [F12 불러오기]한 후 [F11 저장]하여 변동된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회계관리		부가가치		인사급여		법인조정	개인조정	세무대리	연동관리
세무법검역/상담 1588-8974									
과표및세액계산 공제감면 기타서식/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성실신고 회사조정메뉴									
보고서/기초정보관리			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조정			소득및과표계산		세액계산및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출발표 세무조정계산서일괄출력 결산부속서류일괄출력 세무조정계산서포지 결산보고서포지 일괄출력PDF문서보기 회사등록 환경등록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조정과목등록 조정반(지정, 변경지정)신청서 세무조정계산서(전자책)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자료명세서 소득구분명세서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출연금등의익금불산입명세서 채고자산평가익금불산입신청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특례신청서 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특례계산서 법인세납부서 과세표준조정신고서및추가지급납부계산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서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 재무상태표

[회계관리-재무회계-결산관리- 재무상태표]의 [표준용]에서 작성되어 [법인조정-과표 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조정-표준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면 된다.

표준재무상태표를 실행하기 위해 ① [F12 불러오기] 한 후 ② [F11 저장]한다. [회계관리]의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표준재무제표의 [CF8 편집]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다.

표준재무상태표 정기 0201 (주)세무사랑 법인 11기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평가 ☑ 차기

☰ F4 전기서식 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간역조회 F11 저장 F7 법인선택 F8 편집 F12 불러오기

일반법인용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차변잔액	차변합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변합계	대변잔액
761,519,043	18,053,358,938	I. 유동자산	01	17,291,839,895	
659,457,983	12,410,577,275	(1) 당좌자산	02	11,751,119,292	

2)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를 실행하기 위해 ① [F12 불러오기] 한 후 ② [F11 저장]한다. [회계관리]의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CF8 편집]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다.

표준손익계산서 정기 0201 (주)세무사랑 법인 11기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평가 ☑ 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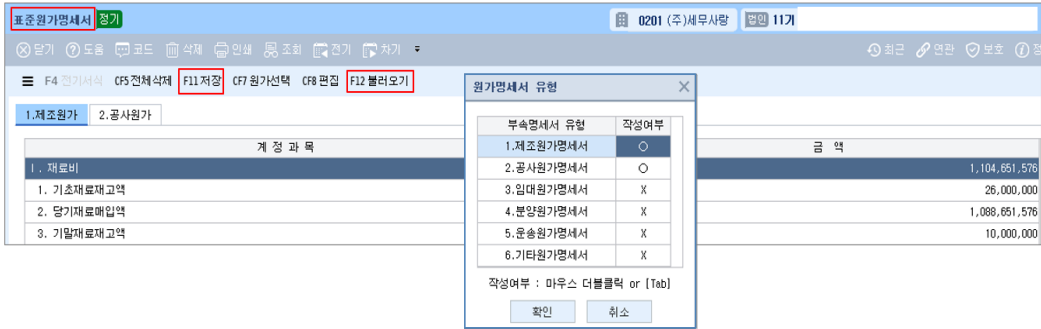
☰ F3 조정등록 F4 전기서식 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간역조회 F11 저장 F7 법인선택 F12 불러오기

일반법인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I. 매출액	01	2,151,691,700	23.통신비	109	11,677,530
1. 상품매출	02	745,020,000	24.운반비	110	390,000
가. 국내상품매출	03	745,020,000	25.보관료	111	

3) 표준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 유형]에서 해당 명세서를 선택한다. 표준원가명세서를 실행하기 위해 ① [F12 불러오기] 한 후 ② [F11 저장]한다. [회계관리]의 작성된 원가명세서를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표준원가명세서의 [CF8 편집]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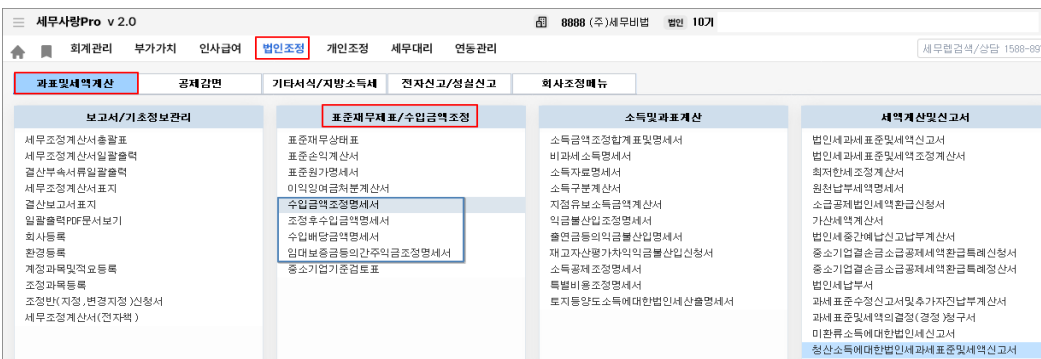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실행하기 위해 ① [F12 불러오기] 한 후 ② [F11 저장]한다. [회계관리]의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의 [CF8 편집]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다.



2. ➤ 수입금액조정

수입금액조정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간주익금조정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개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은 기업회계상의 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세법상의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다.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된 수입금액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한지 확인하고,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7호 서식)]상의 [④ 수입금액조정조회]의 금액과 같다.

또한 기업추진업무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므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③ 결산서상의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입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란에 입력된다.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 (을))]상의 [③ 합계]란에 기입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한도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거래형태별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법인세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상품 · 제품 등 (부동산은 제외)	상품 · 제품 등을 인도일한 날	
위탁매출	수탁자가 매매한 날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표시한 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부동산 등)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인도일의 익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① 비중소기업 경우 ① 원칙:인도일 ④ 특례:장부에 계상시는 회수기준 (회수할 금액, 회수한 금액 중 큰 금액)인정	원칙: 인도일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가능

구분	법인세법	일반기업회계기준
	② 중소기업 경우 :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판매장려금	약정상 지급기일(약정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에 매출차감	판매시점에 추정액계상 가능시 매출차감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장·단기불문진행기준 단,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 등→ 결산상 진행기준 인식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 정 허용	원칙: 장·단기불문 진행기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용역매출 및 단기예약매출은 완성기준적용 가능
지급이자	원칙: 지급의무확정일(이자지급기일) 예외 : 기간경과분 비용인정 (발생주의 허용)	발생주의(기간경과 미지급이자 계상)
수입이자	실제로 지급받는 날(발생주의 배제) ① 금융기관:원천징수되는 이자(채권, 증권 이자) 등이이자지급기일(소득세법상 이자 수입시기). 단, 장부상 기간 경과이자에 대하여 미수이자 계상시 허용(원천징징수되는 이자수익 제외) ② 일반법인 이자지급기일(소득세법상 이자수입 시기 -발생주의 배제)	발생주의(기간경과이자 미수이자 계상)
금융기관수입금액 (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 등)	실제로 수입된 날 (선수입분은 제외) 단, 장부상 기간경과보험료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 계상시 허용	발생주의(기간경과이자 미수이자 계상)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수입시기 준용	주주총회일
임대료	약정일(약정없으면 회수일) 단, 장부상 기간경과 임대료에 대하여 미수 임대료 계상시 허용	발생기준
금전등록기 설치법인	현금주의	발생기준

① 해외현물출자시 귀속시기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자산의 선적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하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②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제도에 의해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시 동 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해당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③ 과거 삭감급여 지급시 손익귀속시기

노사협의 등에 의해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삭감근로 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자동차보험료는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을 각 사업연 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손해배상금은 법원판결확정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임. 단,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 계상시는 계상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2) [세무사랑Pro]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수입금액조정 계산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기타수입금액조정 - 수입금액조정계산]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① [수입금액조정계산]에서 [③결산서상 수입금액]은 [①항목]란에 커서를 두고 [1. 매출]과 [2. 영업외수익] 중에서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선택한다.
- ② [②계정과목]란에 커서를 두고 [F4 매출조회]의 팝업창이 나타나면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중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클릭하여 [③ 결산서상의 수입금액]에 반영한다.
- ③ 작업진행률의 차이 등으로 수입금액 조정을 할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조정] 탭으로 이동하여 탭에서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 세무조정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정기]

☒ F3 조정등록 ☒ F4 매출조치 ☒ F5 전체삭제 ☒ F7 원장조회 ☒ F11 저장 ☒ F12 불러오기

수입금액조정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조정

1. 수입금액 조정계산

No	①항 목	②계정과목	③정산대상 수입금액
1	매출	제품매출	850,500,000
2	매출	공사수입금	589,545,000
3	매출	임대료수입	95,850,000
4	영업외수익	잡이익	5,577,950
5			

매출소계 1,535,895,000
영업외수익소계 5,577,950
총계 1,541,472,950

확인 [Tab] 취소 [Esc]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정기]

☒ F3 조정등록 ☒ F4 매출조치 ☒ F5 전체삭제 ☒ F7 원장조회 ☒ F11 저장 ☒ F12 불러오기

수입금액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No	①공사명	②도급자	③도급금액	④배당사업연도말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시간별)	⑤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별)	⑥진행률 (④/⑤)	⑦누적금액 산입액 (③×⑥)	⑧전기말누적 수입계상액	⑨당기회사 수입계상액	(16)조정액 (⑧-⑨)
1	A공사	(주)대한	700,000,000	505,000,000	650,000,000	77.69	543,830,000	259,540,000		284,290,000
2	B공사	(주)민국	500,000,000	105,000,000	350,000,000	30.00	150,000,000			150,000,000

- ④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기타수입금액조정] 탭에서 조정된 금액은 [수입금액조정계산] 탭에서 [2. 수입금액조정명세]란에서 조정사항을 집계한 금액이며 이를 [조정(④가산/⑤차감)]에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다음의 경우로서 인도(완성)기준에 의하여 세법상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장부상의 매출과 세법상의 매출차이를 조정한다.

- ① 중소기업의 단기건설용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 ②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③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서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의 예약매출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용역수익을 인식할 경우 에 작성하는 것으로 공사건별로 ⑨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 익실현이 작업시간,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

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 말 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 수입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인 ⑯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 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는다.

나. 기타 수입금액

상기 '가'와 '나' 이외의 영업수익(매출액)으로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재구매약정이 있는 판매 금액 (유상사급), 백화점납품업체와 백화점매출(대리 판매), 반품가능매출 등이 있다.

②구분란에 재구매약정 있는 매출, 백화점매출, 위탁판매, 반품가능매출,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⑤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 조정차감란에 적는다. ⑥ 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의 손금산입에 옮겨 적는다.

- ⑤ [F3 조정등록]을 선택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F3 조정등록]시 [과목란]에 과목명을 입력하면 등록된 과목과 소득명세 내역이 자동 조회 되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등록된 내용이나 적당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메뉴를 통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다.
소득처분이 [유보]로 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가능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된 자산·부채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⑥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③ 결산서상의 수입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의 1.접대비 입력(을)의 [③ 합계]란에 기입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한도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차액검토]로 구분되어 있다.

(가)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의 [1] 1.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①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별지 제17호 서식)]상의 [④ 수입금액계정조회]의 금액이 자동반영된다. [수입금액]은 [F8 수입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② [① 업태], [② 종목]별로 구분하여 [③기준(단순)경비율변화]은 회사기본사항등록의 입력내용이 자동반영 되지만,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는 업태별, 종목별 표준소득을 코드에 의해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큰 순서대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 5%미만이거나 업종이 많은 경우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타”란에 합계로 처리 한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수정작업 한 경우, 반드시 새로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수정된 수입금액을 다시 불러와서 반영하여야 한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평가년 2023 연차 2023

F3 조정등록 F4 전기서식 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수입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1.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①업 태	②종 목	순번	③기준(단순) 경비율변화	수입금액			⑦수 출 (영세환대상)
				수입금액계정조회 ④계(⑤+⑥+⑦)	내수 판매 ⑤국내생산품	수입상품 ⑥수입상품	
제조업	그외 기타금속 가공업	01	289208	1,029,412,950	833,560,950		195,852,000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02	452118	950,500,000	950,500,000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	03	701201	95,850,000	95,850,000		
		04					
		05					
		06					
		07					
		08					
		09					
		10					
(111)기 타		11					
(112)합 계		99		1,975,762,950	1,779,910,950		195,852,000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입금액 차액검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때 수정신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① [F12]를 클릭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 포함)을 불러온다.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입력한다.
- ② [13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2) 수입금액과의차액내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 금액,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 금액으로 처리)에 원인을 분석하여 입력한다.

■ 차이원인의 예

과세기간차이, 고정자산매각, 간주임대료, 거래시기차이, 자가공급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는 내용(예 : 고정자산 매각 등)은 “+”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는 반영되는 내용(예 : 거래시기차이 가산 등)은 “-”로 반영하여 차이금액을 일치 시켜야 한다.

- 자가공급 :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반출(총괄납 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승인사업자는 제외)
- 사업상증여 : 판매장려물품의 공급
- 개인적공급 : 종업원에게 1인당 10만원 초과 선물제공(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와 설날·추석, 창립기념 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구분하여 각각 판단함)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
- 자산매각 : 그 밖의 자산매각액 : 골프회원권 매각, 잡자 재·부산물 매각(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계상분)
- 작업진행률 차이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 금액(매출액)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완성도 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차액
- 거래시기 차이
: 기업회계와 부가가치세법의 인식시기 차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품가능매출, 재구매약정이 있는 매출(유상사급), 백화점납품업체와 백화점매출(대리판매) 등이 있다. 이 경우 그 차이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④가산 또는 ⑤차감란에 반영한 경우에는 거래시기 차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선수금수령분에 대한 선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거래시기 차이에서 나타난다.

■ 코드 32까지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 ⑭ 구분 공란에 차액항목(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에 계상된 임대료·수수료수입, 판매장려금·관세환급금·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해당 금액을 기입한다.

- ③ [(13)차액]과 [(17)차액계]란의 금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13)차액과 (17)차액의 차이금액]란에 금액은 공란이어야 한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항 18기 2023-01-01-2023-12-31 2기 2023 연시 2023

F3 조정등록 F4 전기서식 F5 전제삭제 F7 원장조회 F8 수입조회 F11저장 F12불러오기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2. 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과세(일반)	과세(영세율)	면세수입금액	합계(①+②+③)	조정후수입금액	차액(⑤-④)
1,791,427,950	195,952,000	28,483,000	2,015,762,950	1,975,762,950	40,000,000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부가세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금액, 포함되지 않았으면 -금액 처리)

구분	코드	(16)금액	비고	구분	코드	(16)금액	비고
자가공급(면세전용통)	21			거래(공급)시기차이금액	30		
사업상등여(결대제공)	22	15,000,000		주세·개발소비세	31		
개인적공급(개인적사용)	23			매출누락	32		
간주임대료	24	7,500,000			33		
자산 유찰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25	17,500,000			34		
매각 그 밖의 자산매각액(부산물)	26				35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 차이	28				37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	29						
				(17)차액 계	50	40,000,000	
				(13)차액과(17)차액계의차이금액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개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차입금 과다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text{보증금 등의 적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365(366) = \text{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 장부 등에 의해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 자산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하고 자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 ① - ②

①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정기예금 이자율 × (1/365(366))

②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 배당금 · 신주인수권처분의 및 유가증권처분의의 합계액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

※ 보증금 등의 적수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의 금액이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한계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한계면적 = MAX [건물정착면적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주택의 연면적]

※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재평가차액과 토지 취득원가는 제외)

■ 세법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로 규정 비교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적용요건	부동산임대가 주업이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인 경우만 적용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적용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적용
주택임대 보증금	제외	포함	제외(면세)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차감	차감	해당없음
신주인수권처분의 및 유가증권처분의	차감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세무사랑Pro]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주)세무비법(내국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가정함.)

사업연도: 2023.1.1~2023. 12. 31 (이자율 2.9% 기준 적용)

임대용부동산 취득일: 2019. 5. 20

취득가액: 토지 ₩300,000,000(4500㎡), 건물 ₩70,000,000(3000㎡)

부동산 임대현황 (2개층 중 1층)

임대사업 개시일: 2020. 7. 20

보증금: ₩150,000,000 (180㎡)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금액: 이자수의 ₩5,674,000 중 ₩600,000

①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임대보증금 계정에 대한 변동내역을 [F2불러오기]를 통해 반영한다.

②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29)과목]에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을 입력하고 (30)계정금액 중 (31)보증금은 용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③ [1. 임대보증금등 적수]의 ⑦ 익금산입금액을 F3 조정등록을 선택해서 세무조정을 반영한다.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0101 (주)세무사랑 18기

F3 조정등록 F4 적수계산 F5 전제삭제 F7 원장조회 F8 수입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건물비 상당액 적수계산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① 임대보증금등 적수	② 건설비 상당액 적수	③ 보증금잔액 ((①-②)/365)	④ 이자율 (X)	⑤ (X③④) 익금상당액	⑥ 보증금운용 수입	⑦ 익금산입금액
54,750,000,000		150,000,000	2.9	4,350,000	600,000	3,750,000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No	⑧ 일 자	⑨ 적 오	입금액	⑩ 임대보증금누계 반환액	잔액누계	⑪ 일 수	⑫ 적 수 (⑩⑪)
1	01	01 전기이월	1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		계	150,000,000	0	150,000,000	365	54,750,000,000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인분계산	⑬ 건설비 총액적수 ((20)의 합계)	⑭ 임대면적 적수 ((24)의 합계)	⑮ 건물면적 적수 ((28)의 합계)	(16) 건설비상당액적수 ((⑬⑭⑮)/⑮)
--------------	-----------------------	----------------------	----------------------	-------------------------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No	(29)과 목	(30)계 정 금 액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기타수입금액	(33)비 고
1	이자수익	5,674,000	600,000	5,074,000	
2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속처분	과 목	금 액	소속처분
임대보증금간주익금	3,750,000	기타사회유출			

(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받는 분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 지급이자관련 익금불산입배제금액

1) 수입배당금

배당소득(수입배당금액)에는 의제배당액을 포함하나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배당기준일인 감자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 수입배당금액
- ㉢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

- ①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을 차감한 현금배당 및 의제배당
- ②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제외
- ③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제외

2) 익금불산입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함)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다음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20% 미만	수입배당금의 30%
20% 이상 5% 미만	수입배당금의 80%
50% 이상	수입배당금의 100%

■ (2023년이전)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2023년 선택가능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주권상장법인에 출자분	비상장법인에 출자분	
20% 이상 30% 미만	40% 이상 50% 미만	수입배당금의 80%
30% 이상 40% 미만	50% 이상 80% 미만	수입배당금의 90%
40%	80%	수입배당금의 100%

3)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차감액

내국법인이 차입금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상기 1의 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배당금지급 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익금불산입 차감액

=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율 ×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지급이자

- ① 이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
- ② 장기할부자산취득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연 지급수입 시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 ③ 위 ①계산시 제외되었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포함
- ④매출채권제거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이자비용 계상된 어음할인이자 등은 포함

■ 지급이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주식제외)의 장부가액 적수는 :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이자는 제외된다. 다만,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상 지급이자에서 차감하는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 주택기금차입금이자도 포함된다.
-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4) 차등배당시 배당을 포기한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배당을 포기한 법인주주와 배당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갑)법인의 주주 중 하나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배당금 중 (을)법인의 지분해당액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전액 배정하는 차등배당이 실시된 경우 차등배당금액은 (을)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여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타당하나 이는 (을)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다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세무사랑Pro] 수입배당금명세서

사례

다음은 (주)세무사랑의 제11기 사업연도(2023. 1. 1.~12.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시오. (주)세무사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지주회사가 아니다.

1. (주)세무사랑의 제11기에 수령한 배당금 및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출자법인	배당금액	(주)세무사랑 지분율	취득일	회계처리
A법인	10,000,000	7%	2023.7.1	배당수익
B법인	16,000,000	51%	2023.5.10	투자주식차감
C법인	8,000,000	20%	2022.12.20	배당수익

* 모두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상 보유분임

2. 피출자법인의 취득원가 및 2023년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피출자법인	취득원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A법인	120,000,000	100,000,000
B법인	200,000,000	240,000,000
C법인	50,000,000	40,000,000

3. 그 외(주)세무사랑의 관련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단위:원)	비고
2023년말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1,000,000,000	
2023년도 차입금이자	20,000,000(3,000,000원은 선순위(건설자금이자)로 지급이자가 부인되었음)	장기할부조건 취득시 계상한 현할 차의 상각액 5,000,000 포함

해설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피출자법인	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A법인	10,000,000	30%
B법인	16,000,000	100%
C법인	8,000,000	80%

2.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1) 차입금이자=20,000,000-5,000,000-3,000,000=12,000,000원
-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1,000,000,000×365=365,000,000,000
- 3)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피출자법인	주식 장부가액	일수	주식적수	익금불산입율
A법인	120,000,000	184	22,080,000,000	30%
B법인	200,000,000	236	47,200,000,000	100%
C법인	50,000,000	365	18,250,000,000	100%

4)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피출자법인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A법인	$12,000,000 \times (22,080,000,000 \times 30\%) / 365,000,000,000 = 217,775$
B법인	$12,000,000 \times (47,200,000,000 \times 100\%) / 365,000,000,000 = 1,551,780$
C법인	$2,000,000 \times (18,250,000,000 \times 80\%) / 365,000,000,000 = 480,000$

5)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피출자법인	익금불산입액
A법인	$3,000,000 - 217,775 = 2,782,225$
B법인	$16,000,000 - 1,551,780 = 14,448,220$
C법인	$6,400,000 - 480,000 = 5,920,000$

- ① [1]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의 기준에 작성된 자료가 있다면 [F12 불러오기]로 반영한다. [2. 구분]은 [1. 지주회사]와 [2. 일반법인] 중 선택한다.
- ② 주식 등 발행법인의 정보는 [2]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에서 입력한다.
- ③ [3]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에서 [16. 익금불산입비율(%)]은 [익금불산입비율] 팝업창이 자동 실행되며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익금불산입비율을 선택하면 [(16)익금불산입비율]과 [(17)익금불산입대상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④ [18. 지급이자관련익금불산입배제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⑤ [19. 익금불산입액]을 [F3 조정등록]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동반영 한다.

익금불산입비율

1.지주회사 수입배당금(구)

배당금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 초과 ~ 40% 이하	90%	30% 이상 ~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80% 초과	100%	80% 이상	100%
기타법인	50% 초과 80% 이하 (벤처기업 : 50%초과 80%이하)	90%	50% 이상 80% 미만 (벤처기업 : 50%이상 80%미만)	90%
	50% 이하 (벤처기업 : 20%이상 50%이하)	80%	50% 미만 (벤처기업 : 20%이상 50%미만)	80%

2. 일반법인 수입배당금(구)

배당금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3.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확인 (Tab)

종료 (Esc)

확인(Tab) 종료(Esc)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항 18기 2023-01-01~2023-12-31 부기세 2023 연사 2023

F3 조정등록 F5 견제식제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1. 법인명	2. 구분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대표자성명	6. 업태 + 종목
(주)세무사항		119-81-908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5 (당산동, 당산빌딩)	이세무	제조업

2. 2. 지주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No	7. 법인명	8. 구분	9. 사업자등록번호	10. 소재지	11. 대표자	12. 발행주식총수	13. 지분율(%)
1	A법인	2.기타법인	111-81-25557	서울 서초구 바우로	김대환	7,000	7.00
2	B법인	2.기타법인	211-86-95455	인천사 남동구 남동대로	이민국	51,000	51.00
3	C법인	2.기타법인	884-28-002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김만배	20,000	20.00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배당금수익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익금불산입	23,450,445	기타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No	14.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 법인명	15. 수입배당금액	16. 익금불산입 비율(%)	17. 익금불산입대상금액(15*16)	지급이자	16. 비율(%)	18. 지급이자인익금불산입배제금액 익금불산입 액을대상자회사 주주의 경우가액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18. 배제금액	19. 익금불산입액(17-18)
1	A법인	10,000,000	30.00	3,000,000	12,000,000	30.00	22,080,000,000	365,000,000,000	217,775	2,782,225
2	B법인	16,000,000	100.00	16,000,000	12,000,000	100.00	47,200,000,000	365,000,000,000	1,551,780	14,448,220
3	C법인	8,000,000	80.00	6,400,000	12,000,000	80.00	18,250,000,000	365,000,000,000	480,000	5,920,000
합계		34,000,000		25,400,000					2,249,555	23,150,445

(5)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적용요건

(가)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나)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이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 배당금액을 말한다.

2) 적용배제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익금산입대상 수입배당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 포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금액

- ②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 ㉡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③ 위 ①및 ②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 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조정 :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제4장

법인조정 :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1. > 감가상각의 특징

(1) 원칙 : 임의상각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에 의한 추가 손금산입, 또는 감가상각비 누락 및 부족액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에 의한 내용연수의 수정과 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예외 : 신고조정(강제상각)

- ① 결산조정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 감면을 받을 경우(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등) 기업이익의 임의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② 국제회계(IFRS)가 도입된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범위액이 세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보다 적을 경우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③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확인사항

1)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확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별표6]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별표5]의 자산은 그 별표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3)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신고조정사항, 강제상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관련 유보잔액 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영업권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세무조정
상각범위액 > 회계상상각비	손금산입(차액) 유보
상각범위액 < 회계상상각비	손금불산입(차액) 유보

4)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자산 중 금형 제외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감가상각시부인계산 없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자산 중 단기사용자산에 금형이 2020.02.11. 세법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금형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5)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적용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의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50%~기준내용연수)

6) 결손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 홈페이지 제작비용, 도메인의 감가상각여부
-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1)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① 장기할부매입자산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② 금융리스자산

③ 유휴설비

(2)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건설중인 자산

③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④ 조경용 수목

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 취득가액

(1) 일반적인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㉓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㉔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 ㉕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세무조정된 금액 반영) 및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로 보며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 ㉖ 위 외의 기타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한 금액 ② 건설자금이자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①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②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 취득액 ④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초과액

(2)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취득 이후의 지출 중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이라 하며, 동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반면, 해당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동수익적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 해당 사례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시의 건물취득 및 철거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되는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
-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부담한 공공하수도의 개축 공사비
-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비(시제품 매각액 제외)
- 수입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해 지출한 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매입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
-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역용·증축용·착용용·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동물의 사육비 등
- 목야지(초지)의 최초 조성비
-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
-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토지가액
-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
-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변경한 경우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
- 소프트웨어 버전업을 위해 추가지출한 금액
- 건축사용 불가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
- 법인사옥과 연결된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연결통로 건설비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자가 부담하는 과밀부담금
- 건물신축시 주민들에 대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
-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소요된 비용
-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2) 수익적지출 해당 사례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새로운 공장으로 기계시설 등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와 인건비
-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미상각잔액
- 분쇄기에 투입하는 강구(steel ball)비
-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
-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비용
-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 교체 비용 신축건물의 지하층 터파기 공사 후 되메운 경우 터파기 공사비용
- 기존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세무상 처리

구분	자본적지출로 처리	수익적지출로 처리
자본적지출 해당액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① 수선비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령 31조 ③)에 해당 되는 경우: 세무조정 없이 당기 손금으로 인정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계산
수익적지출 해당액	손금산입(유보)하고 감가상각 범위액계산시 동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세무조정 없음

3. > 내용연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내용연수
시험연구자산	1	건물부속설비	5
시험연구자산	2	건축물	5
시험연구자산	3	기계장치	5
시험연구자산	4	광학기기	3
시험연구자산	5	시험기기	3
시험연구자산	6	측정기기	3
시험연구자산	7	공구	3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
무형고정자산	2	특허권	7
무형고정자산	3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0
무형고정자산	4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3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내용연수
차량, 공구, 비품	1	차량운반구(운수업등 사용시 제외), 공구, 기구 및 제품	5
선박 및 항공기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등 사용시 제외)	12
건축물	3	연와조, 불력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목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10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내용연수
농업, 임업, 어업	1	농업	5
농업, 임업, 어업	2	임업	5
농업, 임업, 어업	3	어업	10
광업	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
광업	6	금속광업	10
광업	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0
과업	8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0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0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0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0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① 기준내용연수 : 위의 <별표 5>와 <별표 6>에서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 ② 시험연구용자산.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차량 및 건축물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가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무신고 시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가능한 방법	무신고시 적용방법
유형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업무용승용차(2016. 01. 01. 이후 취득분)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폐기물매립시설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이외의 자산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무형자산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구분		신고가능한 방법	무신고시 적용방법
무형자산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주파수이용권, 공항 무형항만시설관리권 자산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산업재산권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등. • 20년 상각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	
	영업권	• 사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영업상의 비법, 명성, 초과수익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예: 점포관리금, 프리미엄등) • 설립인가, 허가, 가입등을 위하여 부담한 입회금, 기금등으로서 반환청구 할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반환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입비. • 5년 정액법 상각	
	그 외 무형자산	정액법	

*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재지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기한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에 규정된 날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②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5.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변경사유

-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또는 사업을 인수·승계한 경우
- ②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 총주식의 20% 이상 취득한 경우
- ③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종전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승인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국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3)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1)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하도초과액) × 신고내용연수의 정액법상각률

2) 정률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의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하도초과액) × 신고내용연수의 정률법상각률

6. ➤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계상액
- ②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계상액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 감가상각비계상액
- ④ 전기과소계상 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계상액
- ⑤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감가상각변경누계초과액
- ⑥ 즉시상각의제 해당금액

(2) 시부인단위 : 개별자산별 시부인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시부인계산하므로 자산별 부족액과 부인액은 통산되지 않으며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은 없으나, 당해 자산에 상각부인액이 있을 경우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감가상각비회사계상액 - 세무상 한도액(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단,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

(3) 상각부인액의 처리

1) 당기발생분

당기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으로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당기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액의 증가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손금추인

당기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신규취득·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1) 신규취득자산(월할상각)

$$\text{감가상각범위액} = \text{연상각범위액} \times (\text{사용월수}/12)$$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업무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므로 12월 31일 취득(사용)한 자산은 당기의 1년분 상각범위액의 1/12이 적용되며, 6월 30일 취득(사용)자산은 당기의 1년분 상각범위액의 7/12이 적용된다. 이는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또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체가동일부터 실시한다.

2) 양도자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하지 않는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도 전액 손금산입 된다는 것이며 기업회계에서는 당연히 양도 기간에 대한 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7. > 즉시상각의 의제

(1) 의의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비용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액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여야 한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한다.

- ①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②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③ 당기의 건설완료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2) 즉시상각의제 예외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 바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지 않고 당기손금으로 인정한다.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즉시상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 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②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호텔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화장대, TV 등 객실비품)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어구·공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어구·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②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CD)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④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 2020.02.11.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020.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① 2020.02.11. 이전 취득한 금형
취득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한 경우: 취득시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한다.
- ② 2020.02.11. 이후 취득한 금형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미술품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것을 취득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된다.

3) 수선비

-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③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구분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수선비 < 수선비특례 기준금액	세무조정 없다.
당기수선비 ≥ 수선비특례 기준금액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 부인한다.

4) 생산설비의 폐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①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②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개발비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적용한다.(법인령 31 ⑧)

법인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령 71 ⑤)

-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8. ➤ 결산시 유의사항

(1) 유형·무형자산의 장부관리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이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누락되거나, [세무사랑Pro]의 [고

정자산등록] 메뉴의 [13.회사계상액]과 장부(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상의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이월할 경우 차기년도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가상각비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비 강제상각(감사상각의제)

법인세 신고 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의제상각액에 대한 유보잔액 관리도 필요하다.

(3)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 신고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은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 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에서 [F4 일괄계산]에서 [연말정산]을 선택하여 반드시 감가상각비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4)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의 누적관리내용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각방법 중 정률법의 상각부인액은 차기이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전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의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고정자산등록 사항에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당기 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 제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신고하려면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감가상각조정 - 감가상각방법(연수, 변경등)신고서]에서 작성한다.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5%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거나 중고 등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취득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 [세무사랑Pro]의 [고정자산등록]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고정자산및감가상각 - 고정자산등록] 또는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감가상각조정 - 고정자산등록]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1.기초가액	
2.전기말상각누계액(-)	
3.전기말장부가액	
4.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55,000,000
5.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55,000,000	
11. 내용연수/상각률(월수)	5	0.451 (11) 연수별상각률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상각률)	22,737,916	
13. 회사계상액(12)-(7)	22,737,916	사용자수정
14. 경비구분	6.800번대/판관비	
15.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22,737,916	
16. 당기말장부가액	32,262,084	
17. 당기의제상각비		
18. 전체양도일자	----	
19. 전체 폐기일자	----	
20. 업종		

(1) [4.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당기에 신규로 취득하였거나 기존 자산의 자본적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입력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2)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당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이는 당기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증가와 당기 감가상각비로 인식되어 당기상각범위액이 계산되며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시 세법상의 [회사계상 상각비]로 반영된다.

즉, [고정자산등록] 메뉴의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13. 회사계상액]은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란의 금액만큼 감소하는데 이는 세무상 회사계상액을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과 [13. 회사계상액]의 합계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3) [8.전기말부인누계액(+)] : (정률법 상각대상에 가산)

전기말 감가상각부인액을 개별자산별로 입력하며 이를 반영하여 상각범위액이 계산된다.

즉, [고정자산등록]에서 [8. 전기말부인누계액]에 금액을 입력하면 [12. 상각범위액]의 변동이 발생한다.

(4) [9.전기말의제누계액(-)]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감가상각비가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입력한다. 당기에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16. 당기의제상각액]란에 직접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차기이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누적관리 할 수 있다.

(5) [13.회사계상액]

감가상각대상자산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나,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 감가상각비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하여 [F7 사용자수정]을 선택하여 수정금액을 입력한다([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반영) 다만, 결산관리의 [결산자료입력]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수정분개]할 때 잉여금처분으로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반영된 상각비는 차감된 금액이다.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전기말부인누계액]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13. 회사계상액]이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상각비와 달라진다.

(6) [14.경비구분]

[경비구분]은 원가를 구분할 수 있는 메뉴로써 구분된 원가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입력]및 [일반전표입력] 할 때 자동으로 분개가 반영된다.

14.경비구분	1. 500번대(제 조)	6. 800번대/판관비
15.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2. 600번대(도 급)	22,737,916
16.당기말장부가액	3. 650번대(보 관)	
17.당기의제상각비	4. 700번대(분 양)	32,262,084
	5. 750번대(운 송)	
	6. 800번대(판관비)	

10. > [세무사랑Pro]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와 [양도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회사계상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F12 불러오기]클릭하여 조회한 후 세무조정사항은 [F3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비회사계상액 - 세무상 한도액(상각범위액)
= (+) 삼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단,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

제 4 장

(1)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F12 불러오기]선택하여 [유형자산(정액법)] 등을 클릭하면 자산내역별로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한 내용이 반영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을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하면 편리하다.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F3 조정등록 F4 간편등록 F6 구분별조회 F7 간접법 F8 기간별 계 F12 불러오기				최근			
유형자산(정액법)				유형자산(정률법) 무형자산			
계정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입력내용	금액	총계		
0202	000009	2021-09-23	업종코드/명 08				
0202	000010	2022-09-23	합계표 자산구분 1. 건축물				
0202	000011	2023-05-23	(4)내용연수(기준, 신고)	40			
0208	000001	그랜저(자가)25기8888	2022-01-01				
			상각	재무상태표	(5)기말현재액	1,218,863,420	1,345,531,765
			자산가액	(6)감가상각누계액	32,971,585	80,606,945	
			계산	(7)미상각잔액(5)-(6)	1,185,891,835	1,264,924,820	
			의	회사계상	(8)전기말누계	2,500,000	22,500,000
			상각비	(9)당기상각비	30,471,585	58,106,945	
			기초	(10)당기말누계(8)+(9)	32,971,585	80,606,945	
			가액	자본적	(11)전기말누계		
			지출액	(12)당기지출액			
				(13)합계(11)+(12)			
			(14)취득가액((7)+(10)+(13))	1,218,863,420	1,345,531,765		
			(15)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025			
			상각범위	당기산출	(16)일반상각액	30,471,585	58,106,945
			상각액	(17)특별상각액			
			액계산	(18)계((16)+(17))	30,471,585	58,106,945	
			(19) 당기상각시인범위액	30,471,585	58,106,945		
			(20)회사계상상각액((9)+(12))	30,471,585	58,106,945		
			(21)처감액((20)-(19))				
			(22)최저한세액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23) 상각부인액((21)+(22))			
			부인액	(24) 기항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누계	(25) 전기말부인누계액		12,000,000	
			당기말	(26) 당기말부인누계액 (25)+(23)-1241		12,000,000	
			의제상각액	(27) 당기의제상각액 1△(21)-1-(24)1			
			(28) 의제상각누계액				

양도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F3 조정등록 F4 간편등록 F7 간접법 F8 기간별 계 F12 불러오기							
유형자산(정액법)		유형자산(정률법)		무형자산			
계정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입력내용		금액	총계
0212	000001	포장기		3. 기타자산			
		2022-11-29		(4)내용연수		5	
				상각			
				대차대조표			
				(5)기말현재액		7,568,000	7,568,000
				자산가액			
				(6)감가상각누계액		3,413,168	3,413,168
				(7)미상각잔액(5)-(6)		4,154,832	4,154,832
				(8)회사계산감가상각비		3,413,168	3,413,168
				(9)자본적지출액			
				(10)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1)전기말부인누계액			
				(12)가감계((7)+(8)+(9)-(10)-(11))		7,568,000	7,568,000
				(13)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451	
				상각범위			
				당기산출			
				(14)일반상각액		3,413,168	3,413,168
				(15)특별상각액			
				(16)계((14)+(15))		3,413,168	3,413,168
				(17)전기말현재해위탁가액		7,568,000	7,568,000
				취득가액			
				(18)당기회계상계산증가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20)계((17)+(18)+(19))		7,568,000	7,568,000
				(21)잔존가액		378,400	378,400
				(22)당기상각시인법위액		3,413,168	3,413,168
				(23)회계상상각액((8)+(9))		3,413,168	3,413,168
				(24)차감액((23)-(22))			
				(25)취제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26)상각부인액((24)+(25))			
				(27)기항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28)당기말부인누계액((11)+(26)-(27))			
				당기말			
				(29)당기의제상각액 1 Δ(24)-I(27)I			
				의제상각액			
				(30)의제상각누계액((10)+(29))			

11. ➤ [세무사랑Pro]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재무상태표상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가액에 당해연도에 양도 및 폐기한 감가상각대상자산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05. 회사손금계상액]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CF5 전체 삭제 F7 원감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자 산 구 분		코드	2.합 계 액	유 형 자 산		6.무형자산	
				3.건 속 물	4.기계장치	5.기타자산	
재무	101.기말현재액	01	1,837,203,099	1,245,531,765	195,000,000	141,138,000	255,533,334
상태표	102.감가상각누계액	02	195,058,099	40,606,945	22,737,916	58,553,238	73,160,000
상가액	103.미상각잔액	03	1,642,145,000	1,204,924,820	172,262,084	82,584,762	182,373,334
	104.상각범위액	04	214,651,432	38,106,945	64,831,249	38,553,238	73,160,000
	105.회사손금계상액	05	172,558,099	38,106,945	22,737,916	38,553,238	73,160,000
조정	106.상각부인액 (105-104)	06					
금액	107.시인부족액 (104-105)	07	42,093,333		42,093,333		
	108.기항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08					
	109.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1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1)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②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반드시 업무용승용차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1) 감가상각(강제상각)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구 분	세무조정
장부상 감가상각비 $\geq$ 상각범위액	차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장부상 감가상각비 $\leq$ 상각범위액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

* 2015.12.31. 이전의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상각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3)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8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사업 연도월수}}{12} \times \text{보유기간비율}$$

$$\text{※보유기간비율} = \frac{\text{해당사업연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월수}}{\text{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1)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액	세무조정
$\text{관련비용} \times \text{업무사용비율} \times \frac{\text{실제보험가입일수}}{\text{의무보험가입일수}}$	손금산입액을 초과한 금액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함
-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법령§50의2⑥)

■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제26981호)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118, 2018.02.13.)

1.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가)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보험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여부		업무사용비율의 계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frac{\text{업무용 사용거리}}{\text{승용차별 총주행거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비용 ≤ 1천5백만원	100%
	비용 > 1천5백만원	$\frac{1\text{천5백만원}}{\text{승용차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기준금액 1천5백만원 적용기준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	1천5백만원 × $\frac{\text{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12}$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 보유 및 임차의 경우	=	1천5백만원 × $\frac{\text{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text{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득처

분한다.

$$\begin{aligned} \text{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frac{\text{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text{업무사용 비율}} - 8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사업 연도월수}}{12} \times \text{보유기간 비율} \\ \text{※ 보유기간비율} &= \frac{\text{해당사업연도의 보유기간또는 임차기간월수}}{\text{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end{aligned}$$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함

(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

일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관련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 한다.

구 분	소득처분
일반 감가상각비	유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기타사외유출

(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업무용승용차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

업무용승용차구분	손금산입한도	소득처분
일반	Min (①, ②)	유 보
리스·렌트	① Max[(800만원 - 해당연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 0] ②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	기 타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text{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 = \text{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 8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사업연도월수}}{12}$$

※ 처분손실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액 - 양도가액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해산에 따른 처분손실 등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5) 소규모 법인의 적용특례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규모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손금산입한도 구분	기준금액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기준금액	1천5백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800만원 → 400만원
처분손실 기준금액	800만원 → 400만원

소규모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¹⁾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²⁾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의 50% 이상일 것
 -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소득금액 포함)
 -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③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³⁾가 5명 미만일 것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43 ⑦)
- 2)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3)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④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6) 기타사항

①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할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한다.

②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업무사용비용은 2016.4.1. 이후 적용하며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7) [세무사랑Pro]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기중거래 사항]

① [고정자산등록]

고정자산등록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차기				
CF2 사용잔고 F4 일괄계산 F6 전년도불러오기 F7 회사계상수정 CF7 당기의제상각일괄 F8				
자산계정과목	0208	차량운반구	조정구분	0.전체
☐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상각방법	
☐	000101 제네스 하나1111	2023-01-01	정액법	
☐	000102 그랜자 두울2222	2023-07-14	정액법	
☐	000103 소나티 세3333	2023-09-11	정액법	
☒	000104 케이오 오5555	2021-01-01	정액법	

② [업무용승용차등록]

업무용승용차등록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F6 불러오기 F7 엑셀자료출리기 CF6 전기누적거리불러오기 C				
☐	코드	차량번호	차종	사용
☐	0101	하나1111	제네스	사용
☐	0102	두울2222	그랜자	사용
☐	0103	세3333	소나티	사용
☐	0104	오5555	케이오	사용
☒	0110	세3333	소나티	사용

③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업무용승용차별 관련 비용 구분 입력

④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0101 (주)세무사 | 연월 18기 2023-01-01-2023-12-31 | 7기 18기 2023 연월 2023

F4 일괄작성

관련비용현황 | 관련비용내역 | 관련비용합계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임차구분: 0.전체 | 구분: 0.계정별합계

코드	계정과목	차량코드	차량번호	합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임차료
0860	업무용승용차비	0101	하나1111	13,000,000	7,000,000	4,000,000		2,000,000		
0860	업무용승용차비	0102	두물2222	10,500,000	9,000,000	1,000,000		500,000		
0860	업무용승용차비	0103	세3333	800,000	800,000					
0860	업무용승용차비	0104	오5555	7,200,000	5,000,000	1,500,000		700,000		
0860	업무용승용차비	0110	세3333	21,000,000	4,000,000					17,000,000
[소	계]			52,500,000	25,800,000	6,500,000		3,200,000		17,000,000
[합	계]			52,500,000	25,800,000	6,500,000		3,200,000		17,000,000

(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5년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회사계상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의 [(11)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구 분	세무조정
장부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차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장부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

(9)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과목별세무조정 I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주식회사 세무사랑의 2023.1.1.~12.31.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을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 다음 차량은 모두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행하였다.

(1) 자료

소유구분	자가	자가	리스	자가	자가
사용자	대표	이사	상무	영업팀	생산팀
차량번호	하나1111	두울2222	세3333	세3333	오5555
업무전용보험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운행기록부	총주행거리 50,000km 업무사용거리 35,000km	총주행거리 10,000km 업무사용거리 6,000km	총주행거리 17,000km 업무사용거리 17,000km	총주행거리 10,000km 업무사용거리 10,000km	총주행거리 12,000km 업무사용거리 12,000km
취득(임차)일자	2023.1.1.	2023.7.14.	2020.5.8.	2023.9.11.리스 종료 후, 인수	2021.1.1
처분(해지)일자			2023.9.10		2023.6.15.
업무 용승 용차 관련 비용	감가 상각비	40,000,000	15,000,000	2,000,000 (인수가액 30,000,000)	10,000,000
	유류대	7,000,000	9,000,000	4,000,000	800,000
	보험료	4,000,000	1,000,000		
	자동차세	2,000,000	500,000		
	임차료			*17,000,000	
감가상각비 (상당액)한도초 과 전기이월액				20,000,000	
처분손실					10,000,000

* 보험료 4,000,000, 자동차세 500,000포함

① [CF12 새로불러오기]

[CF12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업무용 승용차별 관련비 정보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및 [업무용승용차등록]에 등록된 자료들을 불러온다.

② [(11)감가상각비]

[(11)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등록]의 [13. 회사계상액]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세무조정되었다면 상각범위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법인

[부동산임대업등 법령39조③항] 체크표시한다.

④ 전기분 자동반영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의 [(37)전기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의 [(56)처분일] 및 [(57)전기이월액]은 전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차량별로 자동으로 반영된다.

⑤ [(44)양도가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승용차를 처분가액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10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정기

F3 조정등록 F4 회관확대 F8 재계산 **1** **2** **3** **4** **5**

No	코드	차량번호	차종	입차	보험(종)	운행기록	월수
1	0101	하나1111	제네스	자가	여 (100%)	여	12
2	0102	두물2222	고려자	자가	여 (100%)	여	6
3	0103	세3333	소나티	자가	여 (100%)	여	4
4	0104	오5555	케이오	자가	여 (100%)	여	6
5	0110	세3333	소나티	리스	여 (100%)	여	9

1 업무용 사용 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기월: 2021-01-01 ~ 기월: 2021-01-01) **2** **3** ☐ 부동산임대업등 법령42조②항

(5) 총주행거리(km)	(6) 업무용 사용거리(km)	(7) 업무용 사용비용	(8) 취득가액	(9) 보유또는임차월수	(11) 감가상각비	(12) 임차료 (감가상각비포함)	(13) 감가상각비	(14) 유류비	(15) 보험료	(16) 수선비	(17) 자동차세	(18) 기타	(19) 합계
12,000	12,000	100,000	100,000,000	6	10,000,000			5,000,000	500,000		700,000		17,200,000
합 계					67,000,000	17,000,000	11,625,000	25,800,000	5,500,000		3,200,000		19,500,000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24) 감가상각비 (상당액) X ((11) 또는 (13)) X (7)	(25) 관련 비용 ((19)-(13)) X (7)	(26) 합계 ((24)+(25))	(27) 감가상각비 (상당액) X ((11)-(13)) 또는 ((13)-(24))	(28) 관련 비용 ((19)-(11)) 또는 ((27)+(28))	(29) 합계 ((27)+(28))	(30) 감가상각비 (상당액)	(31) 손금불산입액	(32) 손금불산입액 합계 ((29)+(31))
10,000,000	7,200,000	17,200,000				6,000,000	6,000,000	11,200,000
60,625,000	32,775,000	93,400,000	18,000,000	8,100,000	26,100,000	36,625,000	62,725,000	56,775,000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 명세

(37) 전기이월액	(38)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39)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40) 손금추인(산입)액	(41) 차기이월액((39)-(40))
24,000,000	6,000,000	30,000,000		30,000,000
44,000,000	36,625,000	80,625,000		80,625,000

4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4) 양도가액	(45) 취득가액	(47) 감가상각비 누계액	(48)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41))	(49) 합계 ((46)+(47)+(48))	(50) 처분손실 ((44)-(49) <0>)	(51) 당기손금불산입액	(52)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50)-(51))
40,000,000	100,000,000	50,000,000	30,000,000	80,000,000	40,000,000	8,000,000	32,000,000
40,000,000	100,000,000	50,000,000	30,000,000	80,000,000	40,000,000	8,000,000	32,000,000

5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 명세

(56) 처분일	(57) 전기이월액	(58) 손금불산입액	(59) 차기이월액((57)-(58))
2023-06-15			

⑥ [(13)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차량의 경우

[(12)임차료(감가상각비포함)]의 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직접 계산하여 [(13) 감가상각비상당액]란에 입력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 총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알 수 없는 경우
(총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text{감가상각비상당액} = 17,000,000 - 4,000,000 - 500,000 - [17,000,000 - 4,000,000 - 500,000) \times 7\%] = 11,625,000\text{원}$$

㉔ 렌트차량의 경우

[(12)임차료(감가상각비포함)]가 입력되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총임차료 × 70%]
가 계산되어 [(13)감가상각비상당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리스나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기에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8백만원 손금추인되므로 사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자가소유차량의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도 매년 8백만원 손금추인되므로 반드시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⑦ [F3 조정등록]

[(31)손금불산입 합계], [(40)손금추인(산입)액], [(52)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 [(58)손금산입액]은 세무조정대상이므로 [F3 조정등록]으로 소득처분 등을 입력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동반영 한다.

[illegible]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㉔ 차량 번호	㉔ 차종	㉔ 취득일 (입차기간)	㉔ 전기이월액	㉔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㉔ 손금추인(산입)액	㉔ 차기이월액 (㉔-㉔)
하나1111	제네스	2023-01-01		20,000,000	20,000,000		20,000,000
두울2222	그랜저	2023-07-14		6,000,000	6,000,000		6,000,000
오5555	케이오	2021-01-01	34,000,000	6,000,000	30,000,000		30,000,000
세8888	소나타	2020-06-08 ~ 2023-09-11	20,000,000	6,826,000	26,826,000		26,826,000
㉔ 합계			44,000,000	36,826,000	80,826,000		80,826,000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㉔ 차량 번호	㉔ 양도가액	㉔ 세무상 정무가액				㉔ 처분손실 (㉔-㉔<0)	㉔ 당기손금산입액	㉔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㉔-㉔)
		㉔ 취득가액	㉔ 감가상각비 누계액	㉔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 액 차기이월액(=㉔)	㉔ 합계 (㉔-㉔+㉔)			
오5555	40,000,000	100,000,000	60,000,000	30,000,000	80,000,000	40,000,000	8,000,000	32,000,000
㉔ 합계	40,000,000	100,000,000	60,000,000	30,000,000	80,000,000	40,000,000	8,000,000	32,000,000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㉔ 차량 번호	㉔ 차종	㉔ 처분일	㉔ 전기이월액	㉔ 손금산입액	㉔ 차기이월액 (㉔-㉔)
㉔ 합계					





법인조정 : 과목별 세무조정 1



제5장

법인조정 : 과목별 세무조정 1

1.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 ①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담보가 설정된 매출채권도 포함)
-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④ 대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금에서 부인된 채권

(2)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제외채권

- 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②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인의 구상채권 :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여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㉔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용보증기금·공제조합 등)이 행한 보증
- 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㉖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통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 업무무관자금대여액(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액을 포함)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불산입한다.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MAX(①, ②)

① 설정대상채권잔액×1%(금융기관등은 2%),

② 설정대상채권잔액×대손실적률

① 설정대상채권잔액 = 회계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당기말 현재 대손금손금부인 누계액 - 설정대상 제외채권가액

㉔ 대손실적률 =
$$\frac{\text{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요건충족분)}}{\text{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요건충족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대손부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가산한다.

(4) 대손충당금 시부인계산

회사상액 -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액 = (+)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유보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① 회사계상액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계정의 기말잔액(당기 설정액이 아님)

② 전기의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총액법을 적용하여 전기의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산입된다.

(5)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시 세무조정

상기의 세무상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을 장부상 대손처리시는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추후 대손요건구비시 손금산입하여 정리한다.

(6) 대손사유

1) 신고조정사항

다음의 대손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일반적인 채권해당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채권의 발생사실이 관련 증명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법인46012-523, 1999.02.08.)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확정일(국심96경2035, 1997.02.05.)

2) 결산조정사항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결산상 회계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할 수 없고, 그 후에 정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①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②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사전법령 해석법인2021-1710, 2021.11.30.)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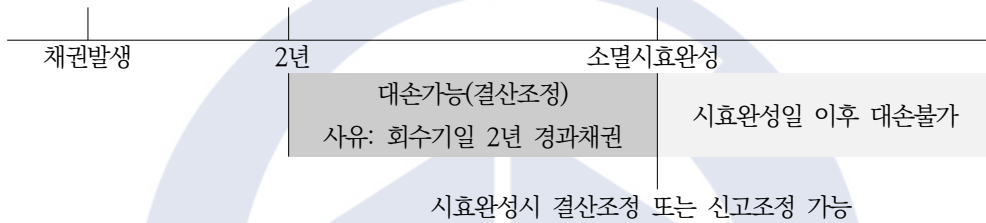
- ①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¹⁾(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②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금액은 수표·어음 1매당 1,000원, 외상매출금은 채무자별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 ③ 대손금 처리 제외된 1,000원은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됨.

1)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란 수표나 어음의 만기일이후 2영업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서면법인2020-5988, 2021.01.2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질의내용: 14년 4월 매출분으로 18년에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손금산입시기(서면법인2020-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거래내용) 상품을 2020.01.20. 판매하고, 그 외상대는 2020.02.28. 받기로 함. 그 후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외상대를 2020.12.31. 받기로 약정함.
(회수기일) 변경기일 2020.12.31. ⇨ 2년 지난 날 ⇨ 2023.01.01.(초일 불산입)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법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7) [세무사랑Pro]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사례

(1) 당해 대손금 처리한 내역

- ① 2,000,000원 : 12/31 어음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받을 어음
- ② 3,400,000원 : 12/31 세법상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외상매출금

(2) 재무상태표 채권잔액

외상매출금 258,711,700원

받을어음 16,700,000원

미수금 5,620,500원

단기대여금 3,000,000원

(3) 추가자료

전기이월된 대손충당금 25,000,000
 당기대손상각 충당금 전입액 5,900,000원
 기말대손충당금 잔액 25,500,000
 전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 6,892,000원
 회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세법상 1%를 기준으로 하였다.

세무조정

- ① 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상매출금 대손상각액 3,4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세법상 요건 갖추때 손금산입하고 △유보)
- ② 전기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회사 환입하지 않았으므로 6,892,000원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③ 당기 세법상 한도초과액 22,626,578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① [대손상각 사유]를 입력한다. [1] 2. 대손금조정]은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거나 대손상각한 금액에 대한 세법상 적법상 여부를 판단하여 조정한다. 대손금에 대한 조정으로서 부도어음의 경우 어음 각 매수당 비망기록금액(1,000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② 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인액 발생할 경우 [29. 부인액]에 입력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차기 이후에 세법상 요건을 갖추 경우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 ③ [2]채권잔액]
 채권의잔액은 [F12 불러오기]에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반영된 채권잔액 중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먼저 세무조정한 금액이 있다면 직접 차감하고 입력하여야 한다.
- ④ [18.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는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인된 전기이월액과 당기 발생액(㉔+㉕)을 합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당기발생액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 [1] 2. 대손금조정]의 [29. 부인액]과 [32. 부인액]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때 부인액은 한도초과로 부인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는 다르며,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인된 것이다.

⑤ 3.대손충당금조정

[8.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 전기이월된 대손충당금(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

[9. 기중충당금환입액] : 사업연도중 대손충당금의 환입액으로 법인의 이익으로 계
상된 금액

[10. 충당금 부인 누계액] :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을 기재

[12. 충당금보충액] : 당기 재무상태표 상 대손충당금 합계액에서 당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차감한 금액

[14. 회사환입액] : 당기 대손충당금 사용후 잔액 보다 기말 충당금설정액이 적으면 차액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계상되고, 전기부인액은 당기에 과소환입액으로 발생되어 손금상입 △유보되어 소멸하게된다.

[4. 당기계상액] : 당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
(기말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 ⑫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대손충당금및대손조정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연월일 18기 2023-01-01~2023-12-31 분기회 회차 2023 1월 2023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크게보기

No	22. 입자	23. 계정 과목	24. 차원 내역	25. 대손 사유	26.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비계상액		
						27. 계	28. 시인액	29. 부인액	30. 계	31. 시인액	32. 부인액
1	12.31	발들어음	1.매출채권	5.부도(6개월경과)	2,000,000		2,000,000	2,000,000			
2	12.31	외상백출금	1.매출채권	폐업	1,400,000		3,400,000	3,400,000			
3				1.파산 2.강제집행 3.시장, 실종 4.장리계획 5.부도(6개월경과) 6.소멸시효완성 7.직접입력							
		계			5,400,000	5,400,000	2,000,000	3,400,000			

크게보기

크게보기

No	16. 계정 과목	17. 채권잔액의 증부구분	18. 기말현재대손충당금누계액	19. 합계 (17+18)	20. 충당금상계액의원천 (합입, 폐사, 특수채권)	21. 채 권 잔 액 (19-20)
1	외상백출금	258,711,700		5,400,000	262,111,700	262,111,700
2	발들어음	16,700,000			16,700,000	16,700,000
3	미수금	5,620,500			5,620,500	5,620,500
4	단기대여금	3,000,000			3,000,000	3,000,000
5						
	계	284,032,200		5,400,000	287,432,200	287,432,200

크게보기

크게보기

순금 산입액 조정	1.채권잔액 (21의금액) ☒ 기본불 ☐ 실적불 ☐ 적립기준	2.설정률(%) 1	3.한도액 (1×2)	회사계상액 4.당기계상액 5.보통액	6.계	7.한도초과액 (6-3)		
287,432,200			2,874,322	5,900,000	19,600,000	22,625,678		
익금 산입액 조정	8.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	9.기중 충당금환입액	10.충당금부인 누계액	11.당기대손금 상계액(27의금액)	12.충당금보충액 (충당금잔량부족)	13.환입할금액 (8-9-10-11-12)	14.회사환입액 (회사기말환입)	15.과소환입 과다 환입(△X(13-14))
25,000,000			6,892,000	5,400,000	19,600,000	-6,892,000		-6,892,000

대손충당금및대손조정명세서

0101 (주)세무사랑 연월 18기 2023-01-01~2023-12-31 부기월 2023

F3 조정등록 (F5 간체식별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2. 대손충당금조정

No	22. 일자	23. 계정 과목	24. 채권 내역	25. 대손 사유	26. 금액	27. 계	대손충당금상계액	28. 시인액	29. 부인액	30. 계	당기 손비계상액	31. 시인액	32. 계
1	12.31	발주어음	1. 매출채권	5. 부도(6개월경과)	2,000,000	2,000,000	2,000,000						
2	12.31	외상매출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대손충당금부인	3,400,000	유보발생		대손충당금	6,892,000	유보감소	
대손충당금한도초과	22,625,678	유보발생					
합 계	26,025,678			합 계	6,892,000		

소득명세 2 대손충당금과다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대손금 부인액	3,400,000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6,892,00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2,625,678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2.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1) 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기업업무추진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 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된다.

구분	업무 관련 여부	지출대상	손금인정 여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있음	특정인	한도액까지 손금인정
기부금	관련 없음	특정인	한도액까지 손금인정
광고선전비	관련 있음	불특정다수인	전액 손금인정

(2)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1)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에 대한 처리

채권포기의 정당성		세무상 처리
정당성 있음		대손금(전액 손금인정)
정당성 없음*	업무 관련	기업업무추진비(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업무무관	기부금(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별도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포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사은품·경품

- ①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으로써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 ②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직원(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노동조합사무 포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4) 회의비

5) 업무 관련 저가양도·고가매입

(3)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1) 내용

내국법인이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명을 사용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 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함.)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현물

기업업무추진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을 포함)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이때 신용카드 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②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 개인명의 신용카드 등 인정 여부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사용분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이하의 기업업무추진비금액에 대하여는 손금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를 사용할 때는 임직원의 개인명의 신용카드 등을 인정하므로 손금으로 본다.

3) 위장가맹점명으로 작성된 매출전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장가맹점명으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한다.

이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만일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4)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을 한다.

- ① 거래처의 매출채권포기,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 실태상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의제기업업무추진비
-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현물기업업무추진비)
- ③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 ④ 적격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²⁾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업업무추진비
- ⑤ 농·어민³⁾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기업업무추진비

(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1) 한도액계산 없이 바로 손금불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

- ① 신용카드 등 증빙불비기업업무추진비
1회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이 사용 또는 수령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는 바로 손금불산입된다.
- ② 업무무관기업업무추진비
주주 또는 출자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 감사
- ㉤ 그밖에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 ②

- ①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당해사업연도월수 / 12개월)

-
- 2) 국외지역이란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 3) 농어민이란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온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율	특수관계자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일반수입과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중복시 일반 수입 먼저 한도 액 계산함)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수입금액-100억원)×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500억원)× 0.03%	

*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3)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 기업업무추진비회사계상액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 기업업무추진비회사계상액 = 판매비와관리비상 기업업무추진비+제조경비상 기업업무추진비+건설중인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고정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

①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적은 경우

손금불산입·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②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손금불산입·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기업업무추진비자산계상액*·△유보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동액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자산을 감액한다.

(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대한 한도액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상기 한도액의 50%만을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① 대상법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이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②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6)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특례

2022.12.31. 이전에 다음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 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의 구입
-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및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2) 추가 손금산입액

Min (㉠, ㉫)

- ㉠ 문화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20%

(7) 현물접대

현물로 접대한 경우에는 접대 당시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례

[자료]

거래처에 현물접대하였다. 시가 1,000원(원가 800원)이다.

1. 기업업무추진비금액을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1) 회계처리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업업무추진비	900	제품	800
		부가세예수금	100

(2)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시는 1,100원으로 회사계상액을 계상

2. 기업업무추진비금액을 시가로 계상하는 경우

(1) 회계처리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업업무추진비	1,100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매출원가	800	제품	800

(2) 세무조정

매출계상액 1,000원을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차감

(8) 귀속시기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손금으로 한다.(발생주의 원칙) 따라서 미지급기업업무추진비도 당해연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법인이 현물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공한 현물의 시가로 평가하며 동 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9) [세무사랑Pro]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1) [1. 접대비 입력 (을)]

- ① [F12 불러오기]하면 [1] 1. 수입금액명세와 [2] 2. 접대비 해당금액이 자동반영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전표 입력할 때 [법인신용카드 사용 기업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등 적요내용과 관련하여 적요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2. 접대비 해당금액에서 미사용(미제출)분으로 인식되어 손금 불산입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② [1] 1. 수입금액명세란에서 [2]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은 직접입력하여야 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6 계정과목 설정 F7 원장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접대비 입력 (을) 2. 접대비 조정 (갑)

1. 수입금액명세

구분	① 일반수입금액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 합계(①+②)
금액	9,948,600,557	88,000,000	10,036,600,557

2. 접대비 해당금액

④ 계정과목		합계	접대비(판관)	접대비(제조)	접대비(도급)
⑤ 계정금액		91,100,000	60,200,000	5,000,000	25,900,000
⑥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 접대비해당금액(⑥-⑤)		91,100,000	60,200,000	5,000,000	25,900,000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2,000,000		2,000,000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⑩ 총 초과금액	4,500,000		4,500,000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⑪ 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⑫ 총금명세서 미제출금액	5,000,000		5,000,000
		⑬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7,845,400	5,845,400	2,000,000
		(16) 총 초과금액	80,354,000	59,500,000	15,854,000
(17)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9,845,400	5,845,400		4,000,000
(18) 접대비 부인액(⑬-(17))		9,845,400	5,845,400		4,000,000

2) [2. 접대비조정(2)]

- ① 중소기업판정은 [기초정보관리 - 회사등록 - 기본사항 - 15. 중소기업여부]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반영된다.
- ② 부동산임대업 등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등 ⑧한도액 50%적용]을

선택한다.

- ③ [조정등록]을 클릭하여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과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6기 2023-01-01-2023-12-31

F3 조정등록

1. 접대비 입력

2. 접대비 조정 (같)

3.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중소기업

정부출자법인

부동산임대업등(법.령제42조제2항)

조정 등록

과목	금액	소독처분
신용카드등미사용액	9,845,4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	5,386,059	기타사외유출
합 계	15,231,459	

손익명세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9,845,400		
접대비 한도 초과액	5,386,059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전자

손익조정 직결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3. ➤ 기부금

(1) 개념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무분별한 기부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된다.

(2) 기부금 의제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130%)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정상가액(시가×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text{정상가액} = \text{시가} \pm \text{시가} \times 30\%$$

이때 기부금의제는 재화의 공급, 자산양도 상품(제품) 등의 판매, 부동산의 임대 등에서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상진료, 자금의 대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무이자, 저리 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이자,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율 익금산입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등에게 무이자, 낮은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기부금 의제, 접대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이 46012-12177 2003.12.23)

[부당행위 부인과 기부금 의제 비교]

구분	거래 상대방	기준 금액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 가 5% 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차이금액 익금산입하고 상여등으로 처분함(증여세 과세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시가등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 없는자와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 가액 이상 또는 이하 거래	정상가액 (시가±30%)

(3) 기부금의 종류

1) 특례기부금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4)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5)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일반기부금

(1)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기부하는 비용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기부하는 비용
- 3)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비용
-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기부한 경우

(2) 사회복지시설 기관 기부금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부하는 경우

(3) 특정 목적의 기부금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인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2)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한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② 직원(임원포함): 상여 ③ 위 ①, ② 이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기부금 한도액 계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한도액	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	기타
특례기부금	50%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일반기부금	10%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세법상 한도내 법정기부금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한도 20%는 2019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20%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 차감 소득금액(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법인 소득금액)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010.7.1. 이후) 합병·분할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21년 이전 발생분 10년, 2009년 이전 발생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5)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

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6) 현물기부금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①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현물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한정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기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부할때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며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7)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1) 원칙(현금주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며,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예외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에 있는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8) [세무사랑Pro]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는 비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1. 기부금명세서], [2. 소득금액확정], [이월결손금]만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당기에 지출한 기부금이 없는 경우라도 전기의 이월 공제대상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월공제명세는 자동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므로 작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례

1) 기부금의 조정과 이월공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세[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라.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1. 사업연도 : 2023사업연도(2023.1.1.~12.31.)

2.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당기순이익 1,000,000,000원
- 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50,000,000원
-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40,000,000원
- ④ 소득금액(①+②+③) 101,000,000

위 세무조정사항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기부금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기부처
국방헌금(1.25.)	5,000,000원	
종교단체기부금(2.26.)	20,000,000원	00교회
산학협력단 기부금(8.20.)	20,000,000원	*특례기부금 해당 단체이다.
이재민구호상품가액(9.3.)	30,000,000원	00일보사
사회복지법인기부금(10.15.)	50,000,000원	00복지법인
불우이웃돕기성금(12.20.)	12,000,000원	00일보사
문화예술단체기부금(12.26.)	8,000,000원	A문화예술단체
비지정기부금(11.20.)	5,000,000원	○○종친회
합계	150,000,000원	

4. 전기(2018년)의 특례 기부금지출액 중 한도초과액이 100,000,000원 있다.

전기(2019년)의 일반기부금 지출액 한도초과액 200,000,000

5. 이월결손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생사업연도	발생액	공제액	잔액
2018	150,000,000원	138,000,000원	12,000,000원
2017	120,000,000원	120,000,000원	
2015	26,000,000원	26,000,000원	

해설

1. 기부금항목의 분류

구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손금부인
국방헌금	5,000,000		
종교단체기부금		20,000,000	
산학협력단 기부금	20,000,000		
이재민구호금품가액	30,000,000		
사회복지법인기부금		50,000,000	
불우이웃돕기성금		12,000,000	
문화예술단체기부금		8,000,000	
비지정기부금			5,000,000
합계	55,000,000	90,000,000	5,000,000

2. 전액 손금부인 기부금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액손금부인기부금 5,000,000 (기타사외유출)

3. 특례기부금 기부금의 세무조정

① 기준소득금액 계산

$$\begin{aligned}
 &= \text{결산상 당기순손익} + (\text{익금산입} \cdot \text{손금불산입} - \text{손금산입} \cdot \text{익금불산입}) + 50\% \text{ 한도} \\
 &\quad \text{기부금지출액} + 10\% \text{ 한도 기부금지출액} \\
 &= \text{차가감소득금액} + 50\% \text{ 한도} \cdot 10\% \text{ 한도 기부금지출액} \\
 &= 1,000,000,000\text{원} + (150,0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140,000,000\text{원} + \\
 &\quad 55,000,000\text{원} + 90,000,000\text{원} \\
 &= 1,160,000,000
 \end{aligned}$$

② 손금한도액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times 50\%$$

$$= (1,160,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times 50\%$$

$$= 574,000,000$$

주 :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전 15년 (2020.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까지는 10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잔액 12,000,000원만 공제대상이 된다.

③ 특례 기부금 전기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특례 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0원은 당기의 50% 한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범위내 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④ 당기 특례 기부금 세무조정

가. 전기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 후 차감한도액 = 574,000,000원 - 100,000,000원 = 474,000,000

나. 당기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 회사회지출액 - 한도액
= 55,000,000원 - 474,000,000원
= △419,000,000원(한도미달)

4. 일반 기부금 등 세무조정

① 손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 기부금 손금인정액) \times 10\%$$

$$= [1,160,000,000 - 12,000,000 - 100,000,000 - 55,000,000] \times 10\%$$

$$= 99,300,000\text{원}$$

일반기부금 전기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일반기부금한도초과액 200,000,000원은 당기의 일반 기부금 한도 99,3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② 손금한도초과액

일반 기부금지출액 - 한도액
= 90,000,000원 - 0원
= 90,000,000

1) [1.기부금명세서]

① 기부금명세서

수령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한다. 다만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기부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였다면 [F12 불러오기]를 통하여 자동 반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에 해당할 경우 [SF4사회적기업]을 클릭하여 사회적기업 여부를 선택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에 기타기부금(코드:50)으로 분류된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기부금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1.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2. 소득금액확정]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새로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구분	코드	과목	월일	적요	기부처	금액	비고
제24조제2항제1호	10	기부금	1 25	국방헌금	214-81-21210	5,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10	기부금	8 20	산학협력단기부금	210-10-37985	20,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10	기부금	9 3	이재민구조금품	세무일보사	30,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40	기부금	2 26	종교단체기부금	명행교회	20,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40	기부금	10 15	복지법인시설비	명행복지법인	50,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40	기부금	12 20	불우이웃돕기성금	세무일보사	12,000,000	
제24조제2항제1호	40	기부금	12 26	문화예술단체기부금	예술의 전당	8,000,000	
기타	50	기부금	11 20	종친회기부금	종친회	5,000,000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기타기부금	150,000,000	기타소득
기타소득	5,000,000	기타소득
합계	155,000,000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기타기부금	140,000,000	기타소득
기타소득	5,000,000	기타소득
합계	145,000,000	

구분	금액
1. 결산대상 당기순이익	1,000,000,000
2. 익금상입	155,000,000
3. 손금상입	140,000,000
4. 기부금합계	145,000,000
5. 소득금액계(1+2-3+4)	1,160,000,000

2) [2. 기부금조정]

①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기한한도내 이월결손금을 말하며 이를 확인한 후 입력한다.

② [5. 기부금이월액명세]는 전기에 기부금한도초과로 이월공제대상인 기부금한도초과액 잔액을 관리하는 메뉴이다. 이때 이월공제대상 기부금한도초과액을 [23.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과 [24. 기공제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해 사업연도 [25. 공제 가능잔액]이 계산된다. [25. 공제가능잔액]은 기부금 한도계산에서 손금추인되면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1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에 당기 공제금액으로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③ 위의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1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에 손금추인된 금액은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하여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서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산입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④ [6. 해당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과 그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확인하고 손금부인액은 [28. 차기이월액]으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다.

- ⑤ 기부금한도초과액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5.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부금조정명세서					
7777 (주)세액공제					
2023-01-01~2023-12-31					
F3 조경등록 F4 사회적기업 F5 전채식재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F2 역셀불러오기 F3 역셀서식다운로드					
1. 기부금 입력					
2. 기부금 조정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1. 소득금액 계	1,160,000,000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4, 23)	100,000,000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 결손금 합계액(기존소득금액의 60% 한도)	12,000,000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④)	55,000,000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55,000,000	7. 한도초과액 [(④-⑤)>0]			
4. 한도액 (((1-2) ÷ 0.1) × 50%)	574,000,000	8.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993,000,0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11. 손금산입액 MIN(9, 10)			
10. 한도액 (8 × 30%)	297,900,000	12. 한도초과액 [(9-10)>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1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	90,000,000	16.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14-15)>0, 13)			
14. 한도액 ((8-11) × 10%, 20%)	99,300,000	17. 한도초과액 [(13-16)>0]	90,000,000		
1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14, 23)	99,300,00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18. 기부금 합계액 (3+9+13)	145,000,000	19. 손금산입 합계 (6+11+16)	55,000,000	20. 한도초과액 합계 (18-19) × (7+12+17)	90,000,00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21.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22. 기공제액	23. 공제가능 잔액(21-22)	24. 해당연도 손금추인액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0,000,000		100,0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000,000		200,000,000	99,300,000
201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0,000,000		100,000,000	
2019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000,000		200,000,000	
					100,700,00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정기				
⊗ 닫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①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1,000,000,000
	소 득 조 정 금 액	102.익 금 산 입	02	155,000,000
		103.손 금 산 입	03	140,000,000
	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01+102-103)		04	1,015,000,000
	105.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90,000,000
	106.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199,300,000
	107.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104+105-106)		06	905,700,000

4.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의 개념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업무(해당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와 관계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 세법에 의한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며, 만약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인세 집행기준 28-53-2)

-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절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로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가지급금의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원천징수 시 지급시기의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text{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text{종합소득 총결정세액} \times \frac{\text{미지급소득}}{\text{종합소득금액}}$$

-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 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⑤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경정할 때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금전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이 업무무관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선고된 경우 대손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text{가지급금 인정이자} = \text{가지급금등의 적수} \times \text{인정이자율} \times \frac{1}{365(366)}$$

1)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적수계산은 가지급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또한 가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그러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계하지 않는다.

-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 인정이자율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시가인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text{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frac{\left(\frac{\text{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text{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 \times \frac{\text{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text{}} \right)}{\text{}} \text{의 합계액}$$

- 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 ㉢ 연지급수입이자 발생 차입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②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은 차입금을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먼저 상환한 후 변동된 이자율로 상환한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4.6%(2016.3.7. 이후부터 적용. 공포일 이전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자수수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6.9% 적용)이다.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후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산출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역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4년째에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최초 적용은 2010사업연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5%이상인 경우에 익금산입하며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등 소득처분을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또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한다.

- 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㉓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㉓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령 11 9호 단서, 법인칙 6의2)

-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함 없이 회계처리로 회수 후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경우(조심2020중1482, 2021.01.15.)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4) [세무사랑Pro]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제11기(2023.1.1.~2023. 12. 31.)의 다음 자료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단,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 1) 지금의 대여명세

대여받은 자	대여금	대여일자	수령한 이자	비고
대표이사 김대표	30,000,000	2023.2.15.	500,000	개인용도
	20,000,000	2023.7.1.	300,000	개인용도
회계팀장 이대리*	10,000,000	2022.7.1.	500,000	전세자금
합계	60,000,000		1,300,000	

*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제11기 사업연도 차입금의 명세

구분	차입일자 (상환일자)	차입금 (상환금액)	연이자율	비고
A	2022.2.1.(2023.2.1.)	20,000,000 (20,000,000)	1.3%	
B	2022.3.10	50,000,000	1%	특수관계자차입금
C	2022.10.27	50,000,000	3%	
D	2022.2.5.	150,000,000	4.5%	변동금리
	2023.2.5	(150,000,000) 150,000,000	(4.5%) 4%	
E	2023.5.10	100,000,000	12%	

3)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4.6%며 (주)세무사랑은 제11기 사업연도에 대여한 가지급금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5) [세무사랑Pro]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작성은 [1. 가지급금. 가수금입력] - [2. 차입금 입력] - [3. 인정이자계산 : (을)지] -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순서로 차례로 진행된다.

1) 가지급금가수금 입력

- ① [적용이자율선택]에서 법인이 적용할 이자율을 선택한다.

- [1]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선택시 선택한 사업연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는 무조건 적용해야함)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원칙)
- [3] 해당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차입금이 없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함)
- [4] 해당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해당 대여금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대여금만 적용함)

② [회계데이터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회계데이터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전표 분개할 때의 성명, 계정과목, 전표번호, 거래처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그 다음 [회계전표 불러오기(Tab)]을 클릭하면 전표에 입력된 계정과목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때 대상자가 2 이상일 경우 전표입력 시 대상자별로 적요번호를 [1과 4], [2와 5], [3과 6]으로 다르게 구분하여 사용하면 각각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계정 이외의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 전기이월금액은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된다. 이는 [거래처코드]를 기준으로 전기이월 잔액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자산]

No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거래처	데이터불러오기
1	대표이사	김대표	0134 가지급금	1 4	00101 김대표	1.불러오기
2						

회계전표 불러오기(Tab)

회계데이터 불러오기(F4)

회계데이터 불러오기(F3)

2) 차입금 입력

- ① [거래처명]을 [F2 코드]로 선택하거나 [새로불러오기(현재거래처)]와 [새로불러오기(전체거래처)]를 클릭하여 [차입금액 관련된 계정과목 선택]창에서 확인하면 자동으로 관련 거래처의 차입금 등과 관련된 회계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② 이자율은 개별적으로 입력한다. 이자율 입력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선순위 이자인 ㉠채권자 불분명사채 및 비실명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이자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자 는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입력된 차입금과 이자율은 [CF2 가중평균이자율조회]에서 적용된 가중평균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자금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연월일 12월 2023-01-01-2023-12-31

문자기 2023

인사 2023

닫기

코드

삭제

인사

조회

가

취

최금

연관

보호

정보

F2 가중평균이자율조회

F3 고정원금

F4 정액

F7 원상조치

F8 잔액조회

F9 선택사업연도

F11 연일수변경

1.가자금금 : 3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올)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계정과목설정

새로불러오기(현재거래처)

새로불러오기(전체거래처)

이자율일괄종용

2

No	거래처명	No	☐ 적요	연월일	차변	대변	이자대상금액	이자율 %	이자
1	씨온빌	1	☐ 1.전기이월	2023	1	150,000,000	150,000,000	4.50000	6,750,000
2	다온빌	2	☐ 2.차입	2023	2	150,000,000	150,000,000	4.00000	6,000,000
3	이온빌	3	☐ 3.상환	2023	2	150,000,000	-150,000,000	4.50000	-6,750,000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조회

No	연월일	이자율 (%)
1	2023-01-01	4.125000000
2	2023-02-05	3.750000000
3	2023-05-10	6.500000000

계산근거보기(F3)

확인(Enter)

취소(Esc)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No	☐	계정과목
1	☒	0256 당좌차입
2	☒	0260 단기차입금
3	☐	0290 장기차입금
	☐	

현재거래처와 관련된 위에서 선택한 계정과목의 건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확인(Tab)

삭제(F5)

코드도움(F2)

초기화(F7)

취소(Esc)

합 계

150,000,000

300,000,000

150,000,000

6,000,000

3) [3. 인정이자조정 : 을(지)]

먼저 입력된 [1. 가지급금.가수금 입력]의 자료를 토대로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하여 순수한 가지급금적수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가지금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인자 2023

CF2 가중평균이자율조회 F3 조정등록 F4 정정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CF8 선택사업연도 F11 연일수변경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출)지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이자율 선택: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일수: 365 일

No	직책	성명	No	발생연월일	대여기간	회수일	연월일	적요	5. 차변	6. 대변	7. 잔액(5-6)	일수	가지금금적수(7x8)	10. 가수금적수
1	대표이사	김대표	1	2023 2 15	차기	이월	2 15	2. 대여	30,000,000		30,000,000	320	9,600,000,000	
2			2	2023 7 1	차기	이월	7 1	2. 대여	20,000,000		20,000,000	184	3,680,000,000	

4)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① 인별로 계산된 인정이자액과 회사계상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세무조정한다.

[6. 회사계상액]은 다음과 같이 약정유무와 장부반영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 약정이 있고 약정일에 장부에 반영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 ㉡ 약정이 있으나 약정일에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약정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 ㉢ 약정이 없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0
- ㉣ 약정이 없는 경우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장부에 반영한 경우: 0 (반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②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별로 익금산입하고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지금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인자 2023

CF2 가중평균이자율조회 F3 조정등록 F4 정정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CF8 선택사업연도 F11 연일수변경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 차입금 입력 3. 인정이자계산 : (출)지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연일수 : 365일)

No	1. 설명	2. 가지금금적수	3. 가수금적수	4. 차입금적수(2-3)	5. 인정이자	6. 회사계상액	7. 차액(5-6)	8. 비율(%)	9. 조정액(=7) 7>=3% 8>=5%
1	김대표	13,280,000,000		13,280,000,000	1,641,643	800,000	841,643	51.26833	841,643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인정이자	841,643	상여					

(6) [세무사랑Pro] 가지금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1)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

① [적용이자율선택]에서 [[1]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을 선택하고 [CF8 선택사업연

도]클릭하여 [선택사업연도]창에서 의무적용기간을 입력한다. 이때 선택사업연도는 당해사업연도가 아니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최초 사업연도를 입력한다. 최초 사업연도로부터 3년간은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한다.

② [회계데이터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회계데이터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전표 분개할 때의 성명, 계정과목, 전표 번호, 거래처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앞의 가중평균 이자율 선택한 사례 참조]

③ [구분]란에는 업무무관대여금에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중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입력한다.

㉠ [0,1:법정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이자율로 2016년 3월 7일 이후 4.6%이다.

㉡ [2:약정(6.9%)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이자율로 2016년 3월 7일 이전에는 6.9%이다.

가중평균이자율조정명세서

7777 (주)세력공제 12기 2023-01-01~2023-12-31

1.가중평균이자율입력 2.차입금입력 3.인정이자계산 : (출)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1]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회계데이터불러오기

선택사업연도 : 2022-01-01 ~ 2022-12-31

<참고>
※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시 최초 선택한 사업연도를 입력합니다.

확인(Tab)

0,1:법정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2:약정(6.9%)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No	직책	성명	구분	적요	연월일	차변	대변	잔액	입수	적수
1	대표이사	김대표		2.대여	2023 2 15	30,000,000		30,000,000	136	4,080,000,000
2				2.대여	2023 7 1	20,000,000		50,000,000	184	9,200,000,000
3										
합 계						50,000,000		50,000,000	320	13,280,000,000

2) [2. 차입금입력]탭은 입력하지 않는다.

3) [3. 인정이자계산 : (을)지]

[1. 가지금금·가수금 입력]의 정보에서 가지금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차감한 순액의 가지금금적수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된다.

4) [4. 인정이자조정 : (갑)지]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16. 회사계상액]을 입력하고 [19. 조정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여부를 판단한다.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별로 익금산입하고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치금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세 2023

☒ 닫기 ☑ 도움말 ☑ 코드 ☑ 검색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2.가중평균이자율조회 F3.조정등록 F4.정합 F7.원장조회 F8.잔액조회 F8.선택사업연도 F11.연일수변경

1.가지금금·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을)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이자율선택 : [1]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3.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연월수 : 365일)

No	10.성명	11.가지금금적수	12.가수금적수	13.차감적수(11-12)	14.이자율(%)	15.인정이자 (13X14)	16.회사계상액	시가인정범위		19.조정액(=17) 17>=3억, 18>=5%
								17.차액(15-16)	18.비율(%)	
1	김대표	13,280,000,000		13,280,000,000	4.60	1,673,643	1,673,643			

5.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의 사업 등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차입금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업무무관가지금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에 대한 이자 및 자산의 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건설자금이자 관련 이자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해당 이자	대표자상여 (원천징수세율 : 기타사외유출)
②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유보
③ 건설자금이자		기타사외유출
④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지급이자 × 일정비율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

수입이자의 익금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와 동일하게 받기로 약정한 날로 규정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는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이자도 결산시에 반영하였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2021년부터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거래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은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 제외한다.
 -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입금
 -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수령자 불분명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당해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은 손금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 없이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하나, 일반 차입금이자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나, K-IFRS(1023)에서는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개요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자산적수}}{\text{총차입금적수}}$$

* 선순위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당해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동산(서화, 골동품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업무와의 관련여부는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동산

-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③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5)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

지급이자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때 지급이자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 총액을 의미하므로 선급이자란 제외하며 미지급이자란 포함된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지급이자
• 미지급이자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융통어음할인료 • 금융리스료에 포함된 지급이자 • 전환사채 지급이자 • 수출금융명목의 지급이자 •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전환사채 만기 상환할증금⁴⁾	• 선급이자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⁵⁾ • 상업어음할인료 • 지급보증수수료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이자 • 운용리스조건 리스료의 지급이자 • Usance이자 및 D/A이자 • 조기상환수수료⁶⁾

(6) 총차입금 적수의 계산

적수 계산은 당해 거래 발생일로부터 소멸일까지의 매일자별 잔액을 합계하여 계산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의 적수 계산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발생일과 관계 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text{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text{이자율별 지급이자} \times \frac{365(366)}{\text{연이자율}}$$

업무무관자산은 당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의 적수로 계산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잔액으로 한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4) 서면법규-238, 2014.03.18.

5) 법령 53조 4항 2호, 재소득-85, 2004.03.15.

6)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서이46012-10655, 2001.12.01.)

6. ➤ 건설자금이자

(1)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 없이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하나, 일반 차입금이자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나, K-IFRS(1023)에서는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구분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사업용 고정자산만 적용)
특정차입금	의무적 자본화	의무적 자본화	의무적 자본화
일반차입금	의무적 자본화	선택적 자본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자본화

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등)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분양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하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기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한 때부터 준공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즉 건설자금이자란 건설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하므로 건설개시일 이전이나 건설완료된 후의 지급이자란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건설개시일 이후에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의 발생일 이후의 건설기간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달리 자본화대상에 해당된다.

자산별 건설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토지	계약금의지급일 - 대금청산일(건설착공일, 실제 사용일)
건물	착공일 - 준공일 (또는 사용개시일)
기계장치	설치일 - 목적에 실제사용되는 날

3)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이자등)을 말한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강제사항)

- ①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란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②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란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③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란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④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4)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특정차입금이 건설자금규모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일반차입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한 일반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건설자금이자로 할 수 있다(선택 사항)

- **특정차입** : 금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 **일반차입금** : 일반적인 목적(운영자금 등)으로 차입한 자금이지만 사실상 건설 등의 목적에 사용한 차입금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 Min[①, ②]

① (건설 등 연평균 지출액-연평균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연평균이자율

②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액

$$\text{건설 등 연평균 지출액} = \frac{\text{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text{연평균 특정차입금}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text{일반차입금 연평균이자율} = \frac{\text{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text{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div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text{해당 사업연도 일수}}$$

- ①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토지,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 28-52.....1).
: 매매(분양)를 위한 차입금이자 는 자본화비용이 아닌 이자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②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고정자산을 증설, 개량하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 해당된다.(법인 4612-1553, 1996.5.31)
: 고정자산가액에 당기증가분으로 회계처리한다.
- ③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46012-612, 1998.3.12.)
: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선택 시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자본화 제외 가능한지 여부(기준법령해석법 인2017-70, 2017.04.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5) 세무조정

(가) 건설자금이자를 과다계상한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 : 손금산입(유보) 하고 감가상각시부인계산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다.
- ② 비상각자산 :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시 익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나)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완성자산은 즉시상가의제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한다.
- ② 비상각자산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처분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6) [세무사랑Pro]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작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건설과 관련된 이자비용발생분이 있다면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특정차입금은 강제사항이며 일반차입금은 원가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당기 건설완료여부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사례

(1) 작성사례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제11기(2023.1.1.~2023. 12. 31.)의 다음 자료에 따라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단,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자금의 대여명세

대여받은 자	대여금	대여일자	수령한 이자	비고
대표이사 김대표	30,000,000	2023.2.15.	500,000	개인용도
	20,000,000	2023.7.1.	300,000	개인용도
회계팀장 이대리*	10,000,000	2022.7.1.	500,000	전세자금
합계	60,000,000		1,300,000	

*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제11기 사업연도 차입금의 명세

구분	차입금(상환금액)	연이자율	이자비용
B	50,000,000	3%	1,200,000
C	50,000,000	10%	5,000,000
D	100,000,000	7%	6,300,000
E	200,000,000	5%	10,000,000

3)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 중 10,000,000원(원금200,000,000원 이자율 5%)은 사옥건설을 위해 차입한 이자로서 2020년에 차입하여 직접사용한 것으로 건물 완공예정일은 2025년 5월2일이다.

① [2.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3.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명세]의 해당자료를 직접입력한다.

② [④차감조정액]을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원시 2023

F3 조정등록 F5 전체조회 F7 원금조회 F8 이자조회 F11 저장

1 2.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No	①건설자금종류	②대입기간종류	③차입일	④차입금액	⑤이자율	⑥지급이자 (일시이자수익차입)	⑦종금일 (또는 예정일)	⑧대입일수 (종사일수)	⑨대상금액 (건설이자)
1	분사사유	다음발	2020-10-15	200,000,000	5.000	10,000,000	2025-05-02	365	10,000,000
2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건설자금이자	10,000,000	유보발생			
합계	200,000,000			10,000,000	

2 3.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합계

⑨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16)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17)사업연도 일수	(18)계산대상금액 (15/17 - 16/17)
(19)일반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합계	(20)해당 사업연도의 일반 차입금의 적수	(21)자본화이자율(X) 19/(20/17)	(22)비교대상금액 (18 * 21)

(23)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 ([min (14), (22)])

3 1. 건설자금이자계산 조정

구분	① 건설자금이자	② 회상계상액	③ 상각대상자산분	④ 차감조정액(①-②-③)
건설완료자산분				
건설중간자산분	10,000,000			10,000,000
계	10,000,000			10,000,000

7) [세무사랑Pro]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자료는 각 자산별로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일반전표입력 데이터와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 ①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은 각각의 탭에서 [불러오기]하여 [새로 불러오기]팝업창에서 업무무관부동산 또는 업무무관동산과 관련된 자산의 계정과목 코드 및 계정과목명을 등록한다.
- ② [6. 자기자본적수계산]은 현재 조정명세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3. 가지금급]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금급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자료를 불러온다.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 ④ 이자율과 지급이자는 이자율별로 직접 입력한다. [(10)지급이자]의 합계가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⑤ 선순위 지급이자불산입 된 지급이자와 그에 대한 차입금 적수는 직접 입력해야 한다.
- ⑥ [(8)손금불산입지급이자]를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조정 등록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1. 적수입력(출)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합)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②업무무관 부 동 산	③업무무관 동 산	④가지급금 등	⑤계(②+③+④)	⑥차입금 (=19)	⑦ ⑤와 ⑥ 적은 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⑤)
12,500,000			13,280,000,000	13,280,000,000	65,699,999,999	13,280,000,000	2,526,636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연이를 일수 현재: 365일]

No	(9) 이자율 (%)	(10)지급이자	(11)차입금적수	(12)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불분명 사채이자		(15)연월 지급 이자 국조법 14조에 따른 이자		차 입	
				(13)지급이자	(14)차입금적수	(16)지급이자	(17)차입금적수	(18)지급이자 (10-13-16)	(19)차입금적수 (11-14-17)
1	3.00000	1,200,000	14,600,000,000					1,200,000	14,600,000,000
2	10.00000	5,000,000	18,250,000,000					5,000,000	18,250,000,000
3	7.00000	6,300,000	32,849,999,999					6,300,000	32,849,999,999
4	5.00000	10,000,000	73,000,000,000			10,000,000	73,000,000,000		
합계		22,500,000	138,699,999,999			10,000,000	73,000,000,000	12,500,000	65,699,999,999

7. > 준비금조정명세서

(1) 법인세법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확충해 주고 장래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미리 법인세 신고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추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때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를 하도록 하여 법인세 일부를 감면 또는 과세이 연하여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을 유도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한도액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① + ②)

①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제외), 배당소득 등 × 100%

- 금융보험업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 의 이자소득 포함(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80%*, 100%**)

- *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은 80%(80%지출한 경우는 2022년까지 100%)

-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2022년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100%

2)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① + ② + ③)

①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제외), 배당소득 등 × 100%

② 명칭사용료 × 70%~100%

③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 100%

-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80%

- * 그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소득 차감후) × 50%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공제대상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를 선택하는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유목적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환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① 해산한 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④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⑥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때 위의 ⑤, ⑥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에 대해 다음의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가산액} = \text{법인세차액}^7) \times \text{이자상당가산기산일수}^8) \times 22/100,000$$

▶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
전법령해석법인2020-0221, 2020.06.1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
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사전법
령해석법인2019-0741, 2020.01.17.)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액
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
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처
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제도는 일몰이 도래하여 현재 폐지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역시 2018년으로 환입에 대한 기간이 종료되었다.

(3) [세무사랑Pro]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조정 - 기타서식/지방소득세 - 비영리법인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 7) '법인세차액'이라 함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
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 8) '이자상당가산기산의 일수'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단법인 세무사랑 장학회의 당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1. 수익사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20,000,000원
2.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8,000,000원(세법상의 한도내의 금액)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120,000,000원(비영업대금이익 20,000,000원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210,000,000원이다.
3. 전기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설정사업연도	당초 손금산입액	잔 액
2021년	100,000,000원	30,000,000원
2022년	200,000,000원	200,000,000원
계	300,000,000원	270,000,000원

4. 당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용 내 용	금 액
장학금 지출액	70,000,000원
지정기부금지출액	100,000,000원
사무실관리비의 지출액	40,000,000원
계	210,000,000원

1) 결산조정한 경우

(가) [1 손금산입액조정]과 [2 2. 접대비 해당금액]

- ① [1 손금산입액조정]의 [1.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총액 - 손금총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한다. [12. 손금부인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 ② [1 손금산입액조정]의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이미 반영된 준비금을 입력한다.
- ③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는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한다.

[16.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의 합계액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 명세서(을)]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정기세 2023 임시 2023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6 역셀작업 F11 저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1 손금 산입액 조정

1. 소득금액 120,000,000	2. 당기계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210,000,000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기부금 8,000,000	4.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1+2+3) 338,000,000	5. 법인세법 제29 조제1항 제1호의 각목에 따른 금액 100,000,000	6-1.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24)	6-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1호에 따른 기부금 8,000,000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 25에 따른 금액	9. 수익사업 소득금액 (4-5-(6-1)-7-8) 230,000,000	10. 손 금 산입률 50 /100	11. 손금산입 한 도 액 (5+8+9+10) 또는(⑤+⑩-(⑥-2)) 215,000,000	12. 손금부인액 [(2-11)>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연도 (당기) 2022 계	14. 손금산입액 210,000,000 200,000,000 510,000,000	15.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70,000,000	16. 해당 사업 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50,000,000 180,000,000	17. 익금산입액	18. 잔액(14-15-16-17) 19. 5년 이내분 210,000,000 50,000,000 260,000,000	20. 5년 경과분
-------------------------------	--	---------------------------------------	---	-----------	---	------------

(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한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지출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6 역셀작업 F11 저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1 지정기부금

No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1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120-85-12456	50,000,000
2				
소계				50,000,000

2 고유목적사업비

No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1	장학금	이장학	991017-1111111	100,000,000
2				
소계				100,000,000

3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No	2.적요	3.지출처 상호(성명)	3.사업자(주민)등록번호	4.금액
1	사무실관리비 등	당산빌딩	114-52-44223	30,000,000
2				
소계				30,000,000

2) 신고조정한 경우

[1] 손금산입액조정]의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O]이 되며 [10. 손금산입 한도액]과 잉여금처분으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그 외는 결산조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무사랑 연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사 2023

F3 조정등록 F5 전제석제 F6 역설작성 F11 저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1 손금 산입액 조정

1. 소득금액	2. 당기계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기부금	4.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1+2+3)	5. 법인세법 제29 조제1항 제1호의 각목에 따른 금액	6-1.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24)	6-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330,000,000		8,000,000	338,000,000	100,000,000		
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1호에 따른 기부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 25에 따른 금액	9. 수익사업 소득금액 (4-5-(6-1)-7-8)	10. 손 금 산입률	11. 손금산입 한 도 액 (5+8+9×10) 또는(⑤+⑧-(⑥-2))	12. 손금부인액 [(2-11)>0]	
8,000,000		230,000,000	50 /100	215,0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연도 (당기)	14. 손금산입액	15. 전정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6. 해당 사업 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7. 익금산입액	18. 잔액(14-15-16-17)	
					19. 5년 이내분	20. 5년 경과분
(당기)	210,000,000				210,000,000	
2022	200,000,000		150,000,000		50,000,000	
계	510,000,000	70,000,000	180,000,000		260,000,000	

8. > 국고보조금 등

(1) 국고보고금 등 개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 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할때 익금산입하거나 처분할 때 익금산입하여 과세시기를 이연하고 있다. 이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 요건	• 사용자산을 취득·개량 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은 경우	•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정책기본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사업 • 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 수도사업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보험차익이 발생한 모든 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 사용기간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 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보험금 사용계획서
손금 산입방법	•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은 연도에 사용하고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는 경우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시 익금산입

-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한다.

$$\text{상계할 상각비} = \text{손금산입된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일시상각충당금}}{\text{자산의 취득가액}}$$

-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3) 미사용시 익금산입

- ㉠ 사용기한 내 미사용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4)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1) 국고보조금 등을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 등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사항이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 할 수 있다.

사례

당해 3월에 취득하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신고하였다.

구분	분개	세무 조정
수령시	(차) 현금 20,000,000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0,000,000	세무조정 없음
자산 취득시	(차) 기계장치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

구분	분개	세무 조정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8,333,333 (대) 감가상각누계액 8,333,333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20,000,000(유보)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익금산입3,333,333(유보)
자산의 매각시	(차) 현금 4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기계장치 48,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16,666,667 (유보)

※ 감가상각비 $8,333,333 = 50,000,000 \times 10\text{월}/12\text{월} \times 1/5$ $3,333,333 = 8,333,333 \times 20,000,000/50,000,000$

2) 국고보조금 등을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차변	대변	
수령시 (수령 10,000)	현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현금차감계정)	①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자산증가) 10,000 익금산입(유보)
자산 취득시 (취득 10,000)	차량운반구 10,000 국고보조금 10,000 (현금차감계정)	현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자산차감계정)	①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0 손금산입(△유보) ②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00 익금산입(유보) ③ 일시상각충당금 10,000 손금산입(유보)
결산시 (상각 500)	감가상각비 500 국고보조금 500 (자산차감계정)	감가상각충당금 500 감가상각비 500	① 일시상각충당금 500 익금산입(유보) ②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500 손금산입(유보)
매각시 (매각 20,000)	현금 20,000 감가상각충당금 500 일시상각충당금 9,500 (자산차감계정)	차량운반구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① 일시상각충당금9,500익금산입(유보) ②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9,5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구입관련 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가능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자동차 구입관련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과목별세무조정(전자)-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손금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연도에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한 금액 또는 사용계획서에 의하여 사용할 예정인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산입액 조정]은 다음과 같으며 [F3 조정등록]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 ① [(7)용인한도액]은 [회사계상액]이 없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금액
- ② [(8)회사계상액]은 국고보조금등을 결산조정으로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한 금액
- ③ [(9)한도초과액]은 용인한도액보다 회사계상액이 많아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할 금액

이때 [F3 조정등록]을 통한 세무조정사항은 [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법인조정 과목별 세무조정2



제6장

법인조정 과목별세무조정 2

9.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 설정대상자

회사의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함)에 대해 설정가능하다(법법 33 1, 법령 60 1).

(2) 결산조정사항

회사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결산 조정항목에 해당한다.

(3) 손금산입한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손금한도액 = Min[①, ②]

① 총급여액 기준(일반 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총급여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 × 5%

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누적 한도) = [Max(㉠ 퇴직급여추계액, ㉡ 보험수리적 가액 등) × 설정율 (0%)]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에 미가입한 자는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을

적용하지 않고 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으로만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이때 DB가입자로서 그 재직기간 중 DB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미가입기간분에 대하여는 일시퇴직기준추계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추계액 기준(누적한도)가 매 사업연도마다 감소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에 매 사업연도별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4)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손금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계상액 - 세무상 한도액
 = (+)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 충당금한도초과분 · 유보
 (-) 세무조정 없음

(5) 충당금의 상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한지 1년이상인 법인, 개인에서 법인전환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외 설립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신설법인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할 수 없으나,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법 집행기준 26-44의2-2)

▶ 퇴직급여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
비현실적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총당금과 상계한 경우	• 손금산입(△유보) : 총당금 부당상계 • 손금불산입(유보) : 가지급금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총당금과 상계한 경우	• 손금산입(△유보) : 총당금 부당상계 • 손금불산입(상여) :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총당금과 상계한 경우	• 손금산입(△유보) : 총당금 부당상계 •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 수령액
퇴직급여를 총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 손금불산입(유보)

10. ➤ 퇴직연금부담금

(1) 퇴직연금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¹⁾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²⁾의 손금산입

① 손금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포함)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말한다.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금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대법2016두 48256, 2019.10.1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 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손금의 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③ 세무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도 제외한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① 손금산입 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모두 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 Min [①,②]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① 추계액기준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당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 급여충당금잔액)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② 예치금기준=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와 손금산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 ② 보험수리적 가액 등³⁾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세무조정

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① 퇴직연금부담금 수령 및 해약에 대한 세무조정: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및 일시금 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③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에 대한 세무조정
--

- 3) 보험수리적 가액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수리적 기준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신고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상 신고조정이 원칙이다. 세법에서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조정이 편리하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고조정)		세무조정
	차변	대변	
퇴직연금 납입	퇴직연금운용자산 지급수수료	보통예금	없음
결산일 (총당금전입)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손금불산입/ (유보) ② 퇴직연금운영자산/손금산입/(유보)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수령)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 소득세예수금	① 퇴직연금운영자산/익금산입/(유보) ② 퇴직총당금/손금산입/(유보) (퇴직연금운영자산 수령액과 퇴직 총당금이 상계한 금액)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결산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결산조정은 퇴직연금불입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 전입으로 결산서상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규정이고 세법상 세무조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결산조정)		세무조정
	차변	대변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지급수수료	보통예금	없음
결산일 (총당금전입)	퇴직급여	퇴직연금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② 퇴직급여추계액에 미달하게 불입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수령)	퇴직연금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 소득세예수금	① 퇴직연금 세무조정에 수령액 반영 ② 퇴직자가 일시금 선택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3)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확정급여) 가입한 경우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운영자산은

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액에 대하여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다만, 퇴직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수령액(해약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설정		세무조정
	차변	대변	
퇴직연금 납입	퇴직연금운영자산	보통예금	없음
결산일			퇴직연금운영자산(납입액) 손금산입(-)유보
퇴직연금 수령	퇴직급여	퇴직연금예치금 보통예금	없음
결산일			퇴직연금운영자산(수령액) 익금산입(유보)

4)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처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428, 2006.07.27.)

(5) [세무사랑Pro]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 퇴직금추계액

일시퇴직기준 : 1,000,000,000

보험수리적기준 : 98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900,000,000	150,000,000(설정)	200,000,000(지급)	1,000,000,000

퇴직금지급액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기초유보액이 750,000,000원이다.

(2) 총급여내역

계정과목	구분	총급여액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닌자		퇴직급여지급대상자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1	60,000,000			1	60,000,000
	급여수장	8	230,000,000	2	50,000,000	6	180,000,000
제조원가	임금	17	400,000,000	5	100,000,000	12	290,000,000
계		26	690,000,000	7	150,000,000	19	530,000,000

① [1 2.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17. 총급여액]을 [F12 불러오기]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급여자료를 일괄 반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설당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액을 [18.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입력한다.

② [8. 기중퇴직금지급액]

당기 퇴직금지급액 중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한다.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8.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③ [11. 퇴직금전환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하고 그 잔액이 남아 있다면 동 금액을 입력한다.

④ [9. 차감액]

[9. 차감액]이 음수(△)인 경우 동 금액을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⑤ [16. 한도초과액]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⑥ 퇴직급여추계액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계산유형 및 원천징수데이터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세무사랑Pro] 퇴직연금부담금등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관련 회계처리에 따라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사례

(1) 당기 퇴직연금관련자료

구분	금액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1,000,000,000 보험수리적기준: 980,000,000
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90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	500,000,000

(2)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회계처리

1) 운용수익의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익 12,000,000

2) 운용수수료 납부

(차) 지급수수료 8,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0

3) 당기 퇴직연금 수령액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4) 퇴직연금 납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96,000,000 (대) 보통예금 196,000,000

(3) 전기유보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퇴직연금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500,000,000

▶ 신고조정하는 경우 세무조정

퇴직연금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① [4. 당기말부인누계액]

먼저 작성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의미한다.

② [16.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또한 [16.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8. 기중퇴직금지급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1. 퇴직급여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유보)
------	-----------------------------

2.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유보)
------	--

③ [11. 회사손금계상액]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한 금액을 입력한다.

④ [12. 조정금액]

신고조정사항으로서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회계연도부담금등조정명세서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손익조정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손익조정	소득처분
회계연도등지급	5,000,000		유보감소	회계연도등손금산입	200,000,000		유보발생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1. 나. 기말 회계연도 예치금 등의 계산							
19. 기초 회계연도 예치금 등		20. 기중 회계연도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21. 당기 회계연도 예치금 등의 납입액		22. 회계연도 예치금 등 계 (19 + 20 + 21)	
500,000,000		5,000,000		200,000,000		695,000,000	
2.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13. 회계연도 예치금 등 계 (22)		14. 기초 회계연도 출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15. 회계연도 출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16. 기중 회계연도 수령 및 해약액	
695,000,000		500,000,000		5,000,000		495,000,000	
1. 회계연도 등의 부담금 조정							
당기말 현재 회계연도출당금							
1. 회계연도 누계액		2. 공부상 기말잔액		3. 확정기여형회계연도금자의 결정된 기계상환 회계연도출당금		4. 당기말 부인 누계액	
1,000,000,000		1,000,000,000		900,000,000		5. 차감액 (④ - ③ - ②)	
				100,000,000			
6. 회계연도 등 손금산입 누계한도액 (① - ⑤)							
900,000,000							
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17)		8. 손금산입액 한도액 (⑥ - ⑦)		9.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 (18)		10. 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중 적은 금액)	
495,000,000		405,000,000		200,000,000		200,000,000	
						11. 회사 손금 계상액	
						12. 조정금액 (⑧ - ⑪)	
						200,000,000	

1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

평가대상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인령 73)

1) 재고자산

- ㉠ 제품 및 상품(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용 부동산을 포함, 유가증권 제외)
- ㉡ 반제품 및 재공품
- ㉢ 원재료
- ㉣ 저장품

2) 유가증권

- ㉓ 주식 등(주식과 출자지분)
- ㉔ 채권
- 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㉖ 보험업법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당기의 매출원가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유가증권의 기말 가액은 당기 및 차기이후의 처분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자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법인령 74, 75)

대상자산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	① 원가법(원칙)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② 저가법(선택) : 취득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중 낮은 가액	① 원가법 (원칙)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② 저가법 (강제) 취득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중 낮은 가액
유가증권	① 원가법 (원칙) ② 저가법 (예외) ■ 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 시가법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① 원가법 (원칙) ② 저가법 (강제) ■ 시장성이 있거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 공정가액 평가 ■ 시장성이 없거나,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 원가법 적용

※ 법인은 재고자산을 위의 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원가법 중의 어느 한 평가방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② 위 ①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4) 평가방법의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하는 무신고시는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그 외의 자산은 선입선출법이다.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임의변경의 경우 무신고시 적용하는 평가방법과 당초신고한 정당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신고시는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그 외의 자산은 선입선출법, 임의변경의 경우 무신고시 적용하는 평가방법과 당초신고한 정당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5) 세무조정

1)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 평가손익	대차대조표 가액 > 법인세법 평가 대차대조표 가액 < 법인세법 평가	재고자산평가증 손금산입 (-유보) 재고자산평가감 손금불산입 (유보)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적인 발생 비정상적인 발생	매출원가에 가산(별도의 분개 없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2) 유가증권 평가

- ①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의 경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예외적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비망계정으로 당해 법인별 1천원은 남겨두어야 한다.
-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
 -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한 주식 또는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발행주식총수의 5%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액 주주)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희생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평가손익 세무조정

분류	계정과목	세무조정
영업외 손익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이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후 당해 투자주식 처분시 익금 및 손금 추인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손익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처분시에는 과세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주식 평가손익	평가이익발생시 : 익금산입(기타)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발생시 : 손금산입(기타)손금불산입(유보)

(6)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손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실,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가 불가하거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등으로 파손, 멸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 재고자산의 감액평가(법인법 집행기준 42-78-2)

- ① 파손,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따라 관리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12. > 외화자산 등

(1) 외환차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령 76⑤)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2011년 귀속부터는 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개념

구분	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대상)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 (평가제외)
자산	외화 현금·예금·채권, 외화보증금, 외화 대여금	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전환사채 등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화폐성외화자산·부채(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은 제외)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

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취득일 환율	①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4) 평가방법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의 평가방법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평가한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손익의 인식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 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매매기준율등]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또한, [원화기장액]이란 장부상에 계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하되 전기로부터 이월된 외화자산 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따라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7) [세무사랑Pro] 외화평가차손익(갑, 을)조정명세서

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평가방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손익을 평가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법인조정 과목별 세무조정 2 | 249

③ [③회사손익금계상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손익금액을 입력하고 등 금액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손익과 비교하여 [⑥손익조정금액]을 [F3 조정등록]을 통하여 세무조정한다.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정기

7777 (주)세무사랑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2023 연사 2023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11 저장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율지) 통화선도, 스왑, 환변동보합의 평가(율지) 1 2 3

No	②외화종류(자산)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⑤평가금액		⑥평가손익 자 산(⑤-⑥)
			⑥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⑥적용환율	⑥원화금액	
1	USD	40,000.00	1,100.0000	44,000,000	1,200.0000	48,000,000	4,000,000
2							
	합 계			44,000,000		48,000,000	4,000,000

No	②외화종류(부채)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⑤평가금액		⑥평가손익 부 채(⑥-⑤)
			⑥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⑥적용환율	⑥원화금액	
1	USD	10,000.00	1,100.0000	11,000,000	1,200.0000	12,000,000	-1,000,000
2							
	합 계			11,000,000		12,000,000	-1,000,000

13. ➤ 세금과 공과금

(1) 의의

세금과 공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의 세금, 공공단체나 조합 등의 공과금과 벌금, 과료 등을 말한다.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사회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이때 등록된 영업자 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2018.2.13. 폐지되어 2018.2.13. 이후 지출분부터는 상기 규정에 해당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2) 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1)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만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②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 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④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임의출연금 등
- ⑤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부과되는 공과금(예: 폐수부담금)
- ⑥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⑦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⑧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⑩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 ⑪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⑫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확정보험료의 보고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벌과금
- ⑬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⑮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법인 22601-1102, 1992.5.2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법인 46012-1640, 1993.6.7.)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초과배출부담금(법인 46012-2369, 1999.6.23.)
(기본배출부담금은 손금산입 가능)
- 내국법인이 홍보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법인 46012-661, 1994.3.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과 가산금(서이 46012-10145, 2001.9.1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2018.2.2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는 손금불산입(기재부 법인세 제과-145, 2018.2.21.))

2) 손금용인되는 제세공과금

다음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 ①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 ②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동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 ③ 성실신고회원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 ④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 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서이 - 1085, 2007. 6.4.)
- ⑥ 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서이-1123, 2006.6.15.)
- ⑦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서면 법인2019-336, 2020.05.26.)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2021-7515, 2021.12.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손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 ③ 철도회사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 ④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단순한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해당
- ⑤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 ⑥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4) 자본적 지출로 보는 조세 및 공과금

-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법인이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그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 ② 수익자부담금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수익자부담금
- ③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 ④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
- 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⑦ 기반시설부담금: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8)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세무사랑Pro] 세금과공과명세서

업무와 관련있는 교통위반벌과금 등은 손금불산입되는 대표적인 벌금, 과태료에 해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또한 공장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관련 세무조정은 계정별로 별도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 ① [F4 과목추가] 클릭하여 추가로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 반영할 [잡손실]계정이나 [법인세비용]계정 등을 입력한 후 [F12 불러오기]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세금과공과금명세서' (Tax and Surcharge Statement) interface. The 'F4 과목추가' (Add Item) button is highlighted. A dialog box titled '계정등록' (Register Account) is open, showing a list of accounts. The '0998 법인세' (Corporate Tax) account is selected and highlighted in red. The '0998 법인세' account is also highlighted in the main table. The 'F12 불러오기' (Load) button is highlighted.

코드	계정과목	참고
0517	세금과공과금	제조원가
0617	세금과공과금	도급원가
0657	세금과공과금	보관원가
0717	세금과공과금	분양원가
0767	세금과공과금	운송원가
0817	세금과공과금	판매관리비
0980	잡손실	
0998	법인세	

14. > 선급비용

(1) 선급비용 계산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등으로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기에 제공되지 않은 용역으로 차기이후에 인식하여야 할 선급비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선급비용} = \text{지급금액} \times \frac{\text{선급일수(미경과일수)}}{\text{총일수}}$$

총일수 계산함에 있어 보험료의 경우는 초일산입 말일산입하고 이자비용과 임차료 등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한다.

(2) 세무조정

선급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인식하므로 보험료 등을 지출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보험료는 비용 계상되어야 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보험료 지출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말 결산시 기간미경과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을 경우 기간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3) [세무사랑Pro] 선납비용명세서

[F12 불러오기]의 팝업창에 보험료 등 선급비용을 지출할 때 회계처리내용을 등록하면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 ① [F12 불러오기]의 팝업창에 [계정과목]은 전표입력할 때의 계정과목을 입력하고 [계정구분등록]은 [1. 미경과이자, 2. 선급보험료, 3. 선급임차료]를 선택한다.
- ② [금액반영]란에는 전표입력시 보험료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면 [1. 지급액]을 선택하고 선급비용계정과목을 선택하면 [2. 선급비용]을 선택한다.

- ④ [선급비용]
법인세법상 선급비용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을 말한다.
- ⑤ [회사계상액]
법인이 장부상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 ⑥ 등록할 때 [2. 선급비용]을 선택한 경우[대상기간] [지급액]에 총액을 직접 입력하면 [조정대상금액]이 계산된다.
- ⑦ [1. 지급액]을 선택한 경우 [대상기간]을 입력하면 [선급비용]란의 금액이 자동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수정된다.
- ⑧ [조정대상금액]을 [F3 조정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사계상액]이 [선급비용]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56 | (2023귀속) 세무사랑Pro 활용레시피 4



법인조정 공제감면세액



제7장

법인조정 공제감면세액

1.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기본개념

(1) 세액감면(면제)과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 소멸됨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 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대부분 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소득구분계산	감면대상업종, 범위 지정되어 있어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감면소득을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구분해야함	소득구분할 필요 없음
감가상각의제	대부분 감가상각의제 적용됨 (임의 상각의 예외로서 세법상한도액 까지 상각하여야 한다)	적용되지 않음
추가 적용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 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 공제 가능함
무신고또는 경정결정시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지방이전감면 등 감면 배제됨	배제규정 없음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감면 배제	배제규정 없음

구분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공통사항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별도 검토 ■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대상여부 검토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 세액공제와 감면, 당기세액공제와 이월세액공제 등 중복적용시 적용순서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법59 ①)

이 경우 아래 ①와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
 - ㉠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 농어촌특별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 ㉣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중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공제
-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3) 세액감면(면제) 한도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법 59 ②)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는 2020년12월31일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0.12.31. 이전 이월공제기간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 ①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7년
 - ②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0년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에 해당분 제외):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2.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재해손실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공제세액의 계산

$$\left[\frac{\text{산출세액} + \text{가산세액} - \text{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text{공제·감면세액}} \right] \times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text{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가 대상세액이다.

(2) 세액공제신청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3.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주요한 세액감면제도는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12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3의2)
- 공공기관의 혁신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2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법인세 감면(조특법 63)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3의2)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6①)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7①)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조특법 68①)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85의6)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96)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내용
2017년	■ 청년창업 특례규정 추가
2018년 1월 1일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 신설
2018년 5월 29일 이후	■ 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 감면신설 ■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증가 ■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34세이하로 변경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다음의 업종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광업, 2.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사업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는 제외한다.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정비공장등),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업, 16.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17.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 2018년 추가업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018.5.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2020년 추가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세분류기준 97개 업종이 추가
- 물류산업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 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2) 창업의 종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18 신설되어 적용)로서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⑤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할 수 있다.

3) 청년창업기업

(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이전은 29세 이하)인 대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

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함)를 말한다.

■ 청년의 범위 변경 및 적용방식

구분	2018.05.29. 이전 창업자	2018.05.29. 이후 창업자
청년의 범위	29세 이하	34세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과세연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2과세연도: 75% 그 다음 2과세연도: 50%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과세연도: 100%

(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법인설립 등기일)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서 2인이 각각 50%인 경우도 각자 최대주주 해당하므로 청년 50% 청년 아닌자 50%인 경우도 청년창업대상에 해당한다.

대표자는 청년대표자만을 말하므로 청년 아닌자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 감면 기간 중 청년 아닌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청년대표자가 군입대를 위하여 다른 청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자요건	최대주주 판단	청년창업감면 적용여부
청년(A) 대표이사	청년(A) 최대주주	적용가능
	청년(A) 50%+청년이 아닌 자 50%	적용가능
	청년(A)최대주주 → 청년(A)최대주주(x)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불가
대표이사 청년(A) → (B)로 변경	청년(A) 50%(최대주주)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불가

■ 청년이 공동대표자이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적용불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나 출자자를 말한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① 2017년 ~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

: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감면 배제

구분	창업지역요건	감면기간 및 감면율	추가감면 여부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전국 전 지역	5년간 50%	인원증가시추가감면 (2018이후 창업분부터)
■ 청년 창업 (29세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3년간 75% 2년간 50%	
■ 일반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5년간 50%	

②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

: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감면 가능

구분	창업지역요건	감면기간 및 감면율	추가감면 여부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전국 전 지역	5년간 50%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2018이후 창업분부터)
	과밀억제권내의 지역	5년간 50%	
■ 청년 창업(34세 이하)	과밀억제권외의 지역	5년간 100%	인원증가시 추가감면없음 (2018이후 창업분부터)
■ 일반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5년간 50%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2018이후 창업분부터)

(나)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구 분	잔여감면기간의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의 요건 불충족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창업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 창업감면 (5년간 50%)을 적용함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과밀억제권외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 창업감면 (5년간 50%)도 적용하지 아니함

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위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다.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7) 신성장서비스업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2018년 이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를 적용받으나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가능하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8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하 동일)
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9.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0.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8)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¹⁾

창업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기업의 세액감면에 불구하고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800만원 (2022년 이후 창업은

1) 2018.05.29.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8.05.29 법률 제15623호 부칙 제4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벤처기업 창업 또는 에너지 신기술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고용 등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한다.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감면 세액

2019년까지의 창업등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을 감면한다.

2020년 이후 창업 등의 경우 처음 5년간 100%(최저한세 적용제외), 다음 2년간 50%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적용한다.

(나) 중소기업 외 기업의 경우 감면 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①와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②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①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②의 금액을 적용한다. 위 ② (근로자수)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후관리

2022년 이후부터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위기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고용위기 지역	2018. 4. 5.	2022. 12. 31	(경남) 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2018. 5. 4.		(전남) 영암군, 목포시
	2018. 4. 5.	2024. 6. 30	(경남) 거제시
산업위기특별 대응지역	2018. 4. 5.	2022. 4. 4.	(전북) 군산시
	2018. 5. 29	2023. 5. 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10)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업종별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감면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추가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최소고용인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인 그 밖의 업종 5인이다.

* 최소고용인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인 그밖의 업종 5인.

추가감면세액 = ① × ②

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신성장서비스업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라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50\%$$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 ②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③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④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12)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다만, 2018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 위기지역 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고용창출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 받는 부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 ④ 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있다.
- ⑤ 2017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조특령 2조 ②각호의 경우(유예기간 중의 법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합병, 3년 이내 기준초과 등)감면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 ⑥ 청년중소기업감면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및 개인 공동사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업종요건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³⁾,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013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2014년 이후)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5년 이후)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7년 이후) 임업,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이후) 자동차임대업(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 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관세사, 2019년부터 소급적용)

2) 감면율

감면율은 해당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이때에 수도권 내·외의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서면 2팀-2499, 2006.12.7.),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을 말한다.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② 그 밖의 경우: 1억원

지역 구분		업종 구분	감면율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알뜰 주유소 ²⁾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	-
		그 외 해당 업종	20%	10%	20%
	중기업	-	-	-	10%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	-
		그 외 해당 업종	30%	15%	2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	-
		그외 해당 업종	15%	7.5%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은 법 시행(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가)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2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한다. 또한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법인2016-5783, 2016. 12. 09.)

2) 감면요건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①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감면세액의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감면(면제)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액 전액을 차감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조특법 집행기준 7-0-5)

$$\text{감면대상소득} = \frac{\text{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text{사업연도 소득금액}} - \left[\text{공제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right]$$

4)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 ③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부분의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며, 2018귀속부터는 고용

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적용된다.

- ⑤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4. > 소득구분계산서

(1) 구분경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조특법 143 ①, 조특령 136 ①)

법인이 감면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자수익 등은 감면사업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서 과세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공통경비 또는 수익에 대하여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과세소득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법 집행기준 113-156-5)

(2) 개별익금

- ①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②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수이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① 부산물, 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채무면제익
- ③ 원가차익
- ④ 채권추심익
- ⑤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 ⑥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판매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팁-1398, 2007.10.11.)

- ③ 다음의 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즉, 감면대상 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 ① 수입배당금
- ② 수입이자
- ③ 유가증권 처분익
- ④ 수입임대료
- ⑤ 가지급금 인정이자
- 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익
- ⑦ 자산수증이익
- ⑧ 국고보조금(법인46012-589.1995.03.03.)
- ⑨ 농수산물판매촉진비
- ⑩ 휴업수당지원금
- ⑪ 고용유지지원금(사전2021-767,2021.09.29.)
- ⑫ 정부출연금(연구개발업 해당시 감면소득에 해당함)
- 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액,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사전법규소득2022-608, 2022.06.28.)

(3) 개별손금

- ① 사업 또는 수입별 개별손금은 당해 사업 또는 수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구분경리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은 당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 ① 매출원가
-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충당금 전입액
- ④ 기타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

- ② 다음의 영업외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 ① 유가증권평가손
- ② 유가증권처분손
- ③ 유형자산처분손

(4)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다음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비용)은 공통익금(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1) 공통익금

-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2) 공통손금

- ① 사채발행비 상각
-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③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 ④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업이 지출한 기부금(서이-614,2007.4.9.)
- ⑤ 면제사업과 관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대법원 2005두5130,2006.12.7.)

(5)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 공통손익의 안분

공통손익은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결산시 안분하여 구분계산한다.

구 분		안분계산방법
• 공통익금		수입금액(매출액)비례
• 공통손금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매출액)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비례

-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함)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안분계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6) 기타의 공통손금

1) 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2) 외환차손익

- ①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②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③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④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⑤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 ⑥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⑦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7)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구분된 감면대상사업소득과 과세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①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한 소득금액 구분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감면사업A	감면사업B	과세사업
금 액	200,000,000	△50,000,000	200,000,000	50,000,000
산출세액	18,000,000			

② 도매업 결손금의 안분

구 분	소득금액	비 율	감면사업A결손금 안분
감면소득B	200,000,000	80%	40,000,000
과세사업	50,000,000	20%	10,000,000
합 계	250,000,000	100%	50,000,000

- ③ 감면사업소득금액은 감면사업A 결손금 안분금액을 차감한 160,000,0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 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비용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 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 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 ② 잡이익과 잡손실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 ④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 ⑥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 ⑦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의 사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한다.

⑧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⑨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8) [세무사랑Pro]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조정-과세및세액계산-소득및과표계산-소득구분계산서]

이 서식은[1.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경리]→[2.세무조정소득구분]→[3.공통손익의안분기준]→[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5.소득구분계산서] 순으로 차례로 작성한다.

자료

자료1 손익계산서

매출액	150,000,000
매출원가	(-)80,000,000
매출총이익	70,000,000
판매비와관리비	(-)28,000,000
영업이익	42,000,000
영업외수익	3,500,000
영업외비용	1,0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4,5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당기순이익	39,500,000

자료 2

(1) 제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며 서비스업은 비감면사업이다.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매출액	105,000,000	45,000,000
매출원가	48,000,000	32,000,000
매출총이익	57,000,000	13,000,000

(2)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이다.

(3) 매출원가 이외는 개별손금은 없다.

(4) 영업외 손익명세서

구분	계정과목	금액	비고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2,300,000	사옥의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1,000,000	관계회사 배당금 수령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1,000,000	은행대출이자

(5) 세무조정사항

1) 익금 및 손금가산사항명세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법인세비용	5,000,000	기사	수입배당금	500,000	기타
접대비한도초과	1,000,000	기사			
업무용승용차	2,500,000	유보			
인정이자	2,000,000	상여			
지급이자	500,000	기사			
합계	11,000,000		합계	500,000	

2) 이월결손금

결손금발생연도	계	비고
2020.1.1.~12.31	5,000,000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에서 발생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1) 1.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경리

- ①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란에 감면받을 세액감면명칭을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직접 등록한다. 이는 감면율이 감면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표준손익계산서와 합계란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불러온다. 표준손익계산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2.세무조정소득구분]→[3.공통손익의안분기준]→[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5.소득구분계산서] 순으로 다시 작성한다.

- ③ [③합계]란에는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공통분]과 [개별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개별분은 [기타분]으로 자동으로 기재되고,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분 등에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금액이 [기타분]에 기재된다.

소득구분계산서 정기											
☒ 달기 ⑦ 도움 ☐ 취소 ☐ 인쇄 ☐ 조회 ☐ 전기 ☐ 초기 ☰ CF5 전체 삭제 F6 재계산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9 F12 불러오기											
표준손익계산서 및 합계[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금액을 새로 불러옵니다.											
예(Y) 아니오(N)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명세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											
①과목	표준손익계산서	②구분	③합계	④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1) 매출액	150,000,000		150,000,000	105,000,000	70.00					45,000,000	30.00
(2) 매출원가	80,000,000		80,000,000	48,000,000	60.00					32,000,000	40.00
(3) 매출총손익 ((1)-(2))	70,000,000		70,000,000								
(4) 판매비와 관리비	28,000,000	개별분	28,000,000								
		공통분	28,000,000								
		계	28,000,000								
(5) 영업손익 ((3)-(4))	42,000,000		42,000,000								
		개별분	3,500,000							3,500,000	100.00
		공통분	3,500,000								
		계	3,500,000								
(6) 영업외 수익	3,500,000		3,500,000								
		개별분	3,500,000								
		공통분	3,500,000								
		계	3,500,000								
(7) 영업외 비용	1,000,000		1,000,000								
		개별분	1,000,000								
		공통분	1,000,000								
		계	1,000,000								
(8) 각 사업년도 소득 ((5)-(6)-(7))	44,500,000		44,500,000								
(9) 이월결손금			5,000,000	4,000,000	80.00					1,000,000	20.00
(10) 비과세 소득											
(11) 소득공제액											
(12) 과세표준 ((8)-(9)-(10)-(11))	44,500,000		39,500,000								

2) [2. 세무조정소득구분]

- ①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 같은 창이 뜨는데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세무조정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Check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사항을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기부금한도초과를 포함하여 불러옵니다.

아니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만 불러옵니다.

취소) 불러오기를 취소합니다.

예(Y)

아니오(N)

취소(ESC)

[예] : 기부금한도초과를 포함하여 불러옵니다.

[아니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만 불러옵니다. 이 경우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인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은 [과목추가]기능을 통하여 직접 반영한다.

- ② 손금불산입된 법인세비용은 [과목선택]을 [6.해당없음]으로 등록한다.

그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과목선택][구분선택][감면선택]에서 입력한다.(오른쪽 내용을 참조)

- ③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세무조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다시 [3.공통손익의안분기준]→[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5.소득구분계산서] 순으로 다시 작성한다.

소득구분계산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장 연월 6기 2023-01-01-2023-12-31 분기제 2023 연도

☒ 정기 ☑ 도출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가 ☐ 차기

☰ CF5 전체삭제 F6 대계산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관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No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1	법인세비용	5,0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결대비한도초과	1,000,000	판매비와관리비	공통분	해당없음	
3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한도초과	2,500,000	판매비와관리비	공통분	해당없음	
4	가자금금인정이자(대표이사)	2,000,000	영업외수익	개발분	기타분	
5	업무무관자산자금이자	500,000	영업외비용	공통분	해당없음	
6	기부금한도초과액	7,000,000	영업외비용	공통분	해당없음	추가
7						추가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No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1	배당금수익익금불산입	500,000	영업외수익	개발분	기타분	
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	4,500,000	영업외비용	공통분	해당없음	추가

1. 과목추가

2.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한 채입금 지급이자를
소득내용: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구분선택: 1:개발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2. 배당

소득처분: 배당
소득내용: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분율 익금불산입액을
기타처분함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구분선택: 1:개발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3)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기준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소득구분계산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

CF5 전체삭제 F6 재계산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1. 안분기준

과목	안분기준
1. 판매비와 관리비 공통분	2: 1: 매출액비례 2: 개별손금비례
2. 영업외 수익 공통분	1: 1: 매출액비례 2: 개별손금비례
3. 영업외 비용 공통분	2: 1: 매출액비례 2: 개별손금비례

상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상통손금은 업종이 농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법령 제 156, 법칙 제 75 ②, 법칙 제 76 ③)

2. 기준금액

과목	합계	감면분 또는 준비금해당분				기타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50,000,000	105,000,000	70.00			45,000,000	30.00
개별손금	80,000,000	48,000,000	60.00			32,000,000	40.00

사용자편집

4)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에 따라 개별익금 및 손금, 공통익금 및 손금을 안분한 내용으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소득구분계산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법인 6기 2023-01-01-2023-12-31 2023 연세 2023

CF5 전체삭제 F6 재계산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구분	②구분	③합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1) 매출액	표준손익계산서		150,000,000	105,000,000	70.00							45,000,000	30.00
	세무조정		150,000,000	105,000,000								45,000,000	30.00
(2) 매출원가	표준손익계산서		80,000,000	48,000,000	60.00							32,000,000	40.00
	세무조정		80,000,000	48,000,000								32,000,000	
(3) 매출총손익	표준손익계산서		70,000,000	57,000,000								13,000,000	
((1)-(2))	세무조정		70,000,000	57,000,000								13,000,000	
(4) 판매비와 관리비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28,000,000	16,800,000	60.00							11,200,000	40.00
	공통분	계	28,000,000	16,800,000								11,200,000	
	세무조정	개별분	-3,500,000	-2,100,000	60.00							-1,400,000	40.00
	공통분	계	-3,500,000	-2,100,000								-1,400,000	
(5) 영업손익	표준손익계산서		42,000,000	40,200,000								1,800,000	
	세무조정		3,500,000	2,100,000								1,400,000	
((3)-(4))	계		45,500,000	42,300,000								3,200,000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3,500,000									3,500,000	
	공통분	계	3,500,000									3,500,000	
(6) 영업외 수익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1,500,000									1,500,000	
	공통분	계	1,500,000									1,500,000	
	세무조정	개별분											
	공통분	계											
(7) 영업외 비용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1,000,000	600,000	60.00							400,000	40.00
	공통분	계	1,000,000	600,000								400,000	
	세무조정	개별분											
	공통분	계											

전자

5) 5. 소득구분계산서

- ① (12)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 ② (12)과세표준금액의 구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구분계산서 정기 7007 주식회사 세무사랑 연인 6기 2023-01-01-2023-12-31 주가세 2023 연세 2023

CF5 전체상태 F6 재계산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관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인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서 5. 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②구분	③합계	감면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비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1) 매출액		150,000,000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2) 매출원가		80,000,000		60.00					45,000,000	30.00	
(3) 매출총손익 ((1)-(2))		70,000,000		57,000,000					13,000,000		
(4)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분	24,500,000		14,700,000	60.00				9,800,000	40.00	개발손금
	공통분										
	계	24,500,000		14,700,000					9,800,000		
(5) 영업손익 ((3)-(4))		45,500,000		42,300,000					3,200,000		
(6) 영업외 수익	개발분	5,000,000							5,000,000	100.00	
	공통분										매출액
	계	5,000,000							5,000,000		
(7) 영업외 비용	개발분										
	공통분	500,000	300,000	60.00					200,000	40.00	개발손금
	계	500,000	300,000						200,000		
(8) 사업년도 소득 ((5)-(6)-(7))		50,000,000		42,000,000					8,000,000		
(9) 이월결손금		5,000,000		4,000,000	80.00				1,000,000	20.00	
(10) 비과세 소득											
(11) 소득공제액											
(12) 과세표준 ((8)-(9)-(10)-(11))	2	45,000,000		38,000,000					7,000,000		

전자 1 (12)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12. 과세 표준금액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 됩니다

(9) [세무사랑Pr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조정-공제감면-공제감면세액(법인세)-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① [①구분]란에는 [F2 코드]기능을 이용하여 적용받고자하는 감면의 종류를 선택한다.
- ② [F12 불러오기]를 통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상의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반영한다.
- ③ [②계산명세 - 감면소득]에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득구분계산한 감면소득을 감면업종별로 입력한다.
- ④ [최저한세 계산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이 ⑤감면세액] 있으면 [④최저한세적용감면

배제금액]에 입력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illegible]

5.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산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등을 작성하면서 계산된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전부 폐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종전의 개별적인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폐지되었지만 2020, 2021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 단위별이 아닌 법인단위별로 종전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를 적용 받거나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세액공제규정	개정규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5)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7)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1) 세액공제 대상 업종

모든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① 호텔업 및 여관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세액공제대상 자산

다음의 ①, ②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자산은 제외하되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는 해당한다)하는 경우 적용한다.

리스자산 중에서 운용리스는 제외되나 금융리스자산으로 신규취득한 경우는 해당되며, 운용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변경한 경우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 ①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토지, 건축물(부속설비 포함), 구축물(조특법 별표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다음의 자산

- ㉠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조특칙 12 ②)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대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수도
환경보전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①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④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다음의 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도매업·소매업·물류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①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②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③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 웨어

- ④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자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

-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3) 세액공제액

위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일반투자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중소기업	10%	12%	16%
중견기업	3%	5%	8%
일반기업	1%	3%	6%

②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text{추가공제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text{①} \left(\frac{\text{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직전3년간 연 평균투자금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직전3년간 연 평균투자금액}} \right) \times 3\%(\text{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4\%))$$

$$\text{②} \quad \text{기본공제금액} \times 2$$

$$\text{해당 과세연도의 직전3년간 연 평균투자금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금액 제외

2014년 이후의 투자분부터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에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국가등의 이자보전금액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각종투자금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에 시가인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에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4) 투자세액공제연도

위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가) 사후관리기간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기간까지 그 자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 위 외의 사업용 자산 : 2년

(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사후관리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공제세액} \times \text{이자계산기간} \times \frac{223}{100,000}$	
※ 이자계산기간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대상

투자 종류	1989년 이전 창업기업 (중소+일반)	1990년 이후 창업중소기업	1990년 이후 창업일반기업
대체 투자 (기존장비의교체)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증설 투자 ⁴⁾	공제 불가 (산업단지, 공업지역 ⁵⁾ 가능)	공제 불가 (산업단지, 공업지역 가능)	공제 불가
무조건 공제대상 투자 (대체, 증설, 창업일 구분 없이)	■ 디지털방송장비(제작, 편집, 송신등) ■ 정보통신장비(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설비)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신에너지·재생에너지생산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3) 2022년 0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2022년 02월 15일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2022년 02월 14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5/100,000)에 따르고, 2022년 02월 15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규정(22/100,000)에 따른다.

4) 증설투자란(시행령 제124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규칙 제53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규칙 제5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7) 기타사항

- ①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②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한다.
- ③ 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과급일 것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시행령 제124조 제2항)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 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중소기업 : 120%)

(3) 통합고용세액공제

1) 개요

정부에서는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조특법 29의 8)를 신설하였다.

종전	개정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년도 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임.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914, 2023.6.8.).

2) 세액공제 대상업종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며,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 여기서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①)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본공제금액

(가) 세액공제금액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 ①)

세액공제 금액 = ① + 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 세액공제액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 세액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청년 등 : 청년 정규직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구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가)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26의 8②).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조특법 2).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법인세법상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조특령 26의 8 ③ 1호).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다)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③ 2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라) 60세 이상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③ 3호).

마)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③ 4호).

-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을 것. 여기서 동일한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가 같은 업종을 말하며(조특령 26의 3 ②), 1년 이상 근무한 자란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조특령 26의 3 ③).
- ② 다음의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조특령 26의 3 ④)
 -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상시근로자수 등의 계산

가) 계산방법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조특령 26의 8 ⑥).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text{청년등 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단시간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지원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령 26의 8 ⑦).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0%) 이상일 것

다) 창업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조특령 26의 8 ⑩).

- ① 창업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0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 8②).

- 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②).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령 26의 8④). 한편, 추가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 8 ⑤).

가) 2차년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령 26의 8 ④ 1호).

구분	추가납부세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	①-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 ㉠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청년등의 공제금액 -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청년등 공제금액
	①-2 그 밖의 경우 ㉠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등의 공제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 등 공제금액 - 청년 등 외의 공제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나) 3차년도

(가)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령 26의 8 ④ 2호).

구분	추가납부세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 ㉠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등의 공제금액 -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등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①-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의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4) 추가공제금액

(가) 정규직 전환자 추가공제

가) 세액공제금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③).

세액공제 금액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수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조특법 26의 8 ⑨).

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란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조특법 29의 8 ③).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란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법 29의 8 ③).

라) 공제배제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자 추가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 8 ③).

(나)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가) 세액공제금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 ④)

세액공제 금액 =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수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나)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조특법 29의 8 ④).

-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는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조특령 26 8 ⑩)
-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 규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⑨).

다) 공제배제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 8 ④)

(다) 사후관리 :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 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⑥).

5) 세액공제의 신청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

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⑦, 조특령 26의 8 ⑩)

6)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 ②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10년)한다.

사례

1) 기본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증가	25	15	10

(1) 2023년 공제세액 및 추정세액

$$\begin{aligned}
 & \text{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times 1,450\text{만원} + \text{기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times 850\text{만원} \\
 & = (35 - 20) \times 14,500,000 + (20 - 10) \times 8,500,000 \\
 & = 302,500,000\text{원}
 \end{aligned}$$

2)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청년외 감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48	30	18

2023년 및 2024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2023년	2024년
공제세액(1차)	- 청년 등 $(35-20) \times 14,500,000$ = 217,500,000 - 청년 외 $(20-10) \times 8,500,000$ = 85,000,000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
추가공제(2차)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 수(48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2023년(55명)에 비하여 감소
추징세액		2023년도 공제액 추징 $(35-30) \times 14,500,000 + (20-18) \times 8,500,000$ 원 = 89,500,000원

3)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청년외 증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49	25	24

2023년 및 2024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2023년	2024년
공제세액(1차)	- 청년등 $(35-20) \times 14,500,000$ = 217,500,000 - 청년 외 $(20-10) \times 8,500,000$ = 85,000,000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
추가공제(2차)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 수(54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2022년(55명)에 비하여 감소
추징세액		2023년도 공제액 추징 $[(10-6) \times (14,500,000\text{원} - 8,500,000\text{원})] + (6 \times 14,500,000) = 111,000,000\text{원}$

4)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감소, 청년외 증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사업

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60	33	27

2023년 및 2024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2023년	2024년
공제세액(1차)	- 청년등 $(35-20) \times 14,500,000 = 217,500,000$ - 청년외 $(20-10) \times 8,500,000 = 85,000,000$	- 청년: 공제액 없음 - 청년외: $\text{Min}[(27-20), 5] \times 8,500,000 = 42,500,000$원
추가공제(2차)		- 청년: $15 \text{명} \times 8,500,000 \text{원} = 127,500,000 \text{원}$ (청년외로 추가공제함) - 청년외: $10 \text{명} \times 8,500,000 \text{원} = 85,000,000 \text{원}$
추징세액		2023년도 공제액 추징 $= (40-38) \times (14,500,000 - 8,500,000)$ $= 12,000,000$

5) 2차년도, 전체증가, 청년증가, 청년외감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62	45	17

2023년 및 2024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2023년	2024년
공제세액(1차)	- 청년등 $(35-20) \times 14,500,000 = 217,500,000$ - 청년외 $(20-10) \times 8,500,000 = 85,000,000$	- 청년: $\text{Min}[(45-35), 7] \times 14,500,000 = 101,500,000$ - 청년외: 없음.
추가공제(2차)		상시근로자가 증가, 청년 등 근로자 증가 $(35-20) \times 14,500,000 + (20-10) \times 8,500,000$ $= 302,500,000 \text{원}$
추징세액		해당없음

6) 3차년도, 상시 감소, 청년 감소, 청년외 감소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각 연도별 공제세액을 계산하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각 연도별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49	25	24
2025년	47	24	23

2023년과 2024년 및 2025년 공제세액 및 추정세액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세액 (1차)	- 청년등 (35-20)×14,500,000 = 217,500,000 - 청년외 (20-10)×8,500,000 = 85,000,000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
추가공제 (2차)		공제액 없음 전체 상시근로자 수(54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2022년 (55명)에 비하여 감소	추가공제 없음
추정세액		2023년도 공제액 추정 [(10-6)×(14,500,000원- 8,500,000원)]+(6×14,500,000) = 111,000,000	2023년 추정세액 {[(11-8)×(14,500,000-8,500,000)] +(8×14,500,000)}- 111,000,000 (2024년 추정세액) = 23,000,000

7) 3차년도, 상시 증가, 청년 감소, 청년외 증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사업 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2년	30	20	10
2023년	55	35	20
2024년	65	41	24
2025년	69	34	35

2023년과 2024년 및 2025년 공제세액 및 추정세액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세액 (1차)	- 청년등 (35-20)×14,500,000 = 217,500,000 - 청년외 (20-10)×8,500,000 =85,000,000	- 청년등 (41-35)× 14,500,000 = 87,000,000 - 청년외(24-20)×8,500,000 = 34,000,000	Min[(35-24), (69-65)]×8,500,000 = 34,000,000
추가공제 (2차)		- 청년등 (35-20)×14,500,000 = 217,500,000 - 청년외 (20-10)×8,500,000 = 85,000,000	- 청년등 (41-35)×14,500,000 = 87,000,000 - 청년외 (24-20)×8,500,000 = 34,000,000
추가공제 (3차)			- 청년등 (35-20)×8,500,000 = 127,500,000(청년외로 공제) - 청년외 (20-10)×8,500,000 = 85,000,000
추정세액			2023년 공제액 추정 (35-34)×(14,500,000원 -8,500,000원) ×2회 = 12,000,000 2024년 공제액 추정 Min[(41-34), 6] × (14,500,000원-8,500,000원) ×1회 = 36,000,000원

8) 청년이 생일이 지나 청년외로 분류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2022년 4월 입사 당시에는 청년이었던 상시근로자가 2023년 6월 중 생일이 지나 청년외로 분류된 경우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청년				1	1	1	1	1	1	1	1	1
	청년 외												
	상시근로자				1	1	1	1	1	1	1	1	1
2023	청년	1	1	1	1	1	0	0	0	0	0	0	0
	청년외	0	0	0	0	0	1	1	1	1	1	1	1
	상시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구분	합계	청년	청년외
2022	0.75	0.75	0
2023	1	0.5	0.5
2024	1	0	1
2025	1	0	1
2026	1	0	1

2022년~2025년 공제세액 및 추정세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세액 (1차)	- 청년등 ($0.75 \times 14,500,000$) = 10,875,000원 - 청년외: 없음	- 청년: 없음 - 청년외 $\text{Min}[0.5, 0.25] \times$ $8,500,000 = 2,125,000\text{원}$	공제액 없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공제액 없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추가공제 (2차)		청년 $0.75 \times 8,500,000$ = 6,375,000 (청년외로 공제)	청년외 2,125,000	-
추가공제 (3차)			청년 6,375,000	청년 2,125,000
추징세액		* 2022년 추정세액 없음		

* 2022년 추정세액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본래는 추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하므로, 추정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9)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2021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세무사랑의 상시근로자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사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주)세무사랑은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	청년	청년외
2020년	-	-	-
2021년	20	15	5
2022년	39	20	19
2023년	42	21	21

2021년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1년	2022년	2023년
공제세액 (1차)	- 청년15×11,000,000 = 165,000,000 - 청년외5×7,000,000 = 35,000,000	- 청년5×11,000,000 = 55,000,000 - 청년외14×7,000,000 = 98,000,000	- 청년1×14,500,000 = 14,500,000 - 청년외1×8,500,000 = 8,500,000
추가공제 (2차)		- 청년15×11,000,000 = 165,000,000 - 청년외5×7,000,000 = 35,000,000	- 청년5×11,000,000 = 55,000,000 - 청년외14×7,000,000 = 98,000,000
추가공제 (3차)			- 청년15×11,000,000 = 165,000,000 - 청년외5×7,000,000 = 35,000,000
추징세액		-	-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동일

2) 세액공제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⁶⁾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세액공제금액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22.12.31.까지 세액공제금액 ⁷⁾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세액공제금액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0원

※ ①과 ②의 증가한 인원 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3) 상시근로자의 개념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4)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7 ③).

- ① 청년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6)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소비자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7)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만 적용한다.(조특법 29의7 ① 1호 단서)

5)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

6)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가)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나)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 ①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정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과 동일

8)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가)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021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적용한 세액공제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2022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추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 ②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10년)
- ③ 다른 세액감면·면제와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의 추가세액감면)과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7 ④ 단서)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 대상자 및 공제세액**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 이후 적용)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100

-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text{사회보험료} \times \left(\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right)$$

(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10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100)

- ①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위 '1)의 ①'(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을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봄)를 말한다.
-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text{사회보험료율} \times \left(\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right)$$

2)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료율

(가) 사회보험 범위

사회보험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나)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2
- ② 위의 '①'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③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3)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가)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⑦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 ① 청년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②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의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4)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및 추가세액공제배제

(가)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나) 추가세액공제배제

세액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최초공제연도의 세액공제 계산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5)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한다.
- ② 일부 감면세액과 중복적용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허용한다.
- ③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10년)한다.

(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음의 같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㉔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㉕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㉖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② 위 ①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친족 관계가 아닐 것

2)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육아휴직 복귀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④ ②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관계 종료시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① 최저한세 적용
- ② 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 ③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됨
- ④ 농어촌특별세 적용

(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자 및 공제세액

(가)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2015년부터 시행)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①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1) 다음의 ①과 ②를 같이 충족하는 경우

- ①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2)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중견기업 :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해당되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나)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위 ‘(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가)’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38/1,000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여기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times (1 + 38/1,000)]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년부터 시행)

(가) 세액공제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1) 다음의 ①과 ②를 같이 충족하는 경우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geq$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2)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 증가 합계액 $\times$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증가액 = 해당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직전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 ①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 ③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 ㉠ 임원
 - ㉡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상시근로자의 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100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령 26의 4 ③).

$$\text{상수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수}}$$

3) 사후관리(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세액을 합한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text{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times \frac{\text{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text{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times \text{기간} \times \frac{25}{100,000}$$

*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4) 기타사항

- ① 추계결정시 적용이 배제된다.
- ②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
- ③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④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된다.
- ⑤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자 및 공제세액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상가임대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 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에서 ②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제외)인 임대료 인하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하고 갱신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 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 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2) 임차소상공인

임차소상공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②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③ 별표 14별표(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사후관리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5/100를 초과한 것을 말함)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공제신청서 제출

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9) [세무사랑Pro]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할 경우 적용할 세액공제와 공제금액계산

■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수

과세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월수합			월수	상시근로자수
													합계	청년등	청년외		
2023	7	7	7	7	7.5	7.5	7.5	7.5	7.5	7.5	7.5	7.5	88	49	39	12	7.33
2022	5	7	7	10	10	10	9	9	9	9	2	8	103	44	58	12	8.5
2021	4	6	6	7	7	7	7	7	7	7	6	6	78	22	56	12	6.5
2020	3	3	3	3	4	5	5	5	6	6	6	6	55	20	35	12	4.58

• 사회보험료율(과세연도마다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9.58%

① 국민건강보험료율: 3.23%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0.27%

③ 국민연금료율: 4.5%

④ 고용보험료율: 0.9%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0.68%

(1) 2021년 세액공제 계산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14,120,000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1.92명 증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0.17명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1년 대비	2021년 1차연도
상시근로자수	4.57	6.49	1.92 증가	
청년 등	1.66	1.83	0.17 증가	1,870,000
청년 외	2.91	4.66	1.75 증가	12,25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14,120,000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에 비하여 1.75명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0.5명 증가하였으므로 당기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청년등 세액공제 $0.17 \times 11,000,000 = 1,870,000$

㉡ 청년외 세액공제 $1.75 \times 7,000,000 = 12,25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5,228,515

구분	2020년	2021년	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4.57	6.49	1.92증가
청년+경력	1.66	2.58	0.92증가
청년 외	2.91	3.91	1 증가

청년+경력 총급여 : 105,000,000 청년 외 총급여 134,000,000(대표자 제외)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5,000,000 \div 2.58 \times 9.58\% = 3,898,837$

㉡ 청년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34,000,000 \div 3.91 \times 9.58\% = 3,283,171$

㉢ 청년등 세액공제 = $0.92 \times 3,898,837 \times 100\% = 3,586,930$

㉣ 청년외 세액공제 = $1 \times 3,283,171 \times 50\% = 1,641,585$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박경력) = $40,000,000 \times 30\% = 12,000,000$

(2) 2022년 세액공제 계산

구분	2021년	2022년	2021대비	2021년 2차연도	2022년 1차연도
상시	6.49	8.49	2		
청년 등	1.83	3.66	1.83	1,870,000	22,000,000
청년 외	4.66	4.83	0.17	12,250,000	12,810,000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48,93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2년) = 34,810,000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에 비하여 2명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1.83명 증가하였으므로 당기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청년등 세액공제 = $2 \times 11,000,000 = 22,00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83 \times 7,000,000 = 12,810,000$

- 2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14,120,000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에 비하여 2명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1.83명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1,87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2,25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4,414,395

구분	2021년	2022년	2022대비
상시	6.49	8.49	2
청년 +경력	2.58	3.75	1.17
청년 외	3.91	4.74	0.83

청년+경력 총급여 : 135,000,000 청년 외 총급여 189,000,000(대표자 제외)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5,620,343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에 비하여 2명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1.17명 증가하였으므로 당기 사회보험료세액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35,000,000 \div 3.75 \times 9.58\% = 3,448,800$

- ㉠ 청년의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89,000,000 \div 4.74 \times 9.58\% = 3,819,873$
- ㉡ 청년등 세액공제 = $1.17 \times 3,448,800 \times 100\% = 4,035,096$
- ㉢ 청년의 세액공제 = $0.83 \times 3,819,873 \times 50\% = 1,585,247$
- 2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5,228,515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에 비하여 증가 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 청년등 세액공제 = 3,586,930
- ㉤ 청년의 세액공제 = 1,641,585
-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박경력) = $40,000,000 \times 30\% = 12,000,000$

(3) 2023년 세액공제 계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 대비	2022 대비	2021년 3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1차연도
상시	4.57	6.49	8.49	7.33	0.84	-1.16		0	0
청년 등	1.66	1.83	3.66	4.08	2.25	0.42	추가공제	0	0
청년 외	2.91	4.66	4.83	3.25	-1.41	-1.58	추가공제	추가납부	0

-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14,25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3년) = 0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3년 고용증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2차년도 세액공제(2022년) = 0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2년 분 2차 추가세액공제는 배제함. 따라서 2022년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액 중 고용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을 검토하여야 함.
 - 3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14,120,000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1년에 비하여 0.84명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2.25명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1년분 3차 추가세액공제는 적용함.
- ㉠ 청년등 세액공제 = 1,870,000
- ㉡ 청년의 세액공제 = 12,250,000
- 2022년도 세액공제 중 추가납부세액 = 8,120,000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2년 고용증가 세액공제 중 고용감소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가납부함 추가납부세액 = $1.16 \times 7,000,000 = 8,120,000$
-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0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대비	2023년 대비
상시	6.49	8.49	7.33	2.	-1.16
청년 +경력	2.58	3.75	3.08	1.17	-0.67
청년 외	3.91	4.74	4.25	0.83	-0.49

- ②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인사급여-근로소득관리 - 근로소득관리 - 사원등록]에 등록된 근로자의 정보를 필요한 사업연도별로 반영한다.

- ③ [F3 전년도복무기간불러오기]는 근무직원에 대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정보를 직전 연도의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있는 정보를 반영하는 기능이다.

▶ [공제구분]에서 [통합고용]을 선택한 경우

▶ [공제구분]에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을 선택한 경우

- ④ [CF3 전년도불러오기]는 당기 이전 자료를 전기입력자료로 반영하는 기능이다.

▶ [공제구분]에서 [통합고용]을 선택한 경우

Check

전년도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의 자료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Y) 아니오(N)

- ▶ [공제구분]에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을 선택한 경우

Check

전년도 통합고용의 자료의 자료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전년도 통합고용 자료 불러옵니다.
 아니요) 전년도 고용증대 자료 불러옵니다 (청년등 재계산)
 취소) 전년도불러오기를 취소합니다

예(Y) 아니오(N) 취소(Esc)

(나) 2 사원별 상시근로

반영된 근로자 정보를 기준으로 [2]사원별 상시근로]에서 사원별로 반영한다.

- ① [상시구분]: 대표자는 [사원등록]에서 [대표자여부]에서 [여]를 선택하면 [상시구분]에 [대표자/임원]으로 자동 표시된다(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1. 상시근로자], [2. 단시간예외 0.5], [3. 단시간예외 0.75], [4. 대표자/임원], [5. 제외근로자] 중에서 선택한다.
- ② [복무월수]: 병역이행기간을 입력한다.
- ③ [청년여부]: 나이(복무월수를 반영한 나이)를 기준으로 [여/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 ④ [기타우대]: [0. 해당없음], [1. 장애/60세], [2. 경력단절],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우대요건이 적용된다.
- ⑤ [일용직 근로자]를 반영할 경우 [일용직] 탭에서 할 수 있다.

2 사원별 상시근로		5		1		2		3		4				
상용직		일용직												
사원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	퇴사일	상시구분	복무월수	나이()	청년여부	기타우대	상시근로자수			급여	
										합계	청년등	청년외	지급총액	비과세
101	김대표	1 680714-111111	2018-05-07		대표자/임원		55(0)	부					120,000,000	
105	문면제	1 910501-111111	2020-05-06		상시근로자			여		12.00	12.00		45,000,000	
106	김경력	1 840502-222222	2021-04-18		상시근로자			부	경력단절	12.00	12.00		45,000,000	
107	박군인	1 910525-111111	2021-02-20	2023-02-25	상시근로자			여		1.00	1.00		35,000,000	
108	윤새내	1 940515-111111	2021-02-28		상시근로자			여		12.00	12.00		45,000,000	
109	김대한	1 610909-111111	2022-02-08	2023-12-31	상시근로자		62(0)	부	장애/60세	12.00	12.00		35,000,000	
110	이민국	1 951205-111111	2022-05-03		상시근로자	24	28(26)	여		12.00	12.00		35,000,000	
합계										88.00	73.00	15.00	430,000,000	

⑥ [사원별 상시근로]의 사원을 선택하면 [3사원별 월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사원별 상시근로

상용직		일용직													
사원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	퇴사일	상시구분	복무월수	나이()	청년여부	기타우대	상시근로자수			급여		
										합계	청년등	청년외	지급총액	비과세	
108	윤새내	1 940515-1111111	2021-02-28		상시근로자		29(0)	여		12.00	12.00		45,000,000		
109	김대한	1 610909-1111111	2022-02-08	2023-12-31	상시근로자		62(0)	부	장애/60세	12.00	12.00		35,000,000		
110	이민국	1 951205-1111111	2022-05-03		상시근로자	24	28(26)	여		12.00	12.00		35,000,000		
113	캐나리	1 870102-2222222	2022-02-02	2023-01-30	상시근로자		36(0)	부					5,000,000		
115	정백합	1 730504-2222222	2023-01-15		상시근로자		50(0)	부	장애/60세	12.00	12.00		25,000,000		
117	차광미	1 741111-1222222	2023-02-02		상시근로자		49(0)	부		11.00		11.00	20,000,000		
118	민틀레	1 960528-2222222	2023-05-10		단시간예외0.5		27(0)	부		4.00		4.00	20,000,000		
합계										88.00	73.00	15.00	430,000,000		

3

사원별 월별정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합계	청년외
												12	12

(다) [서식별(참고사항)]

[과세연도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후 [1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의 [서식별(참고사항)] 탭에서 세액공제별 적용될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범위의 차이에 따라 각각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청년등 : 청년+장애+60세)

② 중소기업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청년등 : 청년+경력단절)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근로자 고용현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군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정기** 7777 (주)고용증대 12기 2023-01-01-2023-12-31 무기간 2023 연시 2023

F3 전년도복무기간불러오기 F3 전년도불러오기 F4 인쇄옵션 F7 엑셀자료출리기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공제구분 2.고용증대,사회보험료 청년의제적용 2023

과세연도별 **서식별(참고사항)** 고용증대추징세액(참고사항)

1.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청년등: 청년+장애+60세)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	7.38	4.08	3.25
직전과세연도	8.5	3.66	4.83
증감	-1.17	0.42	-1.58

2.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청년등: 청년+경력단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	7.38	3.08	4.25
직전과세연도	8.5	3.75	4.75
증감	-1.17	-0.67	-0.5

■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 수 계산

추가납부세액에 의한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이였으면 이후 과세 연도에도 나이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으로 보고 감소인원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후관리에서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청년의제] 적용은 사후 관리와 관련된 청년수 계산 적용하는 기능으로서 2021년 청년이었던 사람은 2023년에도 청년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된다.

- ① [청년의제적용] 체크 후 연도를 2021년으로 입력하면 2021년에 청년이었던 사람은 2022년과 2023년에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된다. 그러므로 2022년 세액공제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계산시에는 [청년의제적용] 체크 후 연도를 2022년으로 입력하여 다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사원별 상시근로 7777 (주)고용증대 12기 2023-01-01-2023-12-31 무기간 2023 연시 2023

F3 전년도복무기간불러오기 F3 전년도불러오기 F4 인쇄옵션 F7 엑셀자료출리기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공제구분 2.고용증대,사회보험료 청년의제적용 2023

2 사원별 상시근로 공제구분 2.고용증대,사회보험료 청년의제적용 2021

사원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	퇴사일	상시구분	복무월수	나이()	청년여부	기타우대	상시근로자수			급여	
										합계	청년등	청년외	지급총액	비과세
101	김대표	1 680714-1111111	2018-05-07		대표자/임원		54(0)					120,000,000		
104	최사원	1 790512-2222222	2020-09-05	2022-11-30	상시근로자		43(0)	부		11.00	11.00	29,000,000		
105	문면제	1 910501-1111111	2020-05-06		상시근로자		31(0)	부		12.00	12.00	35,000,000		
106	김경력	1 840502-2222222	2021-04-18		상시근로자		38(0)	부		12.00	12.00	40,000,000		

사원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	퇴사일	상시구분	복무월수	나이()	청년여부	기타우대	상시근로자수			급여	
										합계	청년등	청년외	지급총액	비과세
101	김대표	1 680714-1111111	2018-05-07		대표자/임원		53(0)					120,000,000		
105	문면제	1 910501-1111111	2020-05-06		상시근로자		30(0)	여		12.00	4.00	8.00	45,000,000	
106	김경력	1 840502-2222222	2021-04-18		상시근로자		37(0)	부	경력단절	12.00		12.00	45,000,000	

2) 세무사랑Pro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산서 작성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산서]를 작성한다.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2차년도 이후 요건 및 공제액 계산] 탭 순서로 작성한다.

- ① 1차년도 세액공제(2023년) = 0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3년 고용증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산서 **설정** 7777 (주)고용증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F3 신고일 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2차년도 이후 요건 및 공제액 계산

1. 신청인

(1)법인명(상호)	(주)고용증대	(2)사업자등록번호	119-
(3)대표자명	김대표	(4)생년월일	1968-07-14
(5)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전화번호	02 - 2222 - 2222

2. 과세년도

과세년도	2023	년	01	월	01	일 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	------	---	----	---	----	------	------	---	----	---	----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8)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6)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7.33	(7)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8.49	(8)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6)-(7)) -1.16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9)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4.08	(10)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3.66	(11)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9)-(10)) 0.42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12)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3.25	(13)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4.83	(14)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12)-(13)) -1.58

(나) [2차년도 이후 요건 및 공제액 계산]를 작성한다.

[2차년도 세제지원]을 받는 경우 [2차년도 요건 및 공제액 계산] 탭에서 관련 고용증가인원 정보를 반영한다.

[3차년도 세제지원]을 받는 경우 [3차년도 요건 및 공제액 계산] 탭에서 관련 고용증가인원 정보를 반영한다.

고용중대기업예비한공제세액계산서 [장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무가세 2023

F3 신고일 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2차년도 이후 요건 및 공제액 계산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18) ≥ 0

1.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16)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7)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8)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16)-(17))	
7.33		3.49		-1.16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9)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0)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1)2차년도 세액공제액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 중견기업만 해당) : (24) ≥ 0

1.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22)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3)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4)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22)-(23))	
7.33		3.49		0.84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25)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6)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7)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1,870,000	12,250,000	14,120,000

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등이 감소하여 2020년에 2차년도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30) ≥ 0

1. 상시근로자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28)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29)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2022년)	(30)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31)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2)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3)세액 공제액(유예 적용분)

4.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15) + 2차년도 세액공제액(21) + 3차년도 세액공제액(27) + 유예적용분 세액공제액(33)	14,120,000
---	------------

3) [세무사랑Pro]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먼저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에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상시근로자 중에서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근로자고용현황]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 ① [다. 사회보험료율] 계산할때는 [F7 사회보험료율] 및 [F8 고용보험료율]을 참고할 수 있으나 [(20)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회사에서 업종별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14)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31)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란에는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입력한다. 실무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받았을 때 반영하면 된다.
- ③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만약 1차년도의 고용인원 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도 직전년도 지원받는 세액공제액을 다시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정기 7777 (주)고용증대 법인 12기 2023-01-01~202

☒ 담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CF 전체삭제 F6 공제세액세율 F7 사회보험료율 F8 고용보험료율 F11 저장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가. 고용증가 인원계산

(8)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9)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10)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8-9, 10<=25)
7.33	8.49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1)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따른 총 급여액	(12)해당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8))	(13)사회보험료율 (=21))	(14)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15)사회보험료부담금 ((11)/(12)×(13)-(14))
310,000,000	7.33	9.5800000		4,051,568

다. 사회보험료율

(16)국민건강보험	(17)장기요양보험	(18)국민연금	(19)고용보험	(20)산업재해보상보험	(21)계((16)+(17)+(18)+(19)+(20))
3.230	0.2700000	4.50	0.90	0.6800	9.5800000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23)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4)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5)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23)-(24))	(26)증가한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10))	(27)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 근로자 수((25)-(26))
4.25	4.74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28)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따른 총 급여액	(29)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3)-(8))	(30)사회보험료율 (=21))	(31)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32)사회보험료부담금 ((28)/(29)×(30)-(31))
150,000,000		9.5800000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35) >= 0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3)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34)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35)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3) - (34))
7.33	8.49	-1.16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 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36)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여	여			

(37)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6) + 2차년도 세액공제액(36)

4) 세무사랑Pro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세액공제신청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세액공제 계산내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에 대하여 입력한다. [14인건비 지급액]란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입력한다.

① [16.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선택한다.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세액공제신청서 **정기**

7777 (주)고용중대 | 연월 12기 2023-01-01-2023-12-31 | 부기세 2023 | 연사 2023

C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주)고용중대	②사업자등록번호	119-
신청인 ③대표자명	김대표	④생년월일	1968-07-14
⑤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대로	전화번호	02 - 2222 - 2222

2. 과세연도

과세연도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	------	---	---	---	---	-----	------	---	----	---	----	-----

3.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No	⑥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⑦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⑧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 여부 (혼인설,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1	김경력 840502-2222222	여	여	부
2				

나.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No	⑩종전 입사일자	⑪종전 퇴직일자	⑫재입사 일자	⑬퇴직한날부터 2년이상 15년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⑭인건비 지급액	16. 공제율	17. 세액공제금액
1	2010-04-01	2018-12-31	2021-04-18	여	45,000,000	30%	13,500,000
2							
합계					45,000,000		

신고일 2024 년 4 월 1 일 | 서초 | 세무서장 귀하

5) 세무사랑Pro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가) [1.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작성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된 내역을 [F12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정기**

7777 (주)고용중대 | 연월 12기 2023-01-01-2023-12-31 | 부기세 2023 | 연사 2023

F3 조정등록 F4 계산내역 CF5 전체삭제 F6 회계배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액
		투자액	공제율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1(2,3,5,10)/10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기한 15일 이내 지급 15% 30일 ~ 60일 지급 30%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세액공제	출연금 × 10/100		
형편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탈산준비 세액공제	장부가액 × (3/100)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19.1.1. 이후 투자		
고용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기증자산 시가 × 1		
신설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7.1.1. 이후: 발생 또는 직전 발생액의 '18. 1. 1. 이후: 발생 또는 직전 발생액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신설장·원천기술 '17. 1. 1. 이후: 발생 또는 직전 발생액의		
국가연구개발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가연구개발을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 30/4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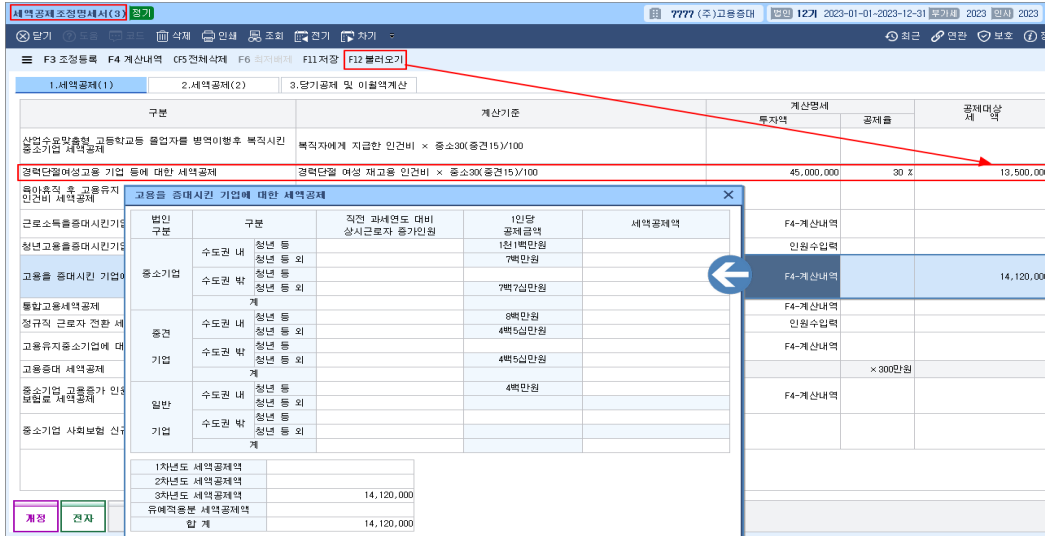
Check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4. 중소기업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5.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6. 산업수요맞춤형고등교육 졸업자 특직중소기업세액공제
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9. 근로소득을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 고용률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 신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 통합투자세액공제
13. 통합중세액공제

위 항목의 데이터를 서식별로 불러옵니다.
해당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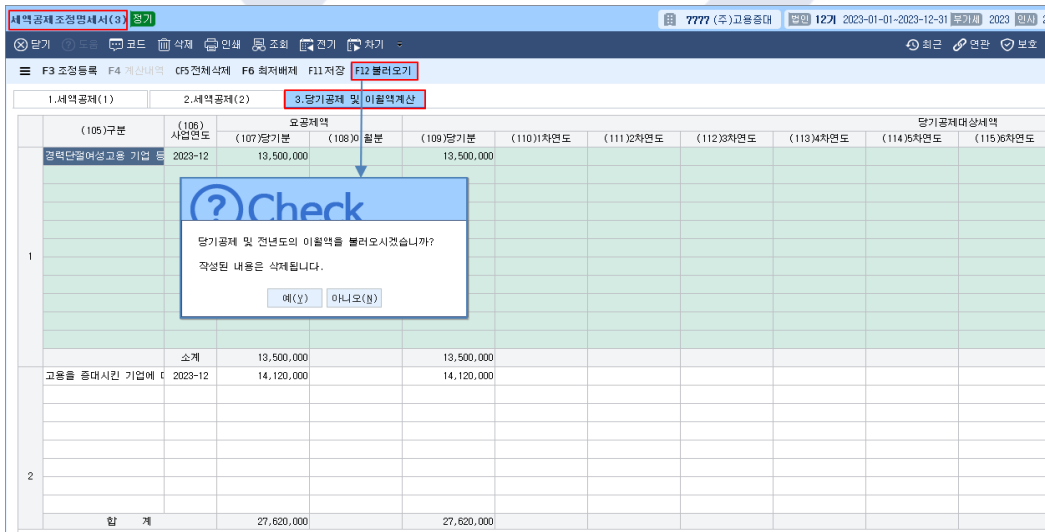
예(Y) | 아니요(N)

[1.세액공제(1)]과 [2.세액공제(2)]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찾아 직접 세액공제액 등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며 세부내역이 필요한 경우 [F4-계산내역]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계산한다.



(나)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작성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3.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에서 당기 세액공제액의 당기공제액, 최저한세 적용배제되는 금액, 전기이월세액공제액의 당기공제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한다.



6) [세무사랑Pro] 통합고용세액공제공제계산서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공제계산서]를 작성한다.

(가)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

- ① [공제구분]에서 [통합고용]을 선택한다.
- ② [불러오기]한 후 [사원별 상시근로]에서 [상시구분], [복무월수], [청년여부], [기타 우대]에 대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의 나이가 34세까지 인정되므로 32세인 근로자도 청년으로 인식한다.

[illegible]

[서식별(참고사항)]에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한다.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역계산용)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무기세 2023
인사 2023

닫기
도움말
코드
조회
인쇄
조회
정기
차기
최근
연관
보호
인

F3 전년도복무기간불러오기
F3 전년도불러오기
F4 인쇄출력
F7 역불자료불러오기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공제구분
1. 통합고용
청년외제적용
2023

과세연도별
서식별(참고사항)
고용종대추징세액(참고사항)

1. 통합고용세역공제 (청년등: 청년+장애+60세+경력단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청년등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	7.66	4.76	2.91
직전과세연도	8.5	4.66	3.83
증감	-0.84	0.09	-0.92

7) [세무사랑Pro] 통합고용세액공제공제계산서

(가) [상시근로자현황]

- ① [F12블러오기]
- ② [기업구분]에서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일반기업 중에서 선택한다. [수도권여부]에서 1.수도권 2.수도권밖 을 선택한다.
- ③ 상시근로현황을 입력한다.
- ④ 세액공제액은 전체 서식이 입력된 후에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이 자동입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사 2023

F4 신고일 CR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블러오기 1

상시근로자 현황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2차/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

1 신청인

신청인	(1)법인명(상호)	(주)고용중대	(2)사업자등록번호	119-
	(3)대표자명	김대표	(4)생년월일	1968-07-14
	(5)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로	전화번호	02 - 2222 - 2222

2 과세연도

과세연도	2023-01-01	~	2023-12-31
------	------------	---	------------

3 상시근로자현황 2

기업구분	1.중소기업	수도권여부	1.수도권
------	--------	-------	-------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6) 상시근로자 수((7)-(8))		8.49	7.33
(7)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		4.66	6.08
(8)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수		3.83	1.25
(9)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10) 육아휴직 복귀자 수			

6 세액공제액 4

세액공제액 : (20)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6)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2) 3차년도 세액공제액 + (33)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전자 기업구분 :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일반기업

(나)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1차년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 입력한다.

- ① 1차년도 세액공제(2023년) =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3년 고용증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정기

7777 (주)고용중대 연인 12기 2023-01-01-2023-12-31 무기세 2023 연시 2023

☑ 달기 ☑ 도록 ☑ 코드 ☑ 국가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최근 연한 보호 정보

F4 신고일 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상시근로자 현황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2차/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

4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액지원 요건 : (13) > 0)

1.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1) 해당 과세연도	(12) 직전 과세연도	(13) 증가 인원 수((11)-(12))
	7.33	8.49	-1.16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4) 해당 과세연도	(15) 직전 과세연도	(16) 증가 인원 수((14)-(15))
	6.08	4.66	1.42
3.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7) 해당 과세연도	(18) 직전 과세연도	(19) 증가 인원 수((17)-(18))
	1.25	3.83	-2.58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상시한도)	1인당공제금액	(20)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6.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이자상당가산액계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세액공제 감면제도는 조세의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부담의 직·간접적 경감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시에는 증가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되고 다음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제하여 2년간 공제 대상이 되며 설령 다음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였어도 추가공제는 못받지만 고용중대 세액공제처럼 추가납부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인원이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상당액 가산은 없다.

이자상당가산액 = 세액공제액 상당액 × 기간 × 22/100,00

* 기간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의 [133.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1) [세무사랑Pro] 추가납부세액계산서

2023년 세액공제 계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 대비	2022 대비	2021년 3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1차연도
상시	4.57	6.49	8.49	7.33	0.84	-1.16		0	0
청년 등	1.66	1.83	3.66	4.08	2.25	0.42	추가 공제	0	0
청년 외	2.91	4.66	4.83	3.25	-1.41	-1.58	추가 공제	추가 납부	0

① 2023년 상시근로자가 2022년에 비하여 1.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2년 고용증가 세액 공제 중 고용감소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가납부함
 추가납부세액 = 1.16 × 7,000,000 = 8,120,000

(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고용감소로 2022년 공제받은 세액 중에 고용감소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추가납부세액합계표 (6)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무개세 2023

CF5전체세액 F11저장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구 분	2.소득상입 연도	3.구분명	4.구분	5.차감계 (3-4)	6.법인세 상환액	7.이.률 (일변)	8.기 간	9.법인세추가 납부액(6×7×8)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중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고용중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직접 입력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0.구 분	11.소득공제 연도	12.구분명	13.구분	14.법인세 상환액	15.이.률 (일변)	16.기 간	17.금 액 (14×15×16)	18.법인세 추가납부액 (14+17)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중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고용중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직접 입력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9.구 분	20.공제감면 연도	21.추가납부 사유	22.공제감면 세액	23.이.률 (일변)	24.기 간	25.금 액 (22×23×24)	26.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고용중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2022	상시근로자 수 감소	8,120,000	3/10,000			8,120,000
계			8,120,000				8,120,000

(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반영한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무개세 2023

F3조정등록 CF5전체세액 F8간역조회 F11저장 F12불러오기

회차한세배제세액감면 회차한세배제세액공제 회차한세액용세액감면 회차한세액용세액공제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상입 손금상입

①구 분	②구분명	③구분	④코드	⑤금 액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⑥「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601	
(102)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604	
(104)기업합병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형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105)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0	
(106)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		62R	
⑦구 분	⑧구분명	⑨코드	⑩이월과세납부세액	
(176)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177)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78)정통조합법인에 한물물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 제7항		66A	
(179)농업회사법인에 한물물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 제9항		66B	
(180)합 계			667	
⑪구 분	⑫구분명	⑬코드	⑭대 상 금 액	⑮세 액
(181)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82)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3		8,120,000
(184)기 타		775		
(185)소 계		780		8,120,000
(186)가공제 환원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9항	781		
(187)업무무관통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188)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9항	783		
(189)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9항	786		
(190)기 타		785		
(191)소 계		784		
(195)추가납부세액 합계((185) + (191))		790		8,120,000

농특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

☒ 달기 ☒ 동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평가 ☒ 차기

☰ CF5 전체 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항 목	농어촌특별세	작성방법
(7) 과 세 표 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⑩ 또는 ⑪ 소계 란 중 ⑫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8) 산 출 세 액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⑩ 또는 ⑪ 소계 란 중 ⑬ 세액을 입력합니다.
(9) 가 산 세 액	미 납 세 액	
	미 납 일 수	
	가 산 세 액	
(10) 출 부 담 세 액		⑬ 산출세액 + ⑭ 가산세액
(11) 기 납 부 세 액	1,624,000	
(1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624,000	⑬ 출부담세액 - ⑭ 기납부세액
(13) 분 납 할 세 액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농특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14) 차 감 납 부 세 액	-1,624,000	⑬ 차감납부할 세액 - ⑭ 분납할 세액
(15) 출 당 후 납 부 세 액	-1,624,000	⑬ 차감납부 세액 - 출당할 농어촌특별세
(16) 국세환급금 출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출당할농어촌특별세	

7.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1) 외국투자기업의 감면세액계산서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세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신고영업과 신고외영업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2023 2023 2023

☒ 달기 ☒ 동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평가 ☒ 차기

☰ CF5 전체 삭제 F11 저장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항 및 제121조의4제1항) (단위: 원)

1-1.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항 및 제121조의4제1항)

1. 투자 원주 당초	2. 감면대상사업	3. 비감면사업	4. 계	5. 산출세액	6. 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2/4)	7. 감면비율 (35)	8. 감면세액 (5/6*7)
합계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9. 투자 원주 당초	10.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금액 비감면사업	11. 10과 직접관련사업	12. 기타사업	13. 계	14. 산출세액	15. 감면대상사업 소득비율 (10/(10+11))	16. 감면대상 소득비율 15*80% 경우 [(10+11)/13]	17. 감면비율 (35)	18. 감면세액 (14/16*17)
합계										

2. 공제비율의 계산 (단위: 원)

19. 투자 원주 당초	20. 구분	21. 투자 종류별자 자본금	22. 통틀 일차	23. 총액	24. 외국투자기 자본금	25. 감면비율 자본금	26. 해당 사업년도 감면비율	27. 감면대상 외국투자자자본금 (24*25/30%)	28. 해당사업 연도 또는 중기 감면사업 총자본금	29. 감면비율 (27/28)	30. 감면비율 (29/30)	31. 대여금차감 감면비율 (30/30)	32. 감면비율 (대여금비율)
합계													

3. 감면한도, 감면의 제한 및 달리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34. 투자 원주 당초	35. 외국 투자자 누계액	36. 외국 투자자 한도액	37. 투자기 한도액 (35/36)	38. 해당사업연도상시근로자수 나. 청년(20대이하) 60세이하(20~59세) 다. 기타 (1인만입)	39. 한도액	40. 외국투자 누계액(35)	41. 한도액	42. 고용기 한도액 (40/41)
합계								

3-2. 감면의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47. 종전사업의 사업종교정자산가액	48. 종전사업의 고정자산의 총가액	49. 종전 사업의 고정자산의 재사용비율(47/48)	50. 감면한 제한이 적용된 감면대상세액[(8+18)X(1-49)]	51. 달리감면세액 [Min(46, 50)]

8.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 의제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구분된다. 또한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제세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지를 선택한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정기 7777 (주)고용중대 법인 12기 20

☒ 닫기 ☑ 도움말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전기 차기

C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선택한 방법의 []에 Y표 합니다.)

[X] 예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원) 크게보기

No	(2)국가명	(2)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6)국가별 공제한도	(7)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8)이월배제액	(9)차기이월액
			(4)전기이월액	(5)당기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			
1	베트남	VN		25,000,000	14,000,000	14,000,000	11,000,000
	합 계			25,000,000	14,000,000	14,000,000	11,000,000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원)

구분	금액
(10) 매출원가 계상	
(1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12) 제조원가에 계상	
(13)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14)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10)+(11)+(12)+(13)+(14)]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에 Y표 합니다.)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1호]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2호]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원) 크게보기

No	(16)국가명	(2)국가 코드	(18)전기이월액	안분 기준	(21)국가별 안분비율(X)	(22)국가별안분 전기이월액 [(18)X(21)]
				(19)국가별 국외원천소득	(20)국가별 외국법인세액	
1						

②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반영한다.

국가별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7777 (주)고용용대	12기	2023-01-01-2023-12-31	2023	연말	2023
F3 차계산 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1) 국가명	베트남	(2) 국가코드	VN		
2. 공제한도계산							
(3) 국외원천소득에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구분		금액			
(4)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100,000,000			
(5) 국외원천소득에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 [(3) - (4)]				100,000,000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6)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7) 감면비율						
국외원천소득	(8)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 [(6) X (7)]						
	(9)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5) - (8)]			100,000,000			
(10) 기준 국외원천소득 (결손국가가 없는 경우<9>, 있는 경우 적성방법 참조)				100,000,000			
공제한도	(11) 산출세액			56,000,000			
	(12) 과세표준			400,000,000			
(13) 공제한도 [(11) X (10) / (12)]				14,000,000			
당기과세 대상세액	(14) 전기 이월액						
	(15)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25,000,000			
이월배제액	(16) 당기 공제대상 세액[(14) + (15)]			25,000,000			
	(17) 한도초과액[(15) - (13), 음수인 경우 영(0)]			11,000,000			
이월배제액	(18)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19)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17)과 (18) 중 작은 금액]			11,000,000			
(20) 전기 이월액[(16) - (13) - (19), 음수인 경우 영(0)]				11,000,000			
3. 공제세액계산		사업연도 추가					
(21) 사업 연도	(22) 당초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	(23) 전기 누계 공제액	(24) 당초 이월 배제액	(25) 당기 공제대상 세액 [(22)-(23)-(24)-(16)]	(26) 당기 공제 세액공제액 (합계 주(13))	(27) 이월배제액 (19)	(28) 전기이월액 [(25)-(26)-(27)]
당기 합계	25,000,000			25,000,000	14,000,000		11,000,000
				25,000,000	14,000,000		11,000,000

9.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개요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 ①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②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010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을 말한다. 다만, 위 (1) 2)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가)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의 비용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❶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10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❷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10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⑥ 아래 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 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세액공제 배제되는 비용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취소일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공제세액

다음의 아래 ‘1)’과 ‘2)’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아래 ‘㉠’의 비율과 ‘㉡’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0/100
 - ㉡ 중견기업 중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 25/100
 - ㉢ 그 밖의 경우 : 20/100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10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5/100)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1)’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래 ‘㉢’에 해당하는 금액

-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25/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③ 중소기업인 경우 : 25/100
- ④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5/100
 - ② 위 '①'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100
 - ③ 중견기업이 위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8/100
 -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2/100를 한도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50/100

(나)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times$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중견기업의 정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9.2.12. 후단신설).

- ㉠ 소비성서비스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7.2.7. 개정)
-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특 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Min(㉠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3, ㉡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 중 선택		
㉢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유예기간 경과 5년 이내 기업 포함)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중소기업) 15%(유예기간 경과 3년내) 10%(유예기간 경과 3년 이후 2년내)
㉡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으로 ㉢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	×	8%
㉣ ㉠, ㉡ 외의 기업(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 개발비	×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 1/2(2% 한도)
㉣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4)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안분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공통비용’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 ①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2019.3.20. 신설).
- ② 위 ①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 다음의 ㉠ 및 ㉡의 구분에 따른다(2019.3.20. 신설).
 -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① 외의 공통비용 ×	$\frac{\text{조특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text{조특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위 ① 외의 공통비용에서 위 ㉠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5) 공제신청 및 증거서류 작성·보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 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 9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조특령 9 ⑫).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

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7) 기타의 사항

- 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③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 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 ④ 관련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어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금액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한다.
- ⑥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
- ⑦ 2010년 이후 귀속 부터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조특법 제10조의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3년 이후 귀속분 부터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⁹⁾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⁹⁾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기관¹⁰⁾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¹¹⁾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나)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4)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품질관리등)에 관한 회사내자체교육비로서 바목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등 기관¹²⁾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 훈련비를 제외한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¹³⁾(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8)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9)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10)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 ④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9) [세무사랑Pro]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다음 자료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는 별도의 서식

- ⑥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⑪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1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 ①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 ③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 영 별표 4의 산업 ㉡ 광업 ㉢ 건설업
 - ㉣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 12)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등 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의미한다.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라.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마.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1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으로 구분하고 있다.

[3.연구소/전담부서 현황]란에 관련 정보와 [4.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에 당해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록한다.

1) 1.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① 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인건비 중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만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세무사랑Pro' system interface. The main menu at the top includes 'F3 입법법인', 'F5 전제세액', 'F6 신고일 및 인력사항',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and 'F12 주가정보'. The current screen is titled '해당연도연구개발비발생명세'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 Statement).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Expense Statement and Increase Calculation) and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Calculation of Increase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Section 1 contains a table for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 Statement) with columns for 'No.', '계정과목' (Account Name), '인건비' (Personnel), '자재연구개발비' (Materials for R&D), and '기타' (Other). The '인건비' column is further divided into '인원' (Personnel) and '기타' (Other). The '인원' column is further divided into '임금' (Wages) and '기타' (Other). The '기타' column is further divided into '건수' (Quantity) and '금액' (Amount). Section 2 contains a table for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Calculation of Increase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with columns for 'No.', '계정과목' (Account Name),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Outsourced and Joint R&D), '인력개발비'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11)총계' (Total). The '인력개발비' column is further divided into '건수' (Quantity) and '금액' (Amount). The '(11)총계' column is further divided into '건수' (Quantity) and '금액' (Amount). The table shows data for '경상연구개발비' (Gyeongnam R&D) with a total amount of 250,000,000. The '인력개발비' column shows a total amount of 250,000,000. The '(11)총계' column shows a total amount of 250,000,000. Section 2 also includes a table for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Calculation of Increase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with columns for 'No.', '계정과목' (Account Name), and '증가발생액' (Increase in Expense). The table shows data for '경상연구개발비' (Gyeongnam R&D) with a total increase of 40,000,000. The '증가발생액' column shows a total increase of 40,000,000.

② 2.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2) 2.공제세액

-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5년내, 중견기업, 일반기업 중에서 법인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을 입력한 후에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을 선택한다.
- ② [최저한세 설정]에서 [제외, 대상]의 선택은 [회사등록]의 [15.중소기업여부]에 입력된 기준으로 자동반영된다.

해당연도의일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7

☒ 달기 ☑ 도록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3 합병법인 C5 전체삭제 F6 신고일 및 인적사항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추가공제율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2. 공제세액 3. 연구소/연담부서 현황 4.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5. 연구과제총괄표

3 공제세액

해당 연도	중소기업	(22)대상금액(=11) 250,000,000	(23)공제율 25%			(24)공제세액 62,5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이후 5년내기업	(25)대상금액(=11)	(26)유예기간 종료연도	(27)유예기간 종료이후년차	(28)공제율	(29)공제세액
총발생금액	중견기업	(30)대상금액(=11)	(31)공제율 8%			(32)공제세액
	일반기업	(33)대상금액(=11)	(34)기본율	(35)추가	(36)계	(37)공제세액
증가발생금액 공제		(38)대상금액(=21) 40,000,000	(39)공제율 50%	(40)공제세액 20,000,000		※공제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40% 대 기업 : 25%

1 (4)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24과 40 중 선택)	62,5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이후 5년내 기업(29과 40 중 선택)	
중견기업(32과 40 중 선택)	
일반기업(37과 40 중 선택)	

2 ※ 최저한제 설정

☒ 제외
☐ 대상

3) 4. 해당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발생명세

해당연도의일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7 2023-01-01~2023-12-31 정기세 2023 연차세 2023

☒ 달기 ☑ 도록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3 합병법인 C5 전체삭제 F6 신고일 및 인적사항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추가공제율

1.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2. 공제세액 3. 연구소/연담부서 현황 4.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5. 연구과제총괄표

1 인건비 발생 명세

크게보기

No	①연구과제명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1	소프트웨어개발 A	김하나	1984-05-01	70,000,000	전담
2	소프트웨어개발 B	이두어	1987-12-31	60,000,000	전담
3	소프트웨어개발 A	정세어	1989-05-12	40,000,000	전담
합계				250,000,000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크게보기

No	②연구과제명	계	견본품 등 (별표6 1.가.2)	인건료 등 (별표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6 1.나)	기타 (별표6 1.다~사)
1						
합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크게보기

No	③연구과제명	상호 또는 성명	④연구개발비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금액	수탁기업 전담부서 등 수령여부
1							부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의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서식에 자동으
로 반영된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정기

0101 (주)세무사랑 18기 2023-01-01-2023-12-31 정기세 2023 연세 2023

F3 조정등록 F4 계산내역 F5 전체삭제 F6 최저배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액
		투자액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8.1.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F4-계산내역	62,500,00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1.1. 이후: 발생액×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7.1. 이후: 발생액×30(40)/1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F4-계산내역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에 세액공제별로 당기 공제분을 반영한다. 만약 공제받은
세액이 최저한세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저한세 계산시 제외될 수 있도록 [F6 최저배
제]를 선택하여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대
상과 제외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F6 최저배제]를 선택하는 것에 상관없이
최저한세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정기

0101 (주)세무사랑 18기 2023-01-01-2023-12-31 정기세 2023 연세 2023

F3 조정등록 F4 계산내역 F5 전체삭제 F6 최저배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105)구분		(106)사업연도	요공제액		(107)당기분	(108)이월분	(109)당기분	(110)이월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023-12	62,500,000			62,500,000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작성된 내용은 삭제됩니다.
예(Y) 아니오(N)

10.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는 앞서 계산된 세액공제·감면과 추가납부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과세이연의 내역을 집계한 표로서
작성한 각종 공제감면명세서와 공제감면추납세액계산서 등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에 반영된 내용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자동반영되며, 농어촌특별세와 관련된 내용은 농어촌특별세 계산시에도 반영되므로 세공공제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① [F1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와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한다.[F12 불러오기]로 반영된 세액공제 감면내역을 확인한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0101 (주)세무사					
F3 고정등록 F5 전제세액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최저한세배세액감면 최저한세배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구분	구분	코드	대상세액	감면(공제)세액	
(10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6조제7항 외	110			
(102)해외자원개발투자비용 감면	「조특법」 제22조	103			
최저한세배세액감면 최저한세배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구분	구분	코드	대상세액	감면(공제)세액	
(139)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조특법」 제104조의6	101			
(140)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141)신성장·환원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10조 제1호	16A			
(14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10조제1항제2호	100			
(143)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10조제3호	16B	62,500,000	62,500,000	
(144)통일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특법」 제100조의19 제4항	120			
(145)상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6	104			
(146)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6조의3	10B			
(147)통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32	10C			
(149)소 계		180	62,500,000	62,500,000	
(150)합 계((138) + (149))		110	62,500,000	62,500,000	
최저한세배세액감면 최저한세배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구분	구분	코드	대상세액	감면세액	
(15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 제6조제1~6항	111			
(152)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제2항	174			
(153)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제4항	13E			
(15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12	8,595,400	8,595,400	
(15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 제12조의2	179			

11. >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부분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세액공제신청을 강제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① [F12 불러오기] 하여 자동반영된 금액을 확인한다.
- ② [⑩대상세액]의 금액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입력한다.

- ③ [⑪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한다.

세액공제신청서 정기 7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분기세 2023

CF5 전체삭제 F6 구분조회 F7 과세면도 F8 신청일 F.1 F12 불러오기

구분	과거법령	코드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1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6항	131		15,450,000	15,450,000
(102)상생협력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2			
(103)재·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H			
(104)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6항	180			
(105)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106)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종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6항	18R			
(107)인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108)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0E			
(109)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H			
(110)인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111)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00			
(112)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62,500,000	62,500,000
(113)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114)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115)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116)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0E			
(117)소재·부품·장비 수급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118)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119)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120)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121)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X			
(122)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Y			
(123)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1			
(124)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125)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126)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127)근로복지공단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128)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129)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130)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131)인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132)생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133)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134)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2제6항	14S			
(135)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90%	13,500,000	13,500,000

12.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부분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이는 세액감면신청을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F12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② [⑦대상세액]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는다.

③ [⑧감면세액]은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는다.(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④ [⑨한도충족 감면세액]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정기

777 (주)세액공제 법인 12기 2023-01-01-2023-12-31 주가세 2023 연세 2023

☒ 달기 ☑ 도록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최근 ☑ 연관 ☑ 보호 ☑ 정보

☰ CF5 전체삭제 F6 구분조회 F7 과세연도 F8 신청일 F1 1 F12 불러오기 2 3

구분	근거법령	코드	⑧감면율	⑧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충족 감면세액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8항	110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8항	111				
(10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8항	174				
(10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8항	13E				
(1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2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06)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한도충족 감면세액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105)

구분	과세기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23) 합계	(24) 계월수	(25) 상시근로자수 (=(23)×(24))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해당 과세연도	2023.01 ~ 2023.12	7	7	7	7	8	8	8	8	8	8	8	8	8	92.00	12	7.66
직전 과세연도	2022.01 ~ 2022.12	5	7	7	10	10	10	9	9	9	9	9	9	8	102.00	12	8.50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28)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27)-(28))	(29)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28))
1억원	500만원	0.84	95,800,000

불러오기 확인(Tab) 취소(Esc)





법인조정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



제8장

법인조정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

1. > 세액계산및신고서-법인세과표 및 세액신고서

(1) 개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시는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①,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 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사랑Pro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법인이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회사등록] 입력된 자료에 의해 [(13) 법인구분]부터 [(51)성실신고확인 제출]란에 반영된다. 또한 외부조정 여부, 주식변동여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 서식의 제출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② 즉, [(23)주식변동]부터 [(51)성실신고확인 제출] 중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신고 기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26)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소급공제가 가능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F3 마감]을 통하여 작성된 서식의 적정성을 체크하고 전자신고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사 2023

F3 마감 (F3 해외투자장세 등 제출 F8 납부서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F1 수정신고작성방법)

(13)법인구분	1	1.내국	2.외국	3.외투	비율%	(14)조정구분	1	1.외부	2.자기
(15)종류별 구분	종소	중견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	2	1.여	2.부
영리 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7)신고구분	1	1.정기신고	2.가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	2.수정신고	1.서면분석
	기타법인	30	73	83	93		3	3.기한후신고	2.기타
비영리법인		60	74	84	94	(11)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19)결산확정일	2024-03-15	(20)신고일	2024-04-01	(18)법인유형별구분	100				
(22)신고기한연장승인		1.신청일	----	2.연장기한	----				

구분	여/부	구분	여/부
(23)주식변동	1	(24)장부전산화	1
(25)사업연도외제	2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2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서제출	2	(28)재고자산통평가량법인세 신고서 제출	2
(29)기동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2	(30)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원단위)	2
(31)통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2	(32)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2
(47)기동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48)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2
(49)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		

구분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33)수입금액		1,970, 85,000		
(34)과세표준	237,000,000			
(35)산출세액	25,030,000			25,030,000
(36)총부담세액	15,560,000			15,560,000
(37)납부세액	5,000,000			5,000,000
(38)차감납부할세액	10,560,000			10,560,000
(39)납부할세액				
(40)차감납부세액				10,560,000

(41)조정번호 1.서출청 - 1083 (42)조정관리번호 p - 0000-5 (43)조정작성명 미조정 사업자등록번호 102-02-002022 02 - 2532 - 5210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44)예입처 (45)예금종류 (46)계좌번호

2. > 원천납부세액조정명세서(갑, 을)

법인이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이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기납부세액으로 당해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 법인은 [원천납부명세서(갑)(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내역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에 작성하고, 채권 및 수익증권에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내역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에 작성한다.

(1) [이자수입]계정과 [선납세금]계정의 일반전표입력 메뉴 입력시 주의사항

- ① [F8 수정] 을 선택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적요등록을 하면 편리하다
- ② 일반전표입력 시 [이자수입]계정과 [선납세금]계정은 전표번호가 같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여야 [원천납부명세서(갑)(을)]에 자동 반영된다.

(2)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확인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을 [거래처등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지방소득세납세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등에 반영된다.

1. 계좌번호	112-2536252		
2. 계좌개설은행/지점	001	한국은행	
3. 계좌개설일	2023-01-01		
4. 예금종류 / 만기	예금종류	만기	
5. 이자율/매월납입액	이자율	매월납입액	
6. 당좌한도액			
7. 은행사업자번호	120-11-76794	8. 사업용계좌	부 0: 부 1: 여
9. 전화번호 / 팩스	TEL	FAX	
10. 거래처분류명			
11. 주소			
12. 비고			
13. 지방소득세납세지	1156011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4. 사용여부	여 0: 부 1: 여		

(3) [세무사랑Pro] 원천징수납부명세서

① [F12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이자수입]계정과 [선납세금]계정이 하나의 전표로 입력되었다면 자동반영 된다.

② [F12 불러오기]를 하면 선납세금 중 [법인세원천세액]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반영된다. 지방소득세는 삭제하여야 하므로 왼쪽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지방소득세만 정렬되므로 확인하고 삭제하면 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④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CF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7. 법인지방소득특별징수세액] 및 [지방세특별징수지]가 반영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지방세**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무가세 2023 연세 2023

CF5전체삭제 F7원장조회 F8잔액조회 F11저장 F12전표보러오기 **F12원천납부세액명세서보러오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병)

No	1.적요 (이자발생 사유)	2.원천(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자(주인)번호	상호(성명)	3.원천 징수월	4.이자금액	5.세율(%)	6.법인세	7.법인지방소득 특별징수세액	지방세 특별징수지
1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120-85-46063	대한세무서	6 30	10,000,000	14.00	1,400,000	14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120-85-46063	대한세무서	12 31	10,000,000	14.00	1,400,000	14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3. ➤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법인세법상 가산세 요약

법인세법상 중요한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요 건	내 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 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를 미 제출, 누락제출 하거나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식등 변동상 황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하거 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의 0.5%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 액(출자가액)의 1.0%(1개월이내 0.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5% ② 수입금액 × 0.02%
무신고가산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부당 ¹⁾ 무신고시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²⁾ × 40% ② 무신고수입금액 × 0.14%
	일반무신고시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무신고수입금액 × 0.07%

종 류	요 건	내 용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는 제외)	부당과소 및 환급신고시	Max[①, ②]	① 추가납부할 세액 × 4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0.14%
	일반과소 및 환급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 × 10%	
장부의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Max[①, ②]	① 결정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납부지연가산세	무납부, 미달납부, 초과환급한 경우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0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Min[①, ②]	
		①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 × 10%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 금명세서’ 규정 참고	미수취금액 × 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소정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 × 1% (3개월 내 제출시 0.5%, 일용: 0.125%)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불 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 × 0.25% (3개월 내 제출시 0.125%)	
계산서등 제출불성 실가산세	① 계산서의 미발급 위장·가공 발 급 및 수취	① 공급가액 × 1%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 제출	② 공급가액 × 0.5%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 제출	③ 공급가액 × 0.5%	
	④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제출 지 연제출	④ 공급가액 × 2%(종이계산서 발급과 지연발 급시 1%)	
	⑤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⑤ 공급가액 × 0.3%(익년 1.25까지 미전송 0.5%)	
기부금영수증발급 작성보관불성실가 산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 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2% ② 발급내역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등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가맹점 미가입한 경우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1% × 미가맹한 일수 ÷ 사업연도 일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등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 × 20%(7일내 발급시 10%)	

1) [부당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

(2) 중복적용 배제

- ①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③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은 부분은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의 감면

-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위의 '㉠' 및 '㉡'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극적 행위를 말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2) 무신고납부세액 = 과세표준신고로 인한 산출세액 - 세액의 감면공제 - 기납부세액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정신고 감면]

구 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9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75/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해당 가산세액의 75/100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국기법 48 ② (2)).

[기한후 신고감면]

구 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100

-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
- ㉡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

- 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㉔ 위 '②의 표 ㉔㉔㉔'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㉕ 위 '③'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4) 가산세 감면 신청 및 통지

- ①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㉑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㉒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위(3)①의 경우만 해당)
- ②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산세액계산서]

가산세 중 지출증빙미수취금액만 [불러오기]를 할 수 있고 다른 가산세는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코드	가산세액
지출증빙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미(누락)제출금액	10/1,000	9		
	불분명		10		
	미(누락)상증빙		61		
	82조 1 6		62		
	상증빙		67		
	82조 3 4		68		
	미(누락)상증빙		96		
	82조 3 4		97		
명세서	제 75의 70X 일종근로		102		
	법인세법		103		
	제 75의 70X 간이지급명세서				
	미(누락)상증빙	25/10,000			
	불분명	25/10,000			

4.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1) 개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법상의 자기자본액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청산소득등의 계산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서식의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에서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의 원인인 세무상 이월결손금결에 대한 발생 및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정의 처분사항 중 유보처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손금산입 익금산입되어 소멸되는 금액이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표로서 세무조정에서 최초로 유보처분 시킬 때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다음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시 다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1)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인 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서 발생한지 15년 (2020년이전 신고분에서 발생된 경우 10년) 이내의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이미 공제되었거나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1년간 소급하여 공제 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월결손금 공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³⁾

구분		공제 방법	비고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15년 이내 (2020년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10년)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 자산수증익 등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계산서 :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 기입	발생연도 제한 없음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공제한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계산상 감소하는 경우	각종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	15년 이내 (2020년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10년)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6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제외법인(100%공제) : 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중인법인, 관련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이행중인 법인(2020부터)
2018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70%	
2019년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	
2023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이익인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액은 이월결손금(발생연도 제한 없음)에 보전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는 2020년 이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3)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요항목별 유보처분 및 추인 사례

과목	추인되는 시점 및 요건
재고자산평가감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감가충당금한도초과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상각부인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 - 당해 자산을 양도, 폐기 할 경우
퇴직충당금한도초과액	- 대규모의 퇴직. 중간정산등으로 인하여 세무상 용인된 퇴직충당금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시 -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의 수령 및 해약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시
퇴직연금 예치금	퇴직연금의 해약, 퇴직발생으로 인한 수령시
각종 평가 부인액	- 매매, 처분, 폐기 시 - 평가이익을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후 이후 평가손실 발생시
건설자금이자	- 감가상각 자산은 건설이 완료된 때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손금추인하고, 일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에 반영한다.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시
선급 비용	기간의 경과시
수입 이자	세법상 수입시기인 수입이자가 실제 발생하여 입금되었거나 세법 상 수입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준비금의 손금산입	준비금의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연도별로 익금 산입하거나 또는 미사용액의 일시 환입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시
외화환산손익	당해 외화자산의 처분 및 환전, 부채의 상환시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각종 부당금, 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세등을 수익적 지출인 제세 공과금등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상 (9) 자본적 지출에 기재하여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을 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 한도 초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게 된다.

5) [세무사랑Pro]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다음의 자본변동표를 보고 당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를 작성하시오.

자본변동표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손 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3.1.1.	100,000,000	12,000,000			36,000,000	148,000,000
유상증자	50,000,000	10,000,000				60,000,000
당기순이익					40,000,000	70,000,000
2023.12.31	150,000,000	22,000,000			76,000,000	248,000,000

세무조정결과 소득금액 증가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법인세 등:

550,000(법인지방소득세 포함)

당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20,000,000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발생연도	이월결손금	기공제분	잔 액
2011년	40,000,000	35,000,000	5,000,000
2016년	50,000,000		50,000,000

(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② 기초잔액]은 [F12 불러오기]를 하여, 전기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기말 잔액을 반영한다.

[당기 중 증감]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유보소득처분내역이 반영된다. 자동으로 반영된 [② 기초잔액]과 [당기 중 증감]의 관련내용이 각각 자동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유보사항과 연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분기제 2023 연제 2023

F3 조정등록 CF5 견제삭제 F6 직접입력 SF6 형 아래로 삽입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

1.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 증감		기말잔액 (=②-③+④)	비고
		감 소	증 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000,000		500,000	3,500,000	
건설자금이자	9,000,000		30,000,000	-22,000,000	
미수이자	-500,000		-500,000	-600,000	
회계급여충당금한도초과	60,000,000		10,000,000	120,000,000	
업무충충차감가상각비한도초과	9,500,000		9,500,000	19,00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0,000			5,000,000	
회계연금등순금산입	-30,000,000	-7,000,000	-50,000,000	-73,000,000	
홍사미수금과소			4,000,000	4,000,000	
재고자산평가감			2,000,000	2,000,000	
선급비용(보통료)과대계상			-8,000,000	-8,000,000	
합 계	56,000,000	33,000,000	26,900,000	49,900,000	

(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 [F12 불러오기]

재무상태표상 기초 및 기말자본계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입력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5. 이익잉여금]

기초잔액과 기중의 증감을 입력하여 기말잔액이 서로 일치하게 입력한다. 처분 전 이익잉여금 기말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8. 법인세]와 [9. 지방소득세]

세무조정결과 소득금액 증가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법인세 등으로 손익계산서 상 계상된 법인세등 비용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입력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분기제 2023 연제 2023

닫기도움코드로삭제입력조회조회전기차기

F3 조정등록 F5 견제삭제 F6 직접입력 SF6 형 아래로 삽입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증 감 합		⑥기 말 잔 액 (=②-③+④)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 잉여금의 계산	1.자 본 금	01	100,000,000		150,000,000	
	2.자 본 잉 여 금	02	12,000,000		22,000,000	
	3.자 본 조 정	15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이 익 잉 여 금	14	36,000,000		76,000,000	
	12.기타	17				
	6.계	20	148,000,000		100,000,000	248,000,000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총)계 + (병)계	21	56,000,000	33,000,000	26,900,000	49,900,00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8.법 인 세	22		500,000	500,000	
	9.지 방 소 득 세	23		50,000	50,000	
	10. 계 (8+9)	30		550,000	550,000	
	11.차 가 갑 계 (6+7-10)	31	204,000,000	33,000,000	126,350,000	297,350,000

(다) [이월결손금 계산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여 증가 및 감소로 인한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멸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와 상관없이 기간경과분과 기간 내분을 발생연도별로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① [F12 불러오기]

자동으로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계산서내역이 반영된다.

② [(10) 소급공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감소된 결손금을 입력한다. 이월결손금 잔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13) 당기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입력한다.

구 분	한 도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00%
중소기업 외의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8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과 세 표 준 계 산	108.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108=107)		120,000,000
	109. 이 월 결 손 금	07	50,000,000
	110. 비 과 세 소 득	08	
	111. 소 득 공 제	09	
	112. 과 세 표 준 (108-109-110-111)	10	70,000,000
	159. 선 박 표 준 이 익	55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서 당기공제액이 자동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에 당기공제 이월결손금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기이후 이월결손금 공제시 이중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14) 보전]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을 입력하며,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보전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7기 2023-01-01~2023-12-31 주거래 2023 원시 2023

F3 조정등록 F5 전체삭제 F6 직접입력 F8 탭 아래로 삽입 F8 잔액조회 F12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합) 이월결손금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종감내액

(6) 사업연도	발생액			(10) 소급공제	(11) 차감계	(12) 기공제액	감 소 내 액		잔 액				
	(7) 계	(8) 일반 결손금	(9) 배·분 안도조과 결손금((9)-(25))				(13) 당기 공제액	(14) 보 전	(15) 계	(16) 기한 내	(17) 기한 경과	(18) 계	
2011-12-31	40,000,000	40,000,000			40,000,000	35,000,000			35,000,000			5,000,000	5,000,000
2018-12-31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계	90,000,000	90,000,000			90,000,000	35,000,000	50,000,000		35,000,000			5,000,000	5,000,000

5.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중복적용으로 인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에 달할 때까지 조세감면의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이다.

9%,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세액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 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 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배제를 하며 정부가 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제한다.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② 세액공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공제를 배제하고 동일 조문에 의한 공제 중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을 배제한다.

③ 세액감면

④ 비과세,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이 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에 해당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57)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 58)

③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중 감면을 100% 적용받는 경우와 조특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세액감면

④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조특법 63)

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 63의2 ②)

⑦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⑧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7)

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6)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⑫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11)

⑬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

(5) [세무사랑Pro]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사례

(주)세무사랑(비상장 중소기업임)의 2023사업연도(2023. 1. 1.~2023. 12. 31.)에 대한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단, 법인세율은 2 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분은 19%로, 200억 원 초과분은 21%로, 3천억 원 초과분은 24%로, 최저한 세율은 7%로 가정한다.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과정〉

당기순이익		235,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3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9,000,0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27,000,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47,000,000
이월결손금		(10,000,000)
과세표준		237,000,000
산출세액		25,030,00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2,020,00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	11,792,000
총부담세액		10,218,000
가산세		100,00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2,000,000
	원천납부세액	3,000,000
차가감납부세액		5,318,000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1)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

① [② 감면후세액]

[F12 불러오기]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한다.

② [③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조세감면 등을 직접 입력하면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③ [④ 조정감]

[② 감면후세액]의 [(125)차감세액]과 [③ 최저한세]의 [(122)산출세액]을 비교하여
 [⑤ 조정부 세액]의 [(125)차감세액]이 [③ 최저한세]의 [(122)산출세액]과 동일하도록
 [④ 조정감]란에서 세법에 의한 배제 순서대로 감면배제액이 자동 계산된다.

④ [F6 중소기업유예연차]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작성한다(중소기업이 규모초과,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등)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무기세 2023	인사 2023
F3 조정등록 F4 조정감순서 (F5전) ④ F6 중소기업유예연차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제정 F12 불러오기 (F12절대비)원단수조정						
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01	235,00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 금 산 입	02	39,000,000			
	(103)손 금 산 입	03	27,000,000			
(104) 조 정 후 소 득 액 (101+102-103)	04	247,000,000	247,000,000		247,000,00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 비 금	05				
	(106)특별상각,특별상각	06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247,000,000	247,000,000		247,000,000	
(1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1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 금 산 입	09					
(110) 각 사업 년 도 소 득 금 액 (107+108-109)	10	247,000,000	247,000,000		247,000,000	
(111) 이 월 결 손 금	11	10,000,000	10,000,000		10,000,000	
(112) 비 과 세 소 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임금불산입·손금산입	14		27,000,000			
(115) 차감 소 득 금 액(110-111-112+114)	15	237,000,000	264,000,000		237,000,000	
(116) 소 득 공 제	16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 득 공 제	17					
(118) 과 세 표 준 금 액(115+116+117)	18	237,000,000	264,000,000		237,000,000	
(119) 선 박 표 준 이 익	24					
(120) 과 세 표 준 금 액 (118+119)	25	237,000,000	264,000,000		237,000,000	
(121) 세 율	19	19 %	7 %		19 %	
(122) 산 출 세 액	20	25,030,000	18,480,000		25,030,000	
(123) 감 면 세 액	21					
(124) 세 액 공 제	22	11,792,000		3	5,242,000	6,550,000
(125) 차 감 세 액 (122-123-124)	23	13,238,000			18,480,000	

2)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재작성

감면세액조정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저한세 적용과정에서 배제된 감면 등의 금액을
 최저한세 적용배제 부분에 입력하여 최종적인 감면세액을 결정된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배제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멸되지만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 [세액공제조정
 명세서]를 통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3. 당기 공제 및 이월액 계산					
(116)7차연도	(117)8차연도	(118)9차연도	(119)10차연도	(120)계	(121)원제한세액중 해당분 미공제액	(122)기타사유 로 인한 미공제액	(123)공제세액 (120-121-122)	(124)소멸	(125)이월액 (107+108-123-124)
				1,000,000			1,000,000		
				11,792,000	5,242,000		6,550,000		5,242,000
				11,792,000	5,242,000		6,550,000		5,242,000
				12,792,000	5,242,000		7,550,000		5,242,000

3) 최저한세 적용으로 각종 서식을 재작성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22. 차감세액]이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⑥조정후세액]의 [(125)차감세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llegible]

6.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물(토지 등)의 범위

주택이나 별장 이외의 용도의 건물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한다.

- ①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 ② 비사업용 토지
- ③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 제도를 계속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률 제9673호 부칙 2 및 4, 2009.5.21, 2010.12.30 개정) 별도 법인세 추가과세는 보유기간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물신축용 내대지의 경우 취득후 5년간은 신축 유예기간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대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다면 보유기간중 전체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고, 양도한 사업연도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할 매매용 임야, 대지 등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이 된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안되어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추가 과세된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1) 원 칙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⁴⁾으로 한다.

양도소득 = 실지양도가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2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 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차손이라 하며 양도차손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법령 92의2 ⑨)

-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3) 적용세율 및 납부할 세액

1) 적용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구분	세율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미등기자산 40%	10%	20%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 40%	10%	1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2) 납부할 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상계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

- 4)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법법 55의2 ⑥ 단서)

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신고납부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같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무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5) 세무사랑Pro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은 [법인조정 - 과표및 세액계산 - 소득및과표계산]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에 직접 입력한다.

사례

(주)세무사랑은 제17기 사업연도(2023. 1. 1.~2023. 12. 31.) 중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2023년 2월에 모두 양도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세무사랑의 제15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중 "5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란을 작성하시오.

구분	주택 A	비사업용 토지	주택 B
양도가액	700,000,000원	1,000,000,000원	1,50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500,000,000원	800,000,000원
비고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원 시인부족액: 3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원 상각부인액: 40,000,000원

1. 위 부동산은 모두 양도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다.
2. 주택 B의 판매수수료는 3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3. 주택 A의 취득시기는 2011년 1월 1일이며,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의 취득시기는 2009년 1월이다.
4. (주)삼일은 중소기업(법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여부 판단

(1) 주택 A

2011년 1월 1일에 취득한 주택 A를 양도한 것이므로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대상이다.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법 부칙 (2009. 5. 21.))

(2)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

2009년 1월 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를 2023년 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다.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 취득가액 및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분	비사업용토지	주택B
양도가액	1,000,000,000	1,500,000,000
장부가액	500,000,000	740,000,000
양도소득	500,000,000	760,000,000

(*)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지 아니함(대법2010두28601, 2013. 5. 23.).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의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B의 양도소득에 각각 10% 및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구분	비사업용토지	주택 B	합계
양도소득	500,000,000	760,000,000	1,260,000,000
세율	10%	2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0	152,000,000	202,000,000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판매수수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illegible]

(6) 세무사랑Pro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서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제외하고 각종 조정명세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볼러오기]를 이용하여 자동 반영시킨 후 금액을 확인하고 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154. 분납할 세액]

분납할 세액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면 분납신청한 것으로 보며,

①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하고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결손금소급공제환급]란에 [여]로 표시함과 동시에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신청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경정등청구도 불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인세 2023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정기 ☞ 차기

≡ F3 마감 (F3 해외투자명세서 등록 F8 납부서인세 F11 저장 F12 불러오기 (F1 수정신고작성방법

(13)법인구분	1	1. 내국	2. 외국	3. 외투	비율%	(14)조정구분	1	1. 외부	2. 자기	
(15)종류별 구분	종소	종건	출자	그외	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	2	1. 여	2. 부	
영리 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7)신고구분	1	1. 정기신고	1. 서면분석 2. 기타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 수정신고		
	기타법인	30	73	83	93			3. 기한후신고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11)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19)결산확정일	2024-03-15		(20)신고일		2024-04-01	(18)법인유형별구분	100	기타		
(22)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					
구분	여/부		구분		여/부					
(23)주식변동	2	1. 여	2. 부	(24)감부전산화	1	1. 여	2. 부			
(25)사업연도외제	2	1. 여	2. 부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1. 여	2. 부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2	1. 여	2. 부	(28)재고자산동량기법법신고서 제출	2	1. 여	2. 부			

(2)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환급세액의 계산

다음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4) 세무사랑Pro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세액계산및신고서 -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

해당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300,000,0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작성하시오.

구분	2022년 사업연도	2023년사업연도
과세표준	250,000,000	△300,000,000
법인세율	10% 20%	9% 19%
산출세액	30,000,000	
공제감면세액	8,000,000	
결정세액(납부세액)	22,000,000	
소급공제결손금		170,000,000
차기이월공제결손금		130,000,000
환급받을 세액		22,000,000

과세표준	과표구간	산출세액	감면세액적용 산출세액 구간	과표구간	결손금소급액/ 감면과표
250,000,000	5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170,000,000
	200,000,000	20,000,000	12,000,000	120,000,000	
				8,000,000	80,000,000

①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전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에서 [⑭ 차감할 세액]과 [⑪ 공제감면세액]이 같도록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구분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감면이 없을 경우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액과 당기 결손금 중 적은 금액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text{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 \frac{\text{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text{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율}}$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CF5 전액삭제 F11 저장

1 소급공제법인세액

(1) 결손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2) 직전사업연도	2022-01-01 ~ 2022-12-31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6) 결손금액		300,000,000
	(7)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170,000,000
(4)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	(8) 과세표준		250,000,000
	(9) 직전연도세율(적용세율: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 2백억원초과 22%, 3천억원초과 25%)		20%
	(10) 산출세액		30,000,000
	(11) 공제감면세액		8,000,000
	(12) 차감세액((10)-(11))		22,000,000
(5) 환급신청세액계산	(13) 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13)=(10))		30,000,000
	(14) 차감할 세액(((8)-(7))세율)[((14)≥((10)-(12))]		8,000,000
	(15) 환급신청세액((13)-(14))X(15)≤(12))		22,000,000

2 국제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코드	은행	(본)저점
예금한 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일 : 2024 년 04 월 01 일

②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서식의 [이월결손금]에서 당기분 결손금과 소급공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정기세 2023 연세 2023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F3 조정등록 CF5 전액삭제 F6 직감인력 SF6 병 아래로 삽입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명)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종감내역

(6) 사업연도	발생액			감소내역					잔액			
	(7) 계	(8) 일반결손금	(9) 배분한도 초과결손금((9)-(25))	(10) 소급공제	(11) 차입계	(12) 기공제액	(13) 당기 공제액	(14) 보전	(15) 계	(16) 기간 내	(17) 기간 경과	(18) 계
2023-12-31	300,000,000	300,000,000		17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기한 경과	
계	300,000,000	300,000,000		17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8. > 지방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적용요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해당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잔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2)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세액=Min[(① - ②), ③]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② $\left(\begin{array}{cc} \text{직전사업연도의} & \text{해당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 \text{과세표준} & \text{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text{직전 사업연도의 세율}$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가 아닌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잔액도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이 차이가 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를 환급받는 것이 관리에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 포함)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3) 세무사랑Pro [소급공제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

- ① [F12 불러오기]하여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의 자료를 반영한다. 작성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와 동일하다. 다만, 지방세법은 [(13)공제감면세액]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산출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10)과세표준]금액 범위 안에서 [(9)소급공제대상 결손금액]을 신청한다.

소급공제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 지방세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

☒ 닫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최근

☰ CF5전체 삭제 F11저장 F12불러오기

1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6)결손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7)직전사업연도	2022-01-01 ~ 2022-12-31
결손사업연도	(8)결손금액		300,000,000
결손금액	(9)소급공제대상결손금액		170,000,000
직전사업연도	(10)과세표준		250,000,000
법인지방소득세액	(11)직전연도세율		2.0%
	(12)산출세액		3,000,000
계산	(13)공제감면세액		800,000
	(14)차감세액((12)-(13))		2,200,000
환급신청세액	(15)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15)=(12))		3,000,000
계산	(16)차감할세액(((10)-(9))세율)[(16)≥((12)-(14))]		800,000
	(17)환급신청세액(((15)-(16))×(17)≤(14))		2,200,000

2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코드	은행	(본)지점
예금한종류		계좌번호	

신고일 : 2024 년 04 월 30 일

9. > 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1) 개념정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⁵⁾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⁶⁾이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다음 중 선택하여 신고하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2)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text{중간예납세액} = \left(\begin{array}{c} \text{직전 사업연도의} \\ \text{법인세로서 확정된} \\ \text{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직전 사업연도의} \\ \text{감면세액 원천 징수세액} \\ \text{수시부과 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6}{\text{직전사업연도월수}}$$

5) 제외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산법인
- ② 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 등의 법인
-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분리과세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 ④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6)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text{중간예납세액} = \left[\left(\frac{\text{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등} \right) \times 12/6 \times \text{법인세율} \right] \times 6/12 \\ - \text{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은 할 수 있으나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직전년도실적기준으로 계산할 때 자동으로 직전사업연도월수가 12개월로 입력되므로 작성사업연도가 2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중에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직전사업연도월수는 12개월이 아닌 사업개시일부터 직접 계산하여 입력한다. 사업개시일은 설립연월일 또는 개업연월을 적용하면 된다.

(4) [세무사랑Pro]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1)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① [중간예납신고서]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을 적용할 경우 [F12볼러오기]를 통하여 전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반영한 후 작성한다.
- ② [직전사업연도월수]는 자동으로 12개월이 적용되므로 2기사업자는 사업연도 월수를 수정하여야 한다. 1기 사업연도의 법인세상당액을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

F3 마감 F5전체 삭제 F8 납부서인쇄 F. 1 F12 불러오기

구분 1 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2.해당 중간예납기간 종류별구분: 영리법인 1.중소기업

12.사업연도 2023.01.01 ~ 2023.06.30 13.직전 사업연도 월수 12 개월 14.예납기간 2023.01.01 ~ 2023.06.30

15.수입금액 16.신고일 2023.08.31 17.신고납부구분 1.정기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분		법인세
① 직전 사업연도	101.산출세액	01 50,000,000
	102.공제면세액	02 20,000,000
	103.가산세액	03 800,000
	104.확정세액(101 - 102 + 103)	04 30,800,000
	105.주시부과세액	05
	106.원천납부세액	06 500,000
	107.차감세액(104 - 105 - 106)	07 30,300,000
	108.중간예납세액(107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09 15,150,000
	109.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110.차감중간예납세액(108 - 109)	12 15,150,000
제63조의2	111.가산세액	13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2.2 / 10,000
	112.납부할세액계(110 + 111)	14 15,150,000
	113.분납세액	15 5,150,000
	114.납부세액(112 - 113)	16 10,000,000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 자기계산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신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참고서류와 함께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작성한다.





신고부속 기타서식



제9장

신고부속 기타서식

1.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개념정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신고 시 세액공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이 가능하며 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2)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면제
- ② 비과세, 소득공제
- ③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 아니다.

(3)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99의1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10의2)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13)
- §21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2)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3)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의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4)
- 영농영여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특법§66,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특법§68)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72 1 단, (1), (5), (8)은 제외)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4의81, 3)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6의6)
- 그 외 조특법§121의2에 대한 감면 등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위 조특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농특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

☒ 담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3 유형선택 CFS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일반법인

①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⑤세액
	구분	금액		
③일반법인	⑤ 법인세감면세액	70,000,000	20%	14,000,000
	⑥			
	⑦			
	⑧ 소계	70,000,000		14,000,000
⑨조합법인등	⑩ 법인세공제감면세액		20%	
	⑪			
	⑫ 소계			

③ 위의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내용을 반영한다. 분납세액은 법인세의 분납비율로 자동으로 분납세액이 적용된다.

농특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

☒ 담기 ☑ 도움말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CFS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항 목	농어촌특별세	작성방법
(7) 과 세 표 준	70,000,000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⑩ 또는 ⑫ 소계 란 중 ②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8) 산 출 세 액	14,000,000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⑩ 또는 ⑫ 소계 란 중 ⑤세액을 입력합니다.
(9) 가 산 세 액	미 납 세 액	
	미 납 일 수	
	가 산 세 액	
(10) 총 부 담 세 액	14,000,000	⑧산출세액 + ⑨가산세액
(11) 기 납 부 세 액		
(1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4,000,000	⑩총부담세액-⑪기납부세액
(13) 분 납 할 세 액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농특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14) 차 감 납 부 세 액	14,000,000	⑫차감납부할 세액-⑬분납할 세액
(15) 총 당 후 납 부 세 액	14,000,000	⑬ 차감납부 세액 -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16)국세환급금	환 급 법 인 세	
총 당 신 청	총당할농어촌특별세	

2.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 개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는 경우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법인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이나 보유주식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을 말하며, 무상균등감자로 인한 변동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설립신고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출의무 면제

- ① 상장법인(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 소액주주의 주식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 시가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연도중 변동이 있었을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가 아니면 제출대상이 된다.

②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 합자, 합명의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

: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및 출자자

③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유한, 합자, 합명)의 소액 출자자

: 출자 총액 500만원 이하의 소액 출자자

④ 법에 의한 각종 투자회사, 정비사업조합, 공공기관, 등

※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 명세서” 작성 시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하나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별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이 있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오류기재 등으로 불분명할 때 미제출 금액, 누락 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를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5) [세무사랑Pr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3.1.1.주주현황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박대한	9,000주	90%	
김민국	1,000주	10%	
합 계	10,000주	100%	

2023.7.1. 유상증자

신주2,000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주당 발행가액은 20,000원이었으며 해

당신주는 전액 김민국이 인수하였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박대한	9,000주	75%	
김민국	3,000주	25%	2023.7..1. 증자
합 계	12,000주	100%	

2023.8.1.

박대한이 300주를 ㈜만세에게 1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박대한	6,000주	50%	
김민국	3,000주	25%	
㈜만세	3,000주	25%	2023.8.1. 양수
합 계	12,000주	100%	

해당 과세연도 9.30에 상법에 의한 10%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취득한 자기주식전부를 이익소각하였다.

2023.10.15.(주)만세로부터 매매목적의 자기주식 1,000주 취득하였다.

- ① [자본금(출자금)변동 사항]을 입력한 후 ②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때 [지배주주와의 관계]와 기중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② [CF8전년도데이터]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전기 이전에 작성된 경우 [CF8전년도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기 서식의 정보를 반영하고, 당기에 변동내역은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란에 작성한다.
- ③ [1] 자본금(출자금)변동 사항의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처음 작성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주식수 또는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자본금(출자금)변동 사항의 [?]를 클릭하여 기본 정보를 먼저 등록한다.
- ④ [자본금(출자금)변동사항]의 [9원인코드]
상법에 의한 이익소각은 [9원인코드]란에 [10:이익소각(자본금변동없음)]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전산상 기말 자본금이 차감하여 표시되므로 이익소각전 금액으로 직접계산하여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연월 18기 2023-01-01-2023-12-31 회계연도 2023 연사 2023

F4 제출일자 F5 전체삭제 F7 전산매체출입값 S58 주주명부불러오기 F8 전년도불러오기 F8 데이터입력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예제 유의사항

1 2 3 4 5 1/5 번째 명세서 상정변경일 - - - - - 합병, 분할일 - - - - - 사업년도 2023-01-01 ~ 2023-12-31 신고방법 0 0: 전자, 1: 매체, 2: 신고인합

1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 ? 주권상장여부 3 1: 주권상장, 2: 코스닥, 3: 비상장 무액면주식발행여부 2 1: 예, 2: 부

2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의 차이내음

차	구	분	기	초	기	말	구	분	기	초	기	말
액	출주식수		10,000	주	9,800	주	출주식수		10,000	주	9,800	주
내	입력누계		10,000	주	9,800	주	1주당 액면가액		5,000	원	5,000	원
용	출주식수와의 차이			주		주	자본금		50,000,000	원	49,000,000	원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화면정렬: 구 분 순 지분종류개산 EXCEL자료로로드 EXCEL자료다운

No	성명(법인명)	구분	구 분	[1: 개인, 2: 우리사주]	등록번호	700	거주국 코드	KR	대한민국
1	박대환	2.개 인							
2	김민국	2.개 인							
3	(주)한세	3.열리법인							
4									

구 분	[1: 개인, 2: 우리사주]	등록번호	700	거주국 코드	KR	대한민국
주식수		9,000	주			
지분율		90 %				
지분율누계		100.00 %				

지배주주와의관계 00 본인

[주주 기타 인적사항(전자신고(매체)수록 사항 아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팩 스 - - - - -

4 주식발행방법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여부 1 1: 예, 2: 부 자기주식 수(주) 1,000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수 1,000

⑤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주식수의 변동이나 자본금의 변동은 주주별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상법에 의한 이익소각의 경우 [기중변동사항]의 감소에서 [기타]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감자]로 등록하면 기말자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감자와 이익소각의 경우 모두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감자는 기말자본금도 같이 감소하고, 이익소각은 기말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연월 18기 2023-01-01-2023-12-31 회계연도 2023 연사 2023

F4 제출일자 F5 전체삭제 F7 전산매체출입값 S58 주주명부불러오기 F8 전년도불러오기 F8 데이터입력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예제 유의사항

1 2 3 4 5 1/5 번째 명세서 상정변경일 - - - - - 합병, 분할일 - - - - - 사업년도 2023-01-01 ~ 2023-12-31 신고방법 0 0: 전자, 1: 매체, 2: 신고인합

1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 ? 주권상장여부 3 1: 주권상장, 2: 코스닥, 3: 비상장 무액면주식발행여부 2 1: 예, 2: 부

2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의 차이내음

차	구	분	기	초	기	말	구	분	기	초	기	말
액	출주식수		10,000	주	9,800	주	출주식수		10,000	주	9,800	주
내	입력누계		10,000	주	9,800	주	1주당 액면가액		5,000	원	5,000	원
용	출주식수와의 차이			주		주	자본금		50,000,000	원	49,000,000	원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화면정렬: 구 분 순 지분종류개산 EXCEL자료로로드 EXCEL자료다운

No	성명(법인명)	구분	구 분	[1: 개인, 2: 우리사주]	등록번호	700	거주국 코드	KR	대한민국
1	박대환	2.개 인							
2	김민국	2.개 인							
3	(주)한세	3.열리법인							
4									

구 분	[1: 개인, 2: 우리사주]	등록번호	700	거주국 코드	KR	대한민국
주식수		9,000	주			
지분율		90 %				
지분율누계		100.00 %				

지배주주와의관계 00 본인

[주주 기타 인적사항(전자신고(매체)수록 사항 아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팩 스 - - - - -

4 주식발행방법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여부 1 1: 예, 2: 부 자기주식 수(주) 1,000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수 1,000

⑥ [2.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주주 중 해당 과세연도 중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2.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illegible]

3. > 주요계정명세서(갑, 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무조정사항을 주요 계정별로 표시하는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F12 불러오기]하여 주요계정의 회사계상액과 세무조정금액을 확인한다.

4. > 소득자료명세서

(1) 개요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 중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주주, 임원, 직원, 기타의 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즉, 당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수정신고일 등)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소득자료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 및 귀속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면, 해당 소득의 귀속자는 추가적인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2)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의 소득처분금액은 종합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지급시기 의제일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처분	귀속연월	지급연월(원천징수시기)
(인정)상여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 (세무조정 대상연도)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 연월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일
(인정)배당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세무조정 대상연도의 다음 연도)	
기타소득		

2)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 확정신고대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는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배당처분금액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귀속자의 배당소득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시) 해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처분 종류	소득의 귀속자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확정신고
상여(근로소득)	임원 또는 직원	기본세율	신고, 처분 통보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
배당(배당소득)	임직원이 아닌 주주	배당소득의 14%	
기타소득 (기타소득)	임직원, 주주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의 20%	
기타사외유출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귀속자 소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없음	

3)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지연시 가산세의 적용

- ①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인정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되며, 무납부일수의 기산일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당초 소득귀속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2.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 ②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 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한다.

- ③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추가 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④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4)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로 본다.

소득처분이 있는 때[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수정신고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한다.

반기별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이 있는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수정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5)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① 12월 말 법인으로 20×2년 법인세 정기신고 시(20×1년 귀속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상여)하였다. 1명에 5천만 원, 추가 정산세액 7백만 원
- ② 20×2년 3월분 근로소득 지급(20명, 총지급액 7천만 원, 소득세 900,000원)
 - ⇒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정기분신고서, 소득처분신고서)
 - ㉠ 정기분신고서(20×2년 3월 귀속 → 20×2년 4월 10월 제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년 3월		
①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년 3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 득 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7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할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 감 계	A10	20	70,000,000	900,000					900,000		

㉠ 소득처분신고서(20×2년 2월 귀속 → 20×2년 4월 10일 제출)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신고]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년 3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 득 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연말 정산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합계	A04	1	50,000,000	7,000,000							
		분할신청	A05										
		납부금액	A06			7,000,000							
		가 감 계	A10	1	50,000,000	7,000,000				7,000,000 ¹⁾			

-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소득금
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 ※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다.
-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
서를 제출한다.

구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수정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처분 확인	세무조정에 의한 소득처분 : 소 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	- 법인 : 과세관청은 결정·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부(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의 발생) - 소득자 :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도 통지사실을 알려 하나 세법상 실제적 효력 없는 안내절차

1) 차기이월 환급액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

(3)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지급명세서도 인정상여가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원천징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사업 연도	20*1. 01. 01 ~ 20*1. 12. 31.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 인 명	(주)세무비법	
			[인정배당]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기타소득]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소득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비고
1. 인정상여	2021	50,000,000	7,000,000	2022/02/28	여	김대표 000000-*****	연말정산 원천징수필

(4) 연말정산 이후 인정상여가 확정되는 경우

- ①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한 근로소득과 인정상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추가납부액을 원천징수 신고납부한다.
- ②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재제출)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반드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는 없다.

■ 법인세 신고 : 소득자료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사업 연도	20*1. 01. 01 ~ 20*1. 12. 31.	소득자료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명세서	법 인 명	(주)세무비법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비고
1. 인정상여	20*1	50,000,000	7,000,000	2022/03/31	부	김대표	000000-*****	

■ 원천징수 신고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년 3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 득 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	50,000,000	7,000,000					
		분할신청	A05								
		납부금액	A06			7,000,000					
	가 감 계	A10	1	50,000,000	7,000,000				7,000,00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한다.

(5) 세무사랑Pro 소득자료명세서

소득자료명세서

정기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사

2023

☒ 열기

☑ 닫기

☎ 코드

🔍 찾기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최근

🔗 연관

🔒 보호

📁 그룹

🔔 정보

☰ C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11 저장 CF6 급여자료불러오기

No	①소득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연말정산 여부	④원천징수할 소득세	⑤원천징수일	⑥신고 여부	소 득 자		⑧비고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1	1. 인정상여	2023	100,000,000	여	0	2024-02-28	여	김대환	430624-2835717	연말정산 원천징수됨
2	1. 인정상여	2023	50,000,000	부	8,545,000	2024-03-31	부	이만세	700622-2835712	
3	2. 인정배당	2023	30,000,000	부	4,200,000	2024-03-31	부	박주주	700622-2835712	
4	1. 인정상여 2. 인정배당 3.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2011.02.28 개정)									
사 업 연 도	2023.01.01 ~ 2023.12.31	소득자료			명세서	법 인 명		(주)세무사랑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사업자등록번호	119-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 여부	소 득 자		⑧비 고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인정상여	2023	100,000,000		2024-02-28	여	김대환	430624-2835717	연말정산 원천징수됨	
인정상여	2023	50,000,000	8,545,000	2024-03-31	부	이만세	700622-2835712		
인정배당	2023	30,000,000	4,200,000	2024-03-31	부	박주주	700622-2835712		

5. ➤ 성실신고 확인서

(1) 개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가 내국법인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로서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의 서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조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대상인 경우 이 익금 산입금액을 포함한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토지, 건물 또는 채권, 채무를 제외하여 사

업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 성실신고 대상법인으로 보고 있다.

- ② 위①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1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4)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세무사 등)이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5) 성실신고확인서의 신고기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인과 동일하게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12월말 결산업인의 경우 4월말 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다.

(7) 주요항목명세서(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성내용
1. 주요사업내역	• 주요거래처현황 • 주요유형자산명세 • 차입 및 대여명세

구 분	구성내용
	• 채권 및 채무명세 • 선급 및 선수명세 • 임원현황
2. 매출증빙현황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 표준대차 • 표준손익 • 부속명세서
4. 기타/금융계좌	• 3만원초과증빙불비 • 금융계좌/상품권등

(8)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1) 신고기한 연장 배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즉, 법정신고기한(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Max[①, ②]

① 법인세 산출세액²⁾×5%

② 수입금액×0.02%

2)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10장

지방소득세 신고서

1.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과·징수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14년이후).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등 양도소득 ④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연도과도 일치한다.

또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② 청산소득
- ③ 토지등 양도소득
- ④ 미환류소득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③ 재무상태표
- ④ 포괄손익계산서
- ⑤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⑥세무조정계산서
- ⑦ 법인세법 시행령97조5항 각호 서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외감법인 현금흐름표 등)
- ⑧ 기타 :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명세서.

위의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위 ①~⑤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의 제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위 지방소득세 안분기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조정액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전액 차감함
=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	
× 세율	2억이하: 0.9% 200억이하: 1.9% 3,000억이하: 2.1% 3,000억 초과: 2.4%
=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토지등양도소득의 1%(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 2%, 미등기 4%) + 미환류소득의 1%를 산출세액에 합산
× 사업장별 안분율	
= 사업장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 가산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가산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 자진납부세액	

(4)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세액을 위 1)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1)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이후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위 1)의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5)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1%
3,000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의 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규정이 없다.

(8)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1)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즉,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text{안분율}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① 종업원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
 ② 건축물연면적: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 분	적 용 례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 분	적 용 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구 분	적 용 례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2)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3)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부방법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 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11) [세무사랑Pro]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2) [세무사랑Pro]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① [F12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내용이 자동반영된다.
- ②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상의 선납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③ 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④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137.과세표준]의 금액은 [F12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지만 세율 등은 직접 입력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0101 (주)세무사랑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2023			연세 2023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108.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247,000,000											
109.이월결손금			10,000,000											
110.비과세소득														
111.소득공제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237,000,000											
159.선박표준이익														
105.외국법인세액조정액														
2. 113.법인세과세표준 (112+159+105)			237,000,000											
106.외국법인세액														
107.과세표준 (113-106)			237,000,000											
114.세율			1.9%											
115.산출세액			2,503,000											
116.지점유보소득														
117.지점유보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														
118.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19.합계 (115+118)			2,503,000											
3. 120.산출세액 (120+119)			2,503,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														
122.차감세액			2,503,000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24.가산세액			50,000											
125.가산세액 (120-121-123+124)			2,553,000											
4. 126.비영리내국법인의예정신고세액														
127.수시부과세액														
128.특별징수납부세액			280,000											
129.간접회사용외국납부세액														
130.소계 (126+127+128+129)			280,000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132.합계 (130+131)			280,000											
133.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134.감면분 추가납부세액														
136.차감납부할세액 (125-132+133+134)			2,273,000											
4. 137.과세표준			50,000,000											
138.세율			20%											
139.산출세액			10,000,000											
140.감면세액														
141.차감세액 (139-140)			10,000,000											
142.공제세액														
143.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가산세 제외)														
144.가산세액(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145.가산세액 (139+143+144)			10,000,000											
146.수시부과세액														
147.세액														
148.계 (146+147)														
149.차감납부할세액 (145-148)			10,000,000											
5. 150.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151.세율														
152.산출세액														
153.가산세액														
154.기납부세액														
158.이자상당액														
155.차감납부할세액 (152+153+154+158)														
6. 156.해당연도 차감납부할세액계 (136+149+155)			12,273,000											
135.결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157.조정 후 납부할세액계 (156+135)			12,273,000											

(13) [세무사랑Pro]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해당하는 서식으로서 [세무사랑Pro]의 회사등록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 ② [주식변동]여부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지방세 정기 0101 (주)세무사랑 연인 18기 2023-01-01-2023-12-31 부가세 2023 연사 2023

☑ 달기 ☑ 도움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전기 ☑ 차기

≡ F3 마감 F6 안분신고서작성 F7 안분명세서인쇄 F8 납부서인쇄 F12 불러오기

(13)법인구분	1	1.내국	2.외국	3.외국	비율%	(14)조정구분	1	1.외부	2.자기
(15)종류별 구분		종소	중간	출자	그외	(16)외부감사대상	2	1.여	2.부
영리 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7)신고구분	1	1.정기신고
		코스닥상장	21	72	82	92		2.수정신고	1.서면분석
		기타법인	30	73	83	93		3.기한후신고	2.기타
비영리법인			60	74	84	94	(11)사업연도	2023-01-01	2023-12-31
(19)결산확정일		2024-03-15	(20)신고일	2024-04-30	(18)법인유형발부분	100	기타		
(22)신고기한명승인			1.신청일	-----	2.연장기한				

구분	여/부	구분	여/부
(23)주식변동	1	1.여	2.부
(25)사업연도외제	2	1.여	2.부
(27)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2	1.여	2.부
		(26)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1.여	2.부
		(28)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신고	2
		1.여	2.부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투자동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29)수입금액		1,970,185,000		
(30)과세표준	237,000,000	50,000,000		
(31)산출세액	2,503,000	10,000,000		12,503,000
(32)충부담세액	2,553,000	10,000,000		12,553,000
(33)기납부세액	280,000			280,000
(34)차감납부할세액	2,273,000	10,000,000		12,273,000

환급금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47)금융기관명 은행

(48)계좌주

(49)계좌번호

(14) [세무사랑Pro]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 ① [F6안분신고서작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반드시 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무사랑Pro]에서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된다.
- ② [사업장명]
[F2코드도움]은 회사등록 정보가 본점과 지점사업장의 정보로 자동 반영하는 메뉴이다.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수와 건축물 면적은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한다. 안분율이 계산되며 그 안분율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잘못 신고납부되면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안분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지방세 정기) 0101 (주)세무사항 법인 18기 2023-01-01~2023-12-31 평가년 2023 연시 2023

1 F6 안분신고서작성 F7 안분명세서인쇄 F8 납부서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3)법인구분 안분율 계산

(15)종류별 구분

● 사업장별 ○ 합산(신고별)

사업장명	본지점	구분	광역시	종업원수	건축물면적			안분율
					건물	기계장치	사설물	
(주)세무사항	본점	개별		40	400.0000			72.727272
(주)세무사항 대한지점	지점	개별		15	150.0000			27.272728
법인 합계				55	550.0000			

사업자등록번호 119- 02 452 1111 법인등록번호 2543

납세지 사업장전화번호 07226 납세지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당산동, 당산빌딩)

납세지 사업장등록코드 1156011700 납세지 사업장영등포구

금액구분	법인	사업장	금액구분	법인	사업장
(39)납세지별 산출세액	12,503,000	9,093,090	(40)납세지별 세액공제		
(41)납세지별 가산세액 합계	50,000	36,363	(42)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41)무(과소)신고			(43)납세지별 기납부세액	280,000	203,636
(32)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세액		
(41)지방세법 제103조의30	50,000	36,363	(43)납세지별 기납부세액		
(41)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수시,매정 납부세액		
(41)기타			(44)경정, 수정신고등 가감액		
(45)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46)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12,273,000	8,925,810

입력방법
F2 코드도움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회사등록에 없는 사업장의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기문 불러오기 삭제(F5) 확인



2023년 귀속

세무사랑Pro 활용 레시피4 (법인세편)

발행일 : 2024. 3. 5.

발행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집필인 : 세무사 윤지영

발행처 : 한국세무사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

전 화 : 02-521-8907

팩 스 : 02-521-8909

홈페이지 : www.kacpta.or.kr

ISBN : 979-11-5520-158-9 93320

이 책의 내용을 한국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비매품]

